

國民年金 財政安定化를 위한
構造調整 方案

金 龍 夏
石 才 恩
尹 錫 垣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이 1960년대초 이후 차례로 도입되었으나, 一般國民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88년에 國民年金制度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5년말 현재 국민연금에는 5인 이상 事業場加入者가 554만명, 農漁村地域 加入者 189만명 등 약 75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國民年金財政은 1998년에 도시자영자에게 연금제도를 확대하고 年金保險料를 연차적 계획에 따라 9%까지만 인상한다는 가정하에서 2024년에 수지적자를 나타내고 2039년에 적립기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積立基金 枯渴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年金의 受給負擔 構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연금가입연령, 가입기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現行 年金制度는 年金加入者가 자기가 부담하는 것보다 2배이상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構造로 되어 있다.

물론 年金基金의 잘못된 운용에도 원인이 없지는 않지만, 構造的 要因에 비하면 오히려 그 책임이 미미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年金基金 運用收益率이 20%이상으로 높다면 현재의 연금구조로서도 수지를 맞출 수 있으나 현재 금융시장에서 적절히 잘 운용하여도 13% 정도의 수익율밖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積立基金의 根本的인 原因은 연금의 구조적 요인에 있고, 기금운용에 따른 문제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年金構造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國民年金은 健康한 상태에서 현세대 뿐만 아니라 未來世代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남아야 한다. 그러나 現在의 國民年金 構造로서는 未來의 世代에게 많은 부담을 유산으로 남길 우려가 있으므로 適正한 構造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現世代가 국민연금의 부담을 未來 世代에게 넘기지 않고 적절한 노후대책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부담을 흔쾌히 받아들일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年金構造의 개편에 따른 年金保險料의 상향조정, 평균수명의 연장에 상응한 年金受給年齡의 탄력적 조정, 年金給與額의 적절한 조정 등의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年金構造調整 과정에서 世代間에 衡平性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연금수급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構造調整이 늦어질 수록 세대 간에 형평성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므로 구조조정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조정에 따른 충격은 적어지고 世代間 衡平性 문제도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國民의 合意에 기초한 長期的인 構造調整 方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本 研究는 外國經驗의 연구와 代案別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受給·負擔構造의 適正化 方案을 모색함으로써 몇가지 중요한 政策建議를 하고 있다. 이 報告書가 출간됨으로써 關係專門家의 研究活動에는 물론 정부의 年金保險 政策樹立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業務修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龍夏 責任研究員의 책임하에 石才恩, 尹錫垣 主任研究員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研究報告書를 작성함에 있어 研究陣들은 그동안 많은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保健福祉部 年金保險局 및 國民年金管理公團 關係者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행 과정에서 生産的인 討論을 해준 本院의 윤병식 사회보험연구실장, 최병호, 이정우 책임연구원 등 社會保險研究室 研究陣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報告書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김미곤, 이정우 책임연구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原稿矯正 및 編輯에 많은 수고를 해준 소원철 책임관리원, 양미선, 안현애 주임연구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意見이며 본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5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要約 및 政策建議	15
第1章 序 論	42
第1節 研究의 背景	42
第2節 概念定義 및 研究方向	43
第3節 研究方法 및 構成	46
第2章 國民年金의 受給·負擔構造 分析	48
第1節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48
第2節 收益比 分析	53
第3章 外國 年金制度의 受給·負擔構造 分析	64
第1節 分析틀	64
第2節 日 本	68
第3節 獨 逸	110
第4章 國民年金 政策시뮬레이션 分析	136
第1節 模型의 構造 및 前提條件	136
第2節 模型構造	139
第3節 假定 및 資料	147
第4節 財政收支 展望	150

第5節 政策代案別 財政效果 分析	159
第6節 政策代案別 世代間 再分配 效果 分析	183
第5章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	194
第1節 年金給與의 段階的 調整	195
第2節 年金保險料의 段階的 調整	201
第3節 平均壽命 延長에 따른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205
第4節 積立基金의 收益率 提高	207
參 考 文 獻	210
附 錄: 各國別 年金關聯 統計	217

表 目 次

〈表 1- 1〉	國民年金財政 關聯指標 展望	42
〈表 2- 1〉	加入者 現況	48
〈表 2- 2〉	給與種類別 受給要件 및 給與水準	50
〈表 2- 3〉	給與種類別 受給者 現況	51
〈表 2- 4〉	年金保險料 調整計劃	51
〈表 2- 5〉	國民年金 財政收支推移	52
〈表 2- 6〉	基金運用 現況	53
〈表 2- 7〉	收益率 現況	53
〈表 2- 8〉	給與率 變動時	56
〈表 2- 9〉	受給年齡 變動時	57
〈表 2-10〉	加入期間 變動時(加入年齡)	58
〈表 2-11〉	加入年齡 變更의 境遇(年金保險料 9% 固定時)	58
〈表 2-12〉	年金保險料 變動時	59
〈表 2-13〉	消費者物價 變動時	59
〈表 2-14〉	賃金上昇率과 利子率 變動時	60
〈表 2-15〉	所得水準別(標準所得月額 等級別) 總給與率	62
〈表 3- 1〉	受給·負擔構造의 分析時 考慮變數	67
〈表 3- 2〉	平均壽命의 推移	76
〈表 3- 3〉	人口構造 및 老齡化 推移	77
〈表 3- 4〉	國民年金의 成熟度 및 年金扶養比率의 推移	78
〈表 3- 5〉	厚生年金의 成熟度 및 年金扶養比率의 推移	79
〈表 3- 6〉	消費者物價上昇率 및 賃金上昇率 推移	80
〈表 3- 7〉	年金 給與水準 關聯制度의 變化	82
〈表 3- 8〉	厚生年金 報酬比例年金의 給與乘率	85
〈表 3- 9〉	厚生年金의 支給開始年齡의 引上	88
〈表 3-10〉	年金受給開始年齡別 老齡厚生年金의 成熟度 推計	88

〈表 3-11〉	年金受給開始年齢別 厚生年金의 財政收支 推計(1989) ……	89
〈表 3-12〉	保険料率 推移 ……	92
〈表 3-13〉	厚生年金 標準報酬의 推移 ……	96
〈表 3-14〉	厚生年金保険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의 推移 ……	96
〈表 3-15〉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制度的 與件 ……	100
〈表 3-16〉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給與算式 ……	100
〈表 3-17〉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給與率 및 保険料率 ……	101
〈表 3-18〉	加入期間別, 所得階層別, 性別 厚生年金의 收益比 ……	102
〈表 3-19〉	厚生年金의 財政收支 推移 ……	103
〈表 3-20〉	厚生年金의 積立金 累積現況 ……	103
〈表 3-21〉	厚生年金加入者の 生涯負擔 및 生涯給與 ……	105
〈表 3-22〉	厚生年金의 世代間 移轉 ……	108
〈表 4- 1〉	政策實驗 計劃 ……	138
〈表 4- 2〉	加入者數 展望 ……	151
〈表 4- 3〉	受給者數(事業場) ……	152
〈表 4- 4〉	受給者數(地域) ……	153
〈表 4- 5〉	關聯指標 變動推移 ……	153
〈表 4- 6〉	年金保険料率 變動推移 ……	155
〈表 4- 7〉	給與支出 變動展望(事業場) ……	155
〈表 4- 8〉	給與支出 變動展望(地域) ……	156
〈表 4- 9〉	財政收支 展望(基本) ……	157
〈表 4-10〉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基本) ……	158
〈表 4-11〉	財政收支 展望(A案) ……	160
〈表 4-12〉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A案) ……	160
〈表 4-13〉	財政收支 展望(B案) ……	161
〈表 4-14〉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B案) ……	161
〈表 4-15〉	財政收支 展望(C案) ……	162
〈表 4-16〉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C案) ……	163
〈表 4-17〉	加入者 및 受給者 關聯指標의 變動推移(D案) ……	163
〈表 4-18〉	財政收支 展望(D案) ……	164

〈表 4-19〉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D案)	164
〈表 4-20〉	加入者 및 受給者 關聯指標의 變動推移(E案)	165
〈表 4-21〉	財政收支 展望(E案)	165
〈表 4-22〉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E案)	166
〈表 4-23〉	受給者數 變動推移(F案: 事業場)	166
〈表 4-24〉	財政收支 展望(F案)	167
〈表 4-25〉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F案)	167
〈表 4-26〉	財政收支 展望(G案)	168
〈表 4-2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G案)	169
〈表 4-28〉	財政收支 展望(H案)	169
〈表 4-29〉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H案)	170
〈表 4-30〉	財政收支 展望(I案)	170
〈表 4-31〉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I案)	171
〈表 4-32〉	財政收支 展望(J案)	171
〈表 4-33〉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J案)	172
〈表 4-34〉	財政收支 展望(K案)	173
〈表 4-35〉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K案)	173
〈表 4-36〉	財政收支 展望(L案)	174
〈表 4-3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L案)	174
〈表 4-38〉	財政收支 展望(M案)	175
〈表 4-39〉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M案)	175
〈表 4-40〉	年金保險料率의 變動推移(N案)	176
〈表 4-41〉	財政收支 展望(N案)	177
〈表 4-42〉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N案)	177
〈表 4-43〉	受給-負擔構造 均衡에 必要한 實質利子率(O案)	178
〈表 4-44〉	財政收支 展望(O案)	178
〈表 4-45〉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O案)	179
〈表 4-46〉	財政收支 展望(P案: 事業場)	180
〈表 4-4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P案: 事業場)	180
〈表 4-48〉	財政收支 展望(Q案: 地域)	181

〈表 4-49〉	財政收支 展望(R案)	182
〈表 4-50〉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R案)	182
〈表 4-51〉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基本)	184
〈表 4-52〉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A案)	185
〈表 4-53〉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B案)	185
〈表 4-54〉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C案)	186
〈表 4-55〉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D案)	186
〈表 4-56〉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E案)	187
〈表 4-57〉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F案)	187
〈表 4-58〉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G案)	188
〈表 4-59〉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H案)	189
〈表 4-60〉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I案)	189
〈表 4-61〉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J案)	190
〈表 4-62〉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K案)	191
〈表 4-63〉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L案)	191
〈表 4-64〉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M案)	192
〈表 4-65〉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N, O案)	192
〈表 4-66〉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R案)	193
〈表 5- 1〉	政策代案別 財政收支 展望	194
〈表 5- 2〉	所得階層別, 加入期間別 老齡年金額	196
〈表 5- 3〉	財政收支 展望(S案)	199
〈表 5- 4〉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S案)	199
〈表 5- 5〉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S案)	200
〈表 5- 6〉	財政收支 展望(T案)	202
〈表 5- 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T案)	202
〈表 5- 8〉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T案)	203
〈表 5- 9〉	財政收支 展望(U案)	204
〈表 5-10〉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U案)	204
〈表 5-11〉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U案)	205
〈表 5-12〉	主要國의 平均壽命 推移	205

圖目次

[圖 1-1]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 研究方法	47
[圖 2-1]	現行 國民年金의 世代內 再分配 構造	63
[圖 3-1]	收益比와 受給·負擔과의 關係	66
[圖 3-2]	日本 年金制度의 基本體系	69
[圖 3-3]	日本 年金制度別 支給開始年齡	70
[圖 3-4]	專業主婦 被傭者世帶의 年金給與 構造	72
[圖 4-1]	政策實驗 構造	137
[圖 4-2]	國民年金 財政收支 推計模型의 構造	139
[圖 4-3]	加入者數 推計 概念圖	140
[圖 5-1]	年金受給年齡의 調整方案	206

附錄表目次

〈附表 1- 1〉	年齡別 人口比率	219
〈附表 1- 2〉	老齡化指數	219
〈附表 1- 3〉	受給率	220
〈附表 1- 4〉	各 年金 加入率	220
〈附表 1- 5〉	公的年金 加入者數 및 受給者數 推移	221
〈附表 1- 6〉	名目・實質賃金	221
〈附表 1- 7〉	年度別 全國消費者物價指數 變動推移	222
〈附表 1- 8〉	國民年金 平均報酬月額	222
〈附表 1- 9〉	學教級別 平均報酬月額	222
〈附表 1-10〉	公務員年金 報酬月額 變動推移	223
〈附表 1-11〉	軍人年金 平均報酬月額	223
〈附表 1-12〉	私學年金 財政收支推移	224
〈附表 1-13〉	公務員年金 財政收支推移	224
〈附表 1-14〉	軍人年金 財政推移	225
〈附表 1-15〉	總積立基金/給與支出額	225
〈附表 1-16〉	給與支出額/保險料徵收額	226
〈附表 1-17〉	行政費/總支出	226
〈附表 1-18〉	年金給與支出額/給與支出額	226
〈附表 2- 1〉	國民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權者數의 推移	227
〈附表 2- 2〉	國民年金(基礎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者數	227
〈附表 2- 3〉	厚生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權者數의 推移	228
〈附表 2- 4〉	厚生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者數	228

〈附表 2- 5〉 厚生年金 老齡年金受給權者數 및 平均年金月額의 推移	229
〈附表 2- 6〉 1人當 平均賃金 推移	229
〈附表 2- 7〉 消費者物價上昇率 및 賃金上昇率 推移	230
〈附表 3- 1〉 年金保險 加入者數	231
〈附表 3- 2〉 勞働者 및 職員年金保險의 年金受給者數 및 年金支出 推移	231
〈附表 3- 3〉 平均壽命	232
〈附表 3- 4〉 平均 年金受給 開始年齡	232
〈附表 3- 5〉 住民人口 및 扶養指數(1960~2030)	233
〈附表 3- 6〉 年金保險 釀出料率의 變化推移	234
〈附表 3- 7〉 平均年金 給與水準의 推移	235
〈附表 3- 8〉 一般算定基礎對比 年金調整率의 推移	236
〈附表 3- 9〉 年金保險 財政收支	237
〈附表 3-10〉 積立金(支拂準備金)	238
〈附表 3-11〉 勞働者 및 職員年金의 準備金 規模	239
〈附表 3-12〉 年金保險에 대한 政府補助金의 支出推移	240
〈附表 3-13〉 勞働者 및 職員年金 財政推移	241

要約 및 政策建議

I. 國民年金 財政安定化를 위한 構造調整의 必要性

- 國民年金 財政의 不安

-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給與支出의 急増으로 2048년경에는 積立基金이 없게 될 것으로 展望됨. 그러나 年金積立基金의 고갈이 연금제도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 公的年金制度의 역사가 오랜 先進國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年金基金을 積立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積立基金 없이 운영되고 있음.
- 年金財政 不安의 문제는 未來의 年金加入者가 높은 年金保險料를 부담할 능력과 未來世代가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임.

- 先進國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 年金財政 負擔이 가중됨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연금급여율의 인하 등의 방법으로 年金財政 安定化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國民年金도 財政安定化를 위한 政策的 調整이 요구 되어지고 있으며, 本 研究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適正한 調整을 통하여 연금재정이 均衡狀態에 도달하거나 均衡狀態를 유지하게 만드는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음.

II. 國民年金 및 職域年金的 受給·負擔構造 分析

- 公的年金制度의 健實性은 年金財政의 安定性으로 평가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 여부는 年金 受給·負擔構造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年金 受給·負擔構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짐.
- 給與率 變動時 收益比 變動 比較
 - 加入年數에 따른 給與率의 變動率을 1.75% 포인트에서 1.7%, 1.5%, 1.0%로 변동시켰을 경우 수익비는 2.27에서 2.21, 1.95, 1.30으로 떨어졌음. 즉, 給與率의 變動率을 0.25%포인트 변동시 收益比가 약 15% 가량 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受給年齡 變動時 收益比 變動 比較
 - 현행대로 年金受給年齡이 60세인 경우 收益比는 2.27이었으나 61세로 상향조정하면 2.13, 62세로 조정시에는 2.13, 63세로 조정시에는 1.84, 64세로 조정시에는 1.70, 65세로 조정시에는 1.56으로 하락하였음. 즉 年金受給年齡 1세당 收益比 變動은 6~6.5%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加入年齡 變動時 收益比 變動 比較
 - 加入時 年齡에 따른 收益比 變動을 살펴본 결과 加入時 年齡은 收益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收益比가 2.15~2.27의 범위내에서 변동을 하였음.

- 保險料 變動時 收益比 變動

- 年金保險料의 변동에 따른 收益比 變動을 살펴본 결과 年金保險料率을 現행의 9%(1998년 사업장가입자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경우 收益比는 2.15 이었으나, 年金保險料率을 12%로 上향조정할 경우 收益比는 1.62로, 15%로 上향조정할 경우 收益比는 1.29로, 18%로 上향조정할 경우 收益比는 1.08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收益比를 1.0의 균형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年金保險料率을 18%이상의 수준으로 上향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年金制度 도입당시에는 3~6% 수준의 經過的 年金保險料率을 부과하였는 바 制度初期 加入者는 經過기간 이후 가입자보다 收益比上으로 유리한 상태에 있음.

- 消費者物價, 賃金上昇率, 利子率 變動時 收益率 變動

- 物價上昇率이 낮을수록 收益比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消費者物價上昇率이 2%일 경우 收益比는 2.19로 消費者物價上昇率이 5%인 경우보다 수익비가 0.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賃金上昇率이 동일할 경우 利子率이 높을수록 收益比는 1.0 에 가까워지며, 반대로 利子率이 동일할 경우 賃金上昇率이 높을수록 收益比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賃金上昇率이 5%이고 利子率이 6%인 경우의 收益比는 1.30인데 반하여 賃金上昇率이 5%이고 利子率이 4%인 경우의 收益比는 2.35로 차이를 나타냄.

- 再分配率

- 國民年金 給與算式上으로 20년 가입시 最下等級인 22만원 소득자는 연금월액이 22만2천원으로 所得代替率이 100%를 넘는 반

면, 20등급인 85만원 소득자의 경우 所得代替率이 37.2%, 最上等級인 45등급인 360만원 소득자의 경우 所得代替率이 20.2%로 나타났다. 따라서 所得이 높을수록 所得代替率이 낮아짐.

-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는 本人의 所得月額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대체율이 100% 넘는 저소득계층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收益比가 낮아지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 最低所得계층과 最高所得階層간에 保險料 負擔額의 차이는 16.4배이나, 基本年金 給與額의 차이는 3.2배로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이고 있음.
- 最低所得等級인 1등급의 收益比는 6.54, 10등급은 4.28, 20등급은 2.41, 30등급은 1.71, 40등급은 1.41, 最高等級인 360만원 소득자의 경우도 1.31로 1.0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世代內 再分配 보다는 世代間 再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最高所得等級의 자의 경우도 年金收益比가 1.0을 초과하여 世代內 再分配 측면이 전무함. 世代內 再分配가 없는 높은 再分配율은 未來世代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現世代의 高給與를 위하여 未來世代가 高負擔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함.

Ⅲ. 外國 年金制度의 受給·負擔構造 分析

1. 日本

- 공적연금에서 세대간의 공평이 문제되는 것은 다음 세가지 측면임.
 - 첫째, 각출한 보험료의 총액과 수급하는 연금의 총액을 비교하여 전세대가 후세대보다도 수익성이 높다는 것,

- 둘째, 노령세대가 수급하는 연금의 재원의 대부분은 자신이 각출한 보험료가 아니고 젊은 세대가 각출한 보험료에 의해 지급받고 노령세대는 젊은세대로부터 많은 액의 이전을 받고 있다는 것,
 - 셋째, 노령세대가 수급하는 연금액을 노동세대의 소득액을 비교해 볼때 노령세대 연금액이 너무 높다는 것 등임.
- 日本의 公的年金制度는 完全積立方式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물가나 임금의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修正積立方式으로 이행하였음.
- 修正積立方式은 노동세대가 노령세대의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賦課方式의 요소를 가지며,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早期 成熟化 조치를 강구하였기 때문에 전세대의 경우 공적연금의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 1994년 재정재계산에 기초한 연금개혁 법안의 성립으로 심각해져가는 財政狀況에서 給付와 負擔의 兩面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음.
- 이에 따라 후생연금에서 部分年金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이전인 60세부터 64세까지의 사이에는 報酬比例部分에 한정하여 연금을 지급할려는 것임.
 - 또한 지급액 산정시 사용하는 과거보수의 평가방법을 現役世代 임금의 신장율에서 實質賃金の 伸長率로 전환하였음.
 - 한편 保險料 負擔의 면에서는 현행의 14.5%의 보험율을 29.6%까지 인상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동시에 보너스로부터도 1%의 보험율을 징수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료가 장래에는 30%를 넘는 것은 확실하게 되었음.

- 1994년 日本의 年金改革에 따른 厚生年金의 世代間 移轉을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 각 세대의 平均所得 家計에서는 1965년생의 세대에서는 收支가 거의 균등하고 그 以前의 세대에는 플러스의 이전이 있고 그 이후 세대의 이전은 마이너스임.
 - 각 세대의 平均所得 家計에서 세대간의 純移轉이 차이가 나는 큰 원인은 각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차이임.
 - 1965년 태어난 以後의 世代로부터 그 以前에 태어난 세대에 移轉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1930년대에 태어난 高所得層에의 이전은 대단히 큼. 따라서 1940년 이전의 세대에서는 매우 역진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동일 세대 내부만 생각한 역진적인 재분배는 전후 태어난 세대에서는 해소됨.
- 保險數理的 側面에서 世代間에 公正한 保險을 구상해보면,
 - 人口의 高齡化에 관해서는 94년의 재계산에 사용된 후생성 잠정 추계와 出生率에 관해서 보다 엄격한 가정을 둔 재정경제협회 추정을 비교한다면 2020년경부터 피보험자 추정에 차이가 보이고 2050년에는 잠정 추계의 쪽이 400만 이상 크게 됨(재정경제협회 추정에 의한 피보험자수의 23%).
 - 厚生年金財政은 피보험자수와 비교하여 일인당 수급액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임금 인덱스와 물가 슬라이드의 2개의 수급액 슬라이드 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을 추계하였는데, 임금인덱스의 경우에는 94년의 개혁에 따를 경우에도 연금재정은 과경할 위험성이 있음.
 - 保險料의 인상과 급부의 인하에 따라 장래세대의 부담은 증대함. 추계에서 生涯釀出額이 年金受給額을 넘는 세대가 장래 발생함.

- 세대간에 적정하게 되는 연금제도로의 이행에 必要한 積立額을 구했는데, 이 액이 실제의 적립액을 넘는 부분이 말하자면 厚生年金에 있어서 청산되어야 하는 債務임. 추계결과에 의하면 95년 가치로 400조엔 가까운 채무가 발생하고 있음
- 이 債務는 후생연금에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將來世代 負擔의 증대를 통해 변제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年金改革은 과거의 채무를 어떻게 하여 장래 세대에 떠맡기게 할까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獨逸

- 獨逸의 年金保險은 保險原則과 함께 社會的 調整의 원칙이라는 두 개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게 되었음.
 - 즉 被保險者와 雇用主의 부담에 의해 年金生活의 보장을 목표로 지향함과 동시에 公費負擔에 의해 低所得者의 年金의 引上을 꾀하려고 하였음.
- 獨逸의 年金保險制度는 긴 역사 중에서 대상인원 및 급부종류를 서서히 확대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음.
 - 주요한 제도로서는 勞働者 年金保險과 職員年金保險이 있고 그 외에 광업종업원 연금보험, 수공업자 연금보험, 전문적 직업자 단체 연금보험, 농업자 노령 부조 등이 있음.
- 연금급부는 勤勞能力의 감퇴에 따른 연금, 老齡年金, 遺族年金, 離婚後의 年金의 4종류로 이루어져 있음.

- 勤勞能力減退에 따른 연금은 근로능력 50%이하의 저하의 경우에 대한 職務不能年金과 완전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勤勞不能年金으로 나누어짐.
 - 遺族年金은 과부, 홀아비연금과 고아연금으로, 이혼후연금은 이혼과부, 홀아비연금과 양육연금으로 나뉘짐. 老齡年金도 표준적으로는 남자, 여자 65세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되고 있으나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早期受給의 가능성이 있고 또 受給年齡을 연장하여 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되고 있음.
- 年金水準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됨.
- $R = (P \times B) / 100 \times (J \times St) / 100$
 - R은 個人의 年金額이며, P는 개인적 산정 기초이며 피보험자가 노동생활에 있어서 가득한 임금과 전체 보험자의 평균 임금과의 비율로 최고 200%로 결정되고 있음. 실제로는 175%선에서 결정되고 있음
 - B는 一般算定基礎이며 매년 절대액으로 결정됨. 이는 전년의 일반산정기초를 전년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평균소득의 전전년의 수준에 대한 신장율에 비례하여 인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1989년에는 그 해의 총 평균 소득의 75% 정도였음.
 - J는 保險加入期間이며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각출한 기간에 더하여 실업, 직업훈련, 질병의 기간, 1986년부터는 육아 기간이 포함됨. St는 보험가입기간에 대한 可算率이며 노령연금의 경우는 1.5임.
- 獨逸의 年金保險이 能力主義라고 불리는 까닭은 개개의 연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P와 J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음.

- 이는 퇴직 이전의 생활수준과 연금생활의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 결과 과거에 있어서의 가득수준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지극히 개인차가 큰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음.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P와 J 모두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적으므로 연금급여 수준이 낮음.
- 公的年金의 財政은 기본적으로는 保險料와 연방정부로부터의 補助金에 의해 彌補되고 있음.
- 政府의 援助는 現행과 같이 급부시 一般算定基礎에 상응하여 일정 비율로 결정되고 있음.
 - 보험료는 1957년의 개혁 이래 부과방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年金給付 總額으로부터 聯邦政府의 補助를 받은 被保險者에게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保險料率은 年金受給者數와 被保險者數의 비례 및 總賃金과 年金水準의 비율, 聯邦政府의 援助의 비율에 따라 결정함. 단 연금급부액의 중에는 연금생활자가 가입하는 질병보험에의 보험료의 지불분이 포함되어 있음.

가. 1957年 年金改革

- 獨逸 年金保險의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혁은 1957년의 年金改革으로 지금까지의 연금보험을 2개의 점에서 수정하는 것이었음.
- 하나는 年金의 實質價値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금에 슬라이드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임. 완전자동 슬라이드제는 아니고 그때마다 회의에서 年金調整法으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에 따

라 연금은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 또 다른 하나는 비스마르크 이후 연금은 원칙적으로 積立方式에 의해 운영되어 왔지만 슬라이드의 실시에 의하여 적립방식으로 는 財政負擔의 증가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재정방 식이 賦課方式으로 이행되게 되었음.
- 世代間 契約의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人口構造를 安定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연금제도내에 편입될 필요성이 있음
 - 出産이나 育兒의 부담이 당사자에만 부담지워진다면 어린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훨씬 유리하므로 出生率 低下가 일반화될 것임. 이에 따라 젊은세대의 육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체계 전체가 붕괴위기에 직면해 갈 것임.
 - 따라서 出産・育兒期間을 연금 시스템에 편입할 필요성이 새로운 정책구상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나. 1986年 年金改革

- 1985년 11월 서독(당시)의 의회에 있어서 「遺族年金의 개정 및 연금 보험에 있어서의 兒童養育期間의 승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는 遺族연금에 있어서의 男女의 平等의 취급을 실현하는 한편 아동의 양육을 행한 자에게 일정 기간동안의 보험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아동양육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임.
- 夫婦共同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남편

도 처가 사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홀아비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遺族年金을 새로운 夫婦의 存在 方式에 적용시킬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의 家族政策的 措置라고 볼 수 있음.
- 독일 국내에서 어린이를 養育하여 1986년 이후에 65세가 되는(1921년 이후생) 母親(양모, 계모, 기른 어머니를 포함한다)은 어린이 1인당 1년의 法定 年金保險 加入期間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중요한 家族政策的 意圖를 갖고 있음.
 - 따라서 1984년 1월 1일부터 老齡退職年金의 청구권 획득을 위한 保險加入期間이 지금까지의 15년으로부터 5년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년간만 勤勞活動을 하고 3인의 兒童을 養育한 여성은 5년의 최저보험 가입기간을 충족시킨 것으로 되어 1986년부터는 자신의 연금을 수취할 수 있음. 兒童養育期間은 항상 平均所得의 75%가 취득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됨.
 - 이러한 조치가 즉각 出生率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世代間 契約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年金保險에 처음으로 편입되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1992년 年金改革

- 1992년 年金改革법銀 인구구조나 사회경제구조 등의 변화에 적응해 가고 年金財政의 長期安定化를 목표로 지향하여 시행되었던 것으로 2010년경까지의 약 20년간을 고려한 長期的 改革임.
- 1992년 법개정에서 주목되는 첫째는 1980년대에 제안된 각 종의 기본연금 구상을 채용함이 없이 現行 制度의 틀 내에서 개혁을 지향

하고 있는 점임. 제1차 연금개혁의 기본적 특색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제 2차 연금개혁으로 도입된 年金年齡選擇制를 高齡化 社會에 적응한 형으로 修正하면서 보험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總額賃金 슬라이드제로부터 純所得 슬라이드제로의 변경, 年金支給開始 年齡의 65세로의 단계적 인상, 聯邦 補助金의 동태화 등의 대책이 취해졌음.
- 둘째로 兒童養育期間·介護期間의 保險期間에의 산입, 部分年金制, 減額年金制의 도입 등 人口構造나 就業構造의 변화에 대한 주목할 만한 시책이 이루어졌음.
- 이 점에서 1992년 연금개혁법은 단순한 재정재건법이나 비용절감법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조치를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1992년 개혁에 따라 年金財政은 2010년경까지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1997년경까지는 保險料率을 현행의 18.7%로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후의 2015년경까지도 부담 가능한 25% 이하로 억제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IV. 國民年金 政策시뮬레이션 分析

- 본 장에서는 世代間 公正한 年金의 實現, 年金財政의 均衡 維持 등을 이룰 수 있는 適正年金構造의 선택을 위하여 각종 연금관련 변수의 변동에 따라 年金財政收支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政策實驗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들 문제를 政策實驗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19개의 실험을 행하였음(表 1 참조).
- 老齡年金은 國民年金의 基本年金 算式에 따라 결정됨. 釀出料率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 6%, 1998년 이후는 9%가 2050년까지 유지되며, 國民年金制度 加入者는 1988년 이후 1992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 199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에는 農漁民年金 도입, 1988년 이후는 全國民의 年金化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음.

〈表 1〉 政策實驗 計劃

구분	구조조정 방안	비 고
A	급여수준의 조정(2000년)	급여산식 조정 $[1.8 \times (A+B)]$
B	"	급여산식 조정 $[2.0 \times (A+0.75 \times B)]$
C	"	급여산식 조정 $[1.2 \times (A+0.75 \times B)]$
D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61세로 조정
E	"	63세로 조정
F	"	65세로 조정
G	연금보험료율의 조정방법	연금보험료 1% 상향 조정(2003년)
H	"	연금보험료 3% 상향 조정(2003년)
I	"	연금보험료 3%씩 5년간격 연차조정
J	"	유족연금·장해연금보험료 별도부과
K	" 조정시점	각출금수입 = 총지출시점
L	"	총수입 = 총지출시점
M	"	적립기금 고갈시점
N	기금운용수익율의 조정	수익율 1% 포인트 상향조정
O	"	균형재정 이자율
P	가입자별 재정수지	사업장연금만 실시
Q	"	지역연금만 실시
R	부과방식	기초연금, 1인 1연금 동시조정
S	순소득기준으로 급여조정	$(1-t) \times [2.4 \times (A+B)]$
T	총 합 안	H안 + S안
U	"	보험료 6% 단계적조정 + S안

1. 財政收支 展望

- 釀出金 收入이 總支出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이고 總收入이 總支出을 초과하는 赤字發生時點은 2024년경이며, 2024년경에 最大 基金規模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積立基金 枯渴은 2039년경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表 2 참조).
- 總支出에 대한 保險料 收入의 비율인 收支率은 1996년의 45%에서 2000년에는 89%로 높아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35%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됨.
 - 이는 積立基金에 의한 運用收益이 없을 경우 保險料率을 현행 9%에서 25~26% 상당까지 상승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총지출에 대한 기금의 비율인 基金倍率은 1996년의 21.5배에서 2000년에는 45.4배로 높아지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16.3배, 2030년경에는 6.0배로 줄어들다가 2030년대 후반에는 1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表 2〉 財政收支 展望(基本)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0,727	11,835	2,111	9,724	82,695	277,747
2010	12,114	13,540	3,997	9,543	130,755	399,387
2015	13,467	15,370	7,101	8,269	175,614	528,295
2020	14,810	17,047	12,690	4,357	206,409	654,180
2025	16,126	18,456	20,297	-1,841	210,056	764,239
2030	17,324	19,398	29,633	-10,235	177,134	849,487
2035	18,503	19,829	40,097	-20,268	95,676	898,191
2040	19,705	19,761	49,338	-29,577	-32,691	913,370
2045	21,111	21,111	58,143	-37,032	-204,987	895,307
2050	22,884	22,884	65,087	-42,203	-405,173	858,330

- 또한 年金保險料率을 18%로 가정했었을 경우에 豫상필요기금액은 責任準備金의 性格을 가지는데, 1996년에 84조원, 2000년에 161조원, 2010년경에 399조원, 2030년경에 849조원, 2050년경에는 858조원에 이릅니다.
- 따라서 必要積立基金에 대한 積立基金의 비율인 積立率은 1996년에 19%, 2015년에는 33.2%로 증가되나 2015년을 정점으로 연금급여의 급증에 따른 재정수지의 적자증대로 적립율은 점차 하락하여 2030년대 말에 이르르면 거의 zero상태가 됩니다.
- 이렇게 볼 때, 現行의 受給-負擔構造는 必要積立基金의 최대 33.3% 수준밖에 채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修正積立方式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政策代案別 財政效果 分析

가. 給與水準의 調整

- 給與水準의 調整은 먼저 제1방안으로 給與算式上의 A부문(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도 B부문과 마찬가지로 加重值 0.75를 곱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給與率을 現행수준의 85.7%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2.4 \times (A + 0.75B) \Rightarrow 1.8 \times (A + B)$$
-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2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4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年金保險料를 1% 정도 上向調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제2방안으로 給與算式에서 2.4배하여 주던 것을 2.0배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는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83.3%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짐.

$$2.4 \times (A + 0.75B) \Rightarrow 2.0 \times (A + 0.75B)$$

-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3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5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3방안으로 給與算式에서 2.4배하여 주던 것을 1.2배로 조정하는 경우임.

- 이는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50.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지며,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와 비슷한 결과임.

$$2.4 \times (A + 0.75B) \Rightarrow 1.2 \times (A + 0.75B)$$

-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40년경이고, 總支出은 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8년이며, 적립기금고갈은 발생되지 않는 財政狀態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됨.

나. 年金保險料率의 調整

- 본 연구에서는 年金保險料率의 인상폭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연금보험료율의 조정시점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이와는 별개로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보험료부과 방법을 실험하였음.
- 保險料率의 引上幅에 따른 效果
- 保險料率을 2003년부터 현행 9%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년정도, 기금고갈시점은 3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음.

- 2003년경부터 年金保險料率을 9%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인상 조정할 경우에는,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9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7년경으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5년정도, 기금고갈시점은 8년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음.
- 2003년경부터 5년 간격으로 年金保險料率을 3%씩 상향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8%까지 인상시킬 경우에는,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2년경이고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6년이나 적립기금 고갈시점은 2050년대 후반으로 예상됨. 이 경우 積立率은 50%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40년대 말경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年金保險料率의 引上時點의 差異에 따른 效果

- 保險料 收入과 總支出이 一致하는 시점부터 총지출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總收入은 總支出 보다 높은 상태에서 유지됨으로 基金倍率과 積立率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임.
- 總收入과 總支出이 일치되는 시점부터 총지출에서 이자수익액을 공제한 액수만큼을 年金保險料로 징수할 경우 2024년 이후에 年金財政은 均衡을 이루어 積立基金額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됨. 그러나 總支出 규모가 점차 증가하게 됨으로 基金倍率과 積立率은 약간씩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반적인 年金財政의 안정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됨.
- 基金枯渴 時點부터 총지출에 필요한 年金保險料를 징수할 경우에

는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均衡財政으로 운영됨. 이때 必要 保險料率은 거의 27%를 초과하게 되어 그 當時에 勤勞世代에게 상당한 年金保險料 負擔을 넘기는 효과를 가질것으로 예상됨.

- 遺族年金과 障害年金 급여에 필요한 保險料를 별도 부과할 경우
 -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4년경으로 財政赤字 발생시점은 2년정도, 基金枯渴 시점은 5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老齡年金受給年齡을 61세, 63세, 65세 세가지로 변경시켰을 때 年金財政收支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음.
- 먼저 年金受給年齡을 61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2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3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年金受給年齡을 63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8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6년 이후로 나타났음.
- 年金受給年齡을 65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9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1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1년경 이후로 나타났음.

- 이렇게 볼 때 年金受給年齡을 60세에서 65세로 최대한 조정하였을 경우에도 年金受給-負擔構造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年金赤字發生 時點을 상당히 연장시키는 효과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라. 積立基金 運用收益率의 調整

- 中·短期的으로 볼 때, 積立基金의 運用收益率을 높이는 것은 기금재정안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먼저 운용수익율을 1% 포인트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자발생 시점은 2년, 기금고갈 시점은 3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짐.
- 현재의 受給-負擔構造下에서도 年金財政의 均衡을 맞출 수 있는 基金運用 收益率은 살펴보면, 기본으로 가정된 利率보다 4.5% 포인트 정도의 收益率이 유지되어야 財政收支의 均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마. 加入範圍의 變化에 따른 財政收支 變動

- 加入範圍에 따른 國民年金 財政收支의 변화

- 事業場 年金만 있는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5년경으로 나타났음.

- 地域年金만 있는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1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34년경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地域年金の 財政收支가 事業場年金보다 더 빨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바. 賦課方式

- 1988년 국민연금 도입시에 60세이상 전노인에게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20%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일종의 기초연금적 성격을 띠며 1인 1연금체제가 실시되는 것을 함께 가정했을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면,
 - 연금보험료율은 초기에는 5.4%로 급여를 충당할 수 있지만, 2015년에는 9%를 초과하고 2050년에는 18%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함.

2. 政策代案別 世代間 再分配 效果 分析

- 世代間 再分配 分析은 각 정책대안별 世代間 受益·負擔 構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연금제도 조정이 각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임.
 -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한 年金保險料를 現價한 액을 부담액으로 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할때까지 수급하는 年金額을 現價한 액을 수익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음.
 - 老齡年金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事業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수익·부담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추계하였음.

가. 基本案

- 事業場加入者の 경우 1993년에 연금을 수급한 사람은 負擔額보다 受給額이 7.0배정도 2010년에 연금을 수급하는 세대는 2.1배정도, 2030년경에는 2.7배, 2050년경에는 2.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地域加入者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니, 사업장 가입자보다 收益比가 40~50% 높게 나타났음.

나. 年金給與率의 調整

- A안에 따라 2000년부터 연금급여율을 85.7%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8배, 2030년에는 2.3배, 2050년에는 2.2배로 기본안보다 낮아짐.
- B안의 경우는 A안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금급여율을 현행보다 50%수준으로 낮추는 C안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1.1배, 2030년에는 1.4배, 2050년에는 1.3배로 조정됨.

다.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연장시켰을 경우에 수익비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는 1.4배, 2030년 수급자는 1.7배, 2050년 수급자도 1.7배 내외로 수익비가 현저히 낮아짐(F안).

라. 年金保險料率의 調整

- 年金保險料率의 幅을 조정하였을 경우의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

- 2003년부터 연금보험료를 3% 인상하여 12%를 부과할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는 1.8배, 2030년 연금수급자는 2.1배, 2050년 연금수급자는 1.9배의 수익비를 보였음(H안).
- 연금보험료를 연차적으로 18%까지 조정할 경우의 수익비를 보면 2010년에는 1.8배, 2030년에는 1.5배, 2050년에는 1.2배로 급격히 낮아졌음(I안).
-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였을 경우 수익비를 보면, 2010년 연금수급자의 연금수익비는 2.1배, 2030년은 2.7배, 2050년은 2.5배로 나타나 수익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J안).

- 年金保險料의 調整時點에 따른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

- 각출금 수입이 총지출과 같아지는 시점에 연금보험료를 조정하였을 경우 2030년에 수익비는 2.4배, 2050년의 수익비는 1.1배로 조정되고(K안),
- 총수입이 총지출과 일치되는 시점에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2030년에 2.5배, 2050년에 1.1배로 분석되었음(L안).
- 또한 적립기금 고갈시점에 조장하였을 경우 2050년에는 1.3배로 조정되었음(M안). 즉, 조정시점이 늦어질수록 수익비가 높아지는 것은 조정된 연금보험료의 납입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임.

마. 基金運用收益率의 調整

- 基金運用收益率을 조정하였을 경우, 2010년의 수익비는 2.1배, 2030년에는 2.7배, 2050년에는 2.5배로 기본안과 동일하게 나타났음. 이는 기금운용수익율을 전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조정하였기 때문임.

바. 賦課方式

- 제도도입초기부터 현재와 같은 수정적립방식이 아닌 賦課方式을 도입하였을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4.0, 2010년은 2.0, 2030년은 0.97, 2050년은 0.5로 2030년의 연금수급자부터 수익비가 1.0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勤勞人口에 대한 老人人口 比率이 높아짐에 따라 未來世代로 갈수록 연금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賦課方式이 人口構造의 변동에 대응하여 世代間 再分配를 고르게 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음.

V.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

1. 年金給與水準의 段階的 調整

- 3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給與水準을 본다면, 平均所得階層을 기준으로 할 때 52.5%의 所得代替率을 나타냄.
- 이는 우리나라 연금이 世帶基準 年金임을 감안한다면, ILO 권고 기준인 60%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나 長期的으로는 年金加入期間이 40년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의 증가에 따라 所得代替率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급여산식상의 全加入者 平均所得月額을 現행의 總額基準에서 각종 租稅 및 社會保險料 負擔을 공제한 額을 基準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방법은 給與水準을 下向調整하면서 加入者 所得과 年金受給者의 年金給與를 연계하여 純所得基準 世代間 衡平性을 維持시키는 방안임(S안).

$$2.4 \times (A + 0.75B) \Rightarrow 2.4 \times (1-t) \times [A + B]$$

- 우리나라 國民의 租稅 및 社會保險負擔率은 1994년 현재 22.9% 수준이나, 2000년까지는 25%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안은 국민연금산식에서 가입자의 生涯平均報酬月額(B)에 곱하여 주고 있는 상수 0.75를 全加入者平均報酬月額(A)에도 동일하게 곱하여 주는 A안(연금급여율을 현행수준의 85.7%수준으로 조정)과 비슷한 대안임.
 - 그러나 t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율)가 全加入者 平均 純所得의 변동에 따라 連動이 되면 年金給與算式 調整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S안에 따른 財政收支 效果 및 世代間 收益比를 분석해 보면,
- 各출수입액이 총지출액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5년, 총수입액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8년,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7년경으로 나타났음. 이는 A안 보다 높은 재정수지 개선효과로서 기본안과 비교할 때 수지적자시점은 4년, 기금고갈시점은 8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음.
 - 또한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는 1.81배, 2030년의 연금수급자는 1.75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는 1.85배로 거의 1.7~8배사이의 세대간 균형된 수익비를 보였음.
 - 따라서 순소득 기준에 의한 연금급여 지급방법은 세대간 소득 재분배를 고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재정수지효과로는

미흡함으로 연금보험료의 조정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한편 所得上限에 따른 加入期間의 逆進性을 배제하기 위한 加入者 平均所得에 대한 最低等級所得의 비율은 t 가 0.25인 경우 B는 A의 46.0% 이상이어야 하며, t 가 0.30인 경우, B는 A의 41.6%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分析되었음.

2. 年金保險料의 段階的 調整

- 國民年金 保險料는 1988년에 연금도입시 3%부터 5년간격으로 3%씩 증가시켜 9%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현 年金保險料 水準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세대의 연금급부를 위한 부담이 次世代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 앞의 分析에 따르면 현행 급여수준에 적합한 年金保險料率은 18%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금보험요율 3% 인상안(H안)과 순소득기준 급여지급안(S안)을 결합한 효과(T안)를 보면,
 - 세대간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0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3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0년대 중반경으로 나타났음. 2050년경의 기금배율은 4.8배, 적립율은 33.3%로 2025년경에 55.9%까지 올랐던 적립율이 저하함.
 - 또한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효과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57배, 203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63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38배로 2030년대이전 연금수급세대의 수익비가 1.5~1.6배로 비슷하나 그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 수급자의 경우 1.38배 까지 하락함.

- T안으로는 재정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年金給與率을 순소득 기준으로 지급 하는 안(S안), 年金保險料率을 6%포인트 단계적 상향조정 안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효과(U안)를 보면,
 -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4년경, 총지출이 총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41년경이나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50년경의 기금배율은 10.6배, 적립율은 76.2%을 나타내었음.
 - 또한 이 안에 의한 세대간 수익비 변화효과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50배, 203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34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09배로 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만 2050년 수급자 경우도 1.0배를 초과하여 국민연금가입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연금보험료율 수준은 15% 수준, 급여지급기준을 순소득액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재정수지 효과면에서나 세대간 수익부담 조정 효과 면에서나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平均壽命 延長에 따른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 현행의 年金受給年齡(60세)은 선진국의 수준(65세내외)에 비하여 낮아 年金財政收支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외국에 비하여 5~7년이 짧기 때문에 연금수급기간은 오히려 짧다고 할 수 있음.
- 年金受給年齡(현행 60세)은 평균수명의 변화, 고령자 취업률, 연금재정수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上向 調整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인 高齡者 就業構造의 변화를 감안하여 年金受給年齡을 55세부터 65세까지 選擇할 수 있도록 하고 受給年齡에 따라 給與率을 調整하는 方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60세퇴직자의 수익비를 100.0%으로 할때, 1세 연령당 6~7%포인트 정도의 收益比의 차이를 보였음.

4. 積立基金의 收益率 提高

- 公共部門과 동시에 福祉部門에의 投資比率이 높아지면서 基金運營 收益率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基金의 收益率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基金이 재분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될 것임.
- 國民年金基金에 의한 福祉事業의 投資를 촉진하면서 國民年金基金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公共部門에 投資되는 收益率 水準과 福祉事業投資의 촉진에 필요한 이자율 격차만큼을 政府가 利差를 補填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背景

5人 이상 事業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國民年金制度가 1995년 7월 農漁村地域 自營者 및 農漁民에게 適用되면서, 이제 都市地域 自營者만 擴大가 되면 全國民 年金化가 달성되게 된다.

國民年金制度가 現行체계를 유지한다면, 2023년까지는 積立基金이 꾸준히 증가하여 212兆원(1990년 불변가격)으로 늘어나지만,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給與支出의 急增으로 2039년경에는 積立基金이 없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表 1-1〉 國民年金財政 關聯指標 展望

	연금부양비율 ¹⁾ (%)	노인인구부양비율 ²⁾ (%)	총수지율 ³⁾ (%)	기금배율 ⁴⁾ (배)
1996	1.048	13.684	515.730	21.50292
2000	1.921	15.679	990.646	45.41280
2005	6.374	17.929	560.624	39.17157
2010	11.503	20.437	338.761	32.71305
2015	17.648	23.703	216.439	24.73015
2020	26.477	29.736	134.330	16.26525
2025	34.317	35.703	90.930	10.34893
2030	41.483	41.306	65.461	5.97758
2035	47.525	46.774	49.453	2.38612
2040	48.562	48.623	40.052	0.00000
2045	47.263	49.048	36.309	0.00000
2050	43.169	46.382	35.159	0.00000

註: 1) 연금부양비율 = 연금수급자수/연금가입자수

2) 노인인구부양비율 = 60세 이상 인구/15~59세 인구

3) 총수지율 = 총수입 / 총지출

4) 기금배율 = 적립기금 / 총지출

이러한 國民年金 財政不安의 原因은 老人人口 扶養比率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年金扶養比率의 상승으로 年金給與支出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年金積立基金의 완전소모가 연금 제도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表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50년의 總收支率을 볼 때 年金保險料率이 현행보다 2배이상 인상되면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財源의 조달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未來의 年金加入者가 높은 年金保險料를 부담할 능력이 의사가 있느냐가 문제시 된다.

公的年金制度의 역사가 오랜 先進國의 경우 초창기에는 年金基金을 積立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당년도의 급여지출에 대비한 支拂準備金 성격의 基金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先進國이 積立基金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老齡人口比率의 급증, 1960~70년대 사이의 年金支給率의 무리한 인상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현재 노령세대에 필요한 年金給與費를 동시대의 근로세대에게 부담지우는 賦課方式으로 轉換하여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年金 財政 負擔이 가중됨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연금급여율의 인하 등의 방법으로 年金財政收支의 安定化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國民年金도 財政安定化를 위한 政策的 調整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본 研究는 國民年金의 長期的 財政 安定化를 위한 國民年金 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하는데 있다.

第2節 概念定義 및 研究方向

그러면 年金財政 安定化 의미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보자. 먼저 安定이라는 개념은 漢字 용어로 安全하게 자리 잡음이라는 뜻을 지니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중심이 바닥의 중심에 있어, 힘을

가했을 때에 原狀態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는 일』이라고 설명된다. 이는 英文으로 보면 stability를 의미한다. 영문의 stable은 『fixed, not likely to move or change』의 상태를 의미한다. 經濟理論에서의 안정이라는 개념은 均衡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均衡體系가 어떤 힘에 의하여 괴리된 경우에 다시 균형체계로 復歸하는 힘이 작용하면 그 均衡體系를 安定的이라고 하고 그 균형체계로 부터 分離하는 힘이 작용하면 不安定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公的年金保險上의 均衡體系를 年金財政의 收入과 支出이 一致되는 體系라고 정의한다. 年金財政會計로 볼때, 매회기의 收入과 支出은 일치하여야 하지만 年金給與등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費用을 제도내적으로 調達할 수 없는 不均衡 狀態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不安定 狀態라고 할 수 있다.

加入者 개인적 측면에서의 公的年金制度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일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年金財政이 完全賦課方式에 의하여 운영될 경우 老齡世代의 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同時代의 勤勞世代의 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의 世代間 比率이 일정하지 않는한 個別 世代의 입장에서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에 完全積立方式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영은 個別 世代 입장에서의 수입과 지출의 일치를 전제로 운영되지만 연금제도 외적인 변수인 임금상승율이나 이자율 등의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로 均衡은 보장받지 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公的年金 제도상의 均衡이란 가입자 개인측면의 收入과 支出의 相等狀態가 持續的으로 유지되어 年金財政收支가 일치되는 상태를 의미하겠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쉽지 않다.

生産管理理論에서 사용되는 適應制御(adaptive control)개념은 목표

china 환경이 변화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바람직한 條件을 찾아낼 수 있도록 制御裝置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制御方式을 의미하는데 年金財政 安定化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의 年金財政의 安定化란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變數를 발견하고 이를 변수들의 適正한 調整을 통하여 연금재정이 均衡狀態에 도달하거나 均衡狀態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으로 定義한다.

그러면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變數값을 어떻게 適正化시킬 수 있는가. 適正의 원래 어의는 알맞고 바름을 의미한다. 經濟學的인 適正의 개념은 영어의 optimality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最適이라는 개념과 통하는 것으로 주어진 制約條件下에서 目的函數를 最適化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公的年金上의 適正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人口·勞動·經濟條件下에서 年金加入者(受給者)의 效用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給與率, 年金保險料率, 年金受給年齡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加入者의 效用函數는 價値觀에 따라 극명히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 예를 들면 最大多數의 最大滿足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Rawlsian적인 最低階層의 效用水準을 목적으로 하느냐 등에 따라 함수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期間上으로도 1世代 기준으로 볼 것이냐, 2世代기준으로 볼 것이냐, n世代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最適置는 변동할 수 있다.

한편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給與率, 年金保險料率, 年金受給年齡 등의 適正성은 독립적이지 않다. 이들 調整變數는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므로 均衡狀態에서 한 변수가 조정되면 새로운 均衡을 위해서는 여타변수도 조정되어야 한다. 年金財政을 安定化시킬 수 있는 適正한 변수들의 集합은 多數 존재할 수 있고 이들 집합중 어떤 집합이

선택되는냐는 地域과 時代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國民年金의 財政安定化를 위해서는 國民들의 同意가 요망되고 있다. 『高給與・高負擔』模型이나, 『低給與・低負擔』模型이나의 選擇, 제도초기에 누적되고 있는 赤字分을 어느 世代가 얼마만큼 어떤 方式으로 分擔할 것이냐의 選擇 등 複雜多岐한 選擇의 岐路에 서 있다.

本 研究는 公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각종의 대안을 選擇하는 價値判斷의 기준으로 公評性을 適用하고 있다. 公的年金制度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國民의 社會的 連帶라고 할 수 있으므로 公的年金制度가 안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公平性의 확보가 기초되어야 한다. 公平性은 制度에 加入하고 있는 勤勞世代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老齡世代 각각의 世代內 公平성과, 勤勞世代와 年金을 受給하는 老齡世代사이의 世代間 公平성으로 나눌 수 있다.

第3節 研究方法 및 構成

本 報告書는 크게 3가지의 研究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國民年金의 受給負擔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收益比分析方法을 사용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年金保險料를 부담액과 給與受給額을 대비하여 비교하였다. 즉, 노령연금급여율, 연금수급연령, 연금보험료율 등의 변동에 따라 收益比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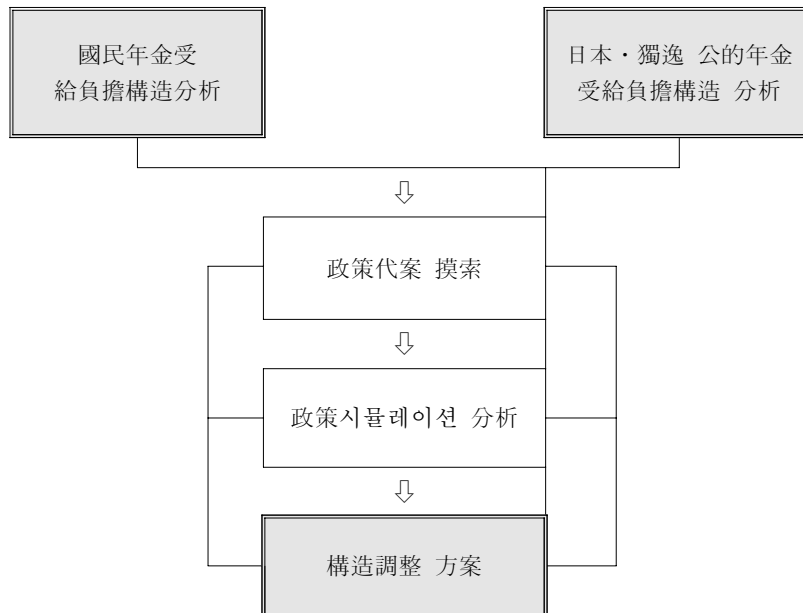
둘째, 獨逸과 日本의 公的年金構造에 대한 분석과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外國制度에 대한 比較分析은 각국의 受給負擔構造를 분석 및 政策決定過程에 대한 비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셋째, 政策시뮬레이션 分析方法이다. 여기서는 年金財政의 측면에서

國民年金 構造調整에 따른 年金財政收支 상의 效果를 분석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序論에 이어 國民年金의 受給負擔構造 分析(제2장), 外國의 公的年金의 受給負擔 構造 分析(제3장), 政策시뮬레이션 分析(제4장),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제5장) 으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각종 國內外 公積연금관련 統計資料를 附錄에 담고 있다

[圖 1-1]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 研究方法



第 2 章 國民年金의 受給 · 負擔構造 分析

第 1 節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1. 加入對象 및 加入者 現況

國民年金은 1988년에 10인 이상 事業場加入者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년 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최근(1995. 7.)에 郡地域 自營者 및 農漁民에게 확대되었다.

〈表 2-1〉 加入者 現況

연도	총 계		사업장가입자		농어촌	지역	임의계속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지역가입자	가입자	가 입 자
1988	58,583	4,432,695	58,583	4,431,039	-	1,370	286
1989	62,952	4,520,948	62,952	4,515,680	-	4,036	1,232
1990	72,511	4,651,678	72,511	4,640,335	-	8,274	3,069
1991	80,987	4,768,536	80,987	4,747,605	-	14,921	6,010
1992	120,374	5,021,159	120,374	4,977,441	-	32,238	11,480
1993	129,703	5,159,868	129,703	5,108,871	-	40,452	10,545
1994	144,910	5,444,818	144,910	5,382,729	-	48,332	13,757
1995	-	7,496,400	-	5,542,000	1,890,000	48,700	15,700

國民年金 加入者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事業場加入者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1995년 현재 554만 2,000명이다. 地域加入者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995년 7월 이전에는 모두 임의가입대상자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이 당연가입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현재 가입자는 189만명이다. 그 외 임의지역가입자

는 4만 8,700명, 임의계속가입자는 1만 5,700명으로 총 749만 6,400명이 가입하고 있다.

2. 給與種類 및 給與現況

國民年金給與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老齡年金은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完全老齡年金, 60세 이상 도달자로서 15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減額老齡年金, 55세 이상 가입자로서 연금을 수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早期老齡年金, 연금제도 도입초기에 45세 이상자였던 가입자에게 과도기적으로 지급되는 特例老齡年金 등이 있다. 현재는 特例老齡年金만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2만 9천명 정도이다.

障害年金은 가입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障害가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7천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遺族年金은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가입자나 老齡年金受給權者가 死亡하였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으로 현재 2만 9천명 정도가 수급하고 있고, 返還一時金은 가입기간이 연금수급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으로 1994년도에는 79만명이 수급하였다.

〈表 2-2〉 給與種類別 受給要件 및 給與水準

연금의 종류	수급권자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노 령 연 금	완전 노령연금	본인	○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	○ 기본연금액의 72.5~ 92.5%+가급연금액
	재직자 노령연금	"	○ 20년 이상 가입하고 60~65세 미 만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할 때
	조기 노령연금	"	○ 20년 이상 가입하고 55~60세 미 만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회 망할 때
	특별 노령연금	"	○ 1988. 1. 1. 현재 45~60세 미만자 로서 5년 이상 가입하였을 때
장해연금	"	○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가 존속 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다만, 질병은 초진일 현재 가입기 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 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때부터 지급	○ 기본연금액의 60~ 100% + 가급연금액 ○ 장해 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유족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때 ○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가입자이 었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장해등급 2급 이상의 장해연금수 급권자가 사망한 때	○ 기본연금액의 40~ 60% + 가급연금액 ○ 장해 4급은 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본인 또는 유족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이 었던 자가 사망한 때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상실후 가입자로 되 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 한 때	○ 사용자부담금에는 정기예금 이자율, 본인기여금 및 퇴직 금 전환금에는 재형 저축 이자율을 가산 하여 본인에게 지급

〈表 2-3〉 給與種類別 受給者 現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총 계		특례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¹⁾		반환일시금	
	수급자	급여액	수급자	급여액	수급자	급여액	수급자	급여액	수급자	급여액
1988	3,128	301	-	-	-	-	-	-	3,128	301
1989	59,402	6,034	-	-	1,811	753	69	54	57,522	5,227
1990	257,318	42,301	-	-	4,927	3,058	501	483	251,890	38,760
1991	382,790	110,882	-	-	8,392	6,601	1,211	1,408	373,187	102,873
1992	492,062	216,542	-	-	13,795	12,943	3,441	5,058	474,826	198,541
1993	583,014	333,132	10,971	6,447	20,336	20,481	6,237	10,248	545,470	295,956
1994	845,613	519,074	22,530	18,524	26,431	28,981	7,001	12,180	789,651	459,389
1995	875,900	793,900	38,162	37,500	32,459	39,100	8,617	16,600	796,237	661,800

註: 1) 장해연금은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의 합임. 1995년도 장해연금수급자는 7,088명에 127억원임.

2) 1995년 현재 사망일시금으로 425건에 5억원이 지출됨.

3. 費用負擔

國民年金制度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地域加入者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事業場加入者의 年金保險料는 보수월액의 6%로 가입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씩 부담하고 있으며, 地域加入者는 소득월액의 3%를 부담하여야 하며, 農業構造調整資金에서 가입자 1인당 월 2,200원씩 보조토록 되어 있고, 年金保險料는 保險料率 引上計劃에 따라 9%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表 2-4〉 年金保險料 調整計劃

(단위: %)

구 분		'88~'92	'93~'97	'98이후
사업장	계	3.0	6.0	9.0
	근로자	1.5	2.0	3.0
	사용자	1.5	2.0	3.0
	퇴직금전환금	-	2.0	3.0
구 분		'95~'99	2000~2004	2005이후
지역가입자		3.0	6.0	9.0

4. 國民年金基金 및 運用 現況

國民年金制度의 財政推移를 보면 <表 2-5> 와 같이 1988년의 總收入은 5,282억원이며, 이 중 釀出金收入이 96.0%인 5,07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給與支出은 반환일시금으로 3억원만 지출되었다. 1993년의 總收入은 3조 2,227억원이고, 給與는 특례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이 반환일시금에 가세하여 3,331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6년간의 累積基金은 8조 4,246억에 달하고 있다. 1994년도 總收入은 4조 3,415억이며, 給與로 지출된 금액은 5,191억원에 달하고 있고, 1994년까지 累積된 基金額은 12조 7,661억원이다.

<表 2-5> 國民年金 財政收支推移

(단위: 억원)

연도	수 입				지 출			누적 적립금
		사용자	가입자	이식 수입등 ²⁾		급여	관리비	
1988	5,282	2,535	2,535	213	3	3	0	5,282
1989	7,120	3,139	3,139	841	67	60	7	12,402
1990	10,193	4,170	4,170	1,853	538	423	115	22,595
1991	12,795	4,924	4,924	2,947	1,507	1,109	398	35,390
1992	16,628	6,117	6,117	4,394	2,400	2,165	235	52,019
1993	32,227	13,197	13,197	5,834	3,613	3,331	282	84,246
1994	43,415	16,629	16,629	10,157	5,976	5,191	785	127,661
1995	53,935	-	-	14,272	7,939	7,555	384	159,554

註: 1) 국민연금 퇴직금부담분 포함

2) 기타수입은 적립금 운용수익 및 기타 잡수입임.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4년.

1995년말 國民年金 財政收支를 보면, 총수입은 5조 3,935억원으로 이 중 연금보험료 수입이 3조 9,663억원, 기금운용수입이 1조 4,272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7,939억원으로 이 중 급여지출이 7,555억원이었다.

國民年金基金은 크게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1993년말의 公共資金管理基金法案 통과로 여유자금은 상대적으로 수익율이 낮은 공공관리기금에 예탁도록 되어 있다. 1995년말 현재 총 15조 9,554억원의 적립기금중 공공부문에 10조 4,355억원, 복지부문에 6,302억원, 금융부문에 4조 8,897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表 2-6〉 基金運用 現況

(단위: 억원)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 계	5,279	12,332	21,987	33,275	47,504	76,118	113,557	159,554
공공부문	2,880	6,278	10,178	15,178	21,278	30,800	65,520	104,355
복지부문	-	-	-	1,200	2,400	3,900	4,828	6,302
금융부문	2,399	6,054	11,809	16,897	23,826	41,418	43,209	48,897

〈表 2-7〉 收益率 現況

(단위 :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 계	11.98	12.79	12.55	12.76	12.68	11.99	12.10	12.11
공공부문	11.00	11.00	11.00	11.00	11.00	9.67	10.25	11.64
복지부문	-	-	-	11.00	11.00	11.00	10.94	10.68
금융부문	12.95	14.35	13.83	14.04	14.07	13.87	13.91	13.11

第2節 收益比 分析

1. 分析方法 및 基本假定

公的年金制度의 健實性은 年金財政의 安定性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연금재정의 안정성 여부는 年金受給負擔構造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年金 受給負擔構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本章에서 國民年金의 受給·負擔

構造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分析方法은 收益比 分析이다. 收益比란 연금제도의 가입이후 납입한 年金保險料를 연금수급시점을 기준으로 現價하여 합계한 收入額(A)을 연금수급시점이후 부터 사망시까지 수급하는 年金給與를 연금수급시점기준으로 現가하여 합계한 支出額(V)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먼저 年金加入者의 支出額은 式 (2-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 = cy_1[(1+i)^{l-1} + (1+g)(1+i)^{l-2} + (1+g)^2(1+i)^{l-3} + \dots + (1+g)^{l-1}] \dots \dots \dots (2-1)$$

式 (2-1)을 等比數列公式에 따라 합한 것이 式 (2-2)와 式 (2-3)이다.

$$A = cy_1 \left[\frac{(1+g)^l - (1+i)^l}{g-i} \right] \quad (i \neq g \text{의 경우}) \dots \dots \dots (2-2)$$

$$A = cy_1 l(1+i)^l \quad (i = g \text{의 경우}) \dots \dots \dots (2-3)$$

가입자의 연금수급개시이후 사망까지의 收入額은 式(2-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V = a(1+g)^{l-1}y_1[(1+i)^{-1}(1+g) + (1+i)^{-2}(1+g)^2 + \dots + (1+i)^{-m}(1+g)^m] \dots \dots \dots (2-4)$$

式 (2-4)를 등비수열공식에 의하여 합한 것이 式 (2-5)와 式 (2-6)이다.

$$V = \frac{ay_1(1+g)^l [(1+g)^m - (1+i)^m]}{(g-i)(1+i)^m} \quad (i \neq g \text{의 경우}) \dots \dots (2-5)$$

$$V = am(1 + g)^l y_1 \quad (i = g \text{의 경우}) \dots\dots\dots (2-6)$$

l : 가입기간, m: 연금수급기간, y: 가입기간중 실질소득
 g: 실질임금상승율, i: 실질이자율
 c: 연금보험료율, a: 급여율

위의 식들을 國民年金制度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 값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加入期間은 18~59세로 하였으며, 수급기간은 60세 이후 사망시까지로 하였다. 年金保險料率은 국민연금계획에 따라 5년 간격으로 3→6→9%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給與率은 1년 가입당 1.7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의 식에서는 年金受給期間中 실질가치 보전을 위한 年金給與의 連動은 임금상승율이 아닌 消費者物價上昇率을 적용하였다. 한편 實質賃金上昇率은 6%에서 3.5%까지, 實質利率은 5.5%에서 3%, 消費者物價上昇率은 5%에서 2.5%까지 각각 漸進적으로 下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연구에 사용된 연금제도 가입기간은 經濟活動參加率을 기준으로 산정된 全生涯 平均加入期間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收入額은 老齡年金給與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장해, 유족연금 등 기타 보험성 급여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本 研究에서 제시된 研究結果들은 우리나라 제도에 기초한 實證分析 模型들에 근거한 것이지만 前提 혹은 假定條件이 변동되었을 경우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그 絕對的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相對的인 효과가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의 분석대상은 男子의 生命標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여자의 수익비는 남자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低所得層에 대한 收益比는 국민연금 算式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上限이 존재하는 現實에서는 오히려 수익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分析結果

가. 給與率 變動時 收益比 變動 比較

현행 급여율구조를 보면 全加入者중 平均所得者의 경우 制度加入年數가 1년 변동할 때마다 年金給與率은 1.75%포인트 변동하도록 되어 있다. 加入年數에 따른 給與率의 變動率을 1.75%포인트에서 1.7%, 1.5%, 1.0%로 변동시켰을 경우 수익비는 2.27에서 2.21, 1.95, 1.30으로 떨어졌다. 즉, 給與率의 變動率을 0.25%포인트 변동시 收益比가 약 15% 가량 변하게 되어 給與率의 변동이 收益比의 변동과 正比例함을 나타내고 있다.

〈表 2-8〉 給與率 變動時

급여율	수입(A)	지출(B)	A/B	0.0175=100.00
0.0100	24.81940	19.08580	1.30041	57.14
0.0150	37.22911	19.08580	1.95062	85.71
0.0170	42.19299	19.08580	2.21070	97.14
0.0175	43.43396	19.08580	2.27572	100.00
0.0200	49.63881	19.08580	2.60082	114.29
0.0250	62.04851	19.08580	3.25103	142.86

나. 受給年齡 變動時 收益比 變動 比較

年金受給開始年齡과 관련하여 현행 연금제도에서는 60세에 달할 때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아래 표의 분석에 따라 受給年齡을 上向調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현행대로 年金受給年齡이 60세인 경우 收益比는 2.27이었으나 61세로 상향조정하면 2.13, 62세로 조정시에는 2.13, 63세로 조정시에는 1.84, 64세로 조정시에는 1.70, 65세로 조정시에는 1.56으로 하락하였다, 즉 年金受給年齡 1세당 收益比 變動은 6~6.5%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반대로 年金受給年齡을 59세, 58세, 57세등으로 낮출 경우의 收益比는 2.42, 2.57, 2.72 등으로 높아지게 된다. 受給年齡別 收益比는 年金受給年齡 自由選擇制의 도입시 고려하여야 하는 年金給與率 調整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즉, 60세 수급시의 수익비와 여타연령 수급시의 수익비 비율만큼을 조정함으로써 受給年齡에 따른 衡平性의 偏差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表 2-9〉 受給年齡 變動時

수급연령	수입(A)	지출(B)	A/B	60세=100
55	41.96885	13.86772	3.02637	132.98
56	42.65634	14.84384	2.87367	126.27
57	43.20160	15.87043	2.72214	119.61
58	43.59275	16.94927	2.57195	113.01
59	43.60468	17.99517	2.42313	106.47
60	43.43396	19.08580	2.27572	100.00
61	42.72995	20.07242	2.12879	93.54
62	41.85306	21.09775	1.98377	87.17
63	40.80266	22.16214	1.84110	80.90
64	39.57936	23.26593	1.70117	74.75
65	38.18265	24.40961	1.56425	68.73

다. 加入年齡 變動時 收益比 變動 比較

한편 加入時 年齡에 따른 收益比 變動을 살펴본 결과 加入時 年齡은 收益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收益比가 2.15 ~2.27의 범위내에서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現 年金構造가 加入期間에 따른 給與率 變動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表 2-10 참조).

또한 제도 도입 당시의 年金保險料率 차이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年金保險料를 9%로 고정시키면 加入年齡에 따른 收益比의 변동이 더욱 미소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表 2-11 참조).

〈表 2-10〉 加入期間 變動時(加入年齡)

입직연령	수입(A)	지출(B)	A/B	25세=100
18	43.43396	19.08580	2.27572	102.94
19	40.91887	18.01108	2.27187	102.77
20	38.55186	16.99799	2.26802	102.59
25	27.64330	12.50498	2.21058	100.00
30	18.42169	8.54957	2.15469	97.47
35	11.87951	5.49226	2.16295	97.84
40	7.47888	3.42955	2.18072	98.64
45	4.52016	2.04459	2.21079	100.01

〈表 2-11〉 加入年齡 變更의 境遇(年金保險料 9% 固定時)

입직연령	수입(A)	지출(B)	A/B	25세=100
18	43.43396	20.16568	2.15386	100.05
20	38.55186	17.90079	2.15364	100.04
25	27.64330	12.84080	2.15277	100.00
30	18.42169	8.54957	2.15469	100.08
35	11.87951	5.49226	2.16295	100.47
40	7.47888	3.42955	2.18072	101.29
45	4.52016	2.04459	2.21079	102.69

라. 保險料 變動時 收益比 變動

年金保險料의 변동에 따른 收益比 變動을 살펴본 결과 年金保險料率을 현행의 9%(1998년 사업장가입자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경우 收益比는 2.15였으나, 年金保險料率을 12%로 상향조정할 경우 收益比는 1.62배로, 15%로 상향조정할 경우 收益比는 1.29로, 18%로 상향조정할 경우 收益比는 1.0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收益比를 1.0의 균형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年金保險料率을 18%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年金制度 도입당시에는 3~6% 수준의 經過的 年金保險料率

을 부과하였는 바, 이 기간의 收益比는 3.0~6.0 수준으로 受給負擔構造가 가장 不均衡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制度初期 加入者는 경과기간 이후 가입자보다 收益比上으로 유리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12〉 年金保險料 變動時

연금보험료	수입(A)	지출(B)	A/B	0.09=100
0.03	43.43396	6.72189	6.46157	299.99
0.06	43.43396	13.44378	3.23078	149.99
0.09	43.43396	20.16568	2.15386	100.00
0.12	43.43396	26.88757	1.61539	74.99
0.13	43.43396	29.12820	1.49113	69.23
0.14	43.43396	31.36883	1.38462	64.28
0.15	43.43396	33.60946	1.29231	59.99
0.16	43.43396	35.85009	1.21154	59.24
0.17	43.43396	38.09072	1.14028	52.94
0.18	43.43396	40.33136	1.07693	50.00
0.19	43.43396	42.57198	1.02025	47.36
0.20	43.43396	44.81261	0.96924	45.00

마. 消費者物價 變動時 收益比 變動

消費者物價를 변동시켰을 경우의 收入과 支出의 變化를 살펴보면 物價 上昇率이 낮을수록 收益比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表 2-13〉 消費者物價 變動時

소비자물가	수입(A)	지출(B)	A/B
0.05	52.49574	19.08580	2.75051
0.04	48.58566	19.08580	2.54564
0.03	45.06324	19.08580	2.36109
0.02	41.88611	19.08580	2.19462

消費者物價上昇率이 2%일 경우 收益比는 2.19로 消費者物價上昇率이 5%인 경우보다 수익비가 0.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賃金上昇率과 利率 變動時 收益比 變動

賃金上昇率이 동일할 경우 利率이 높을수록 收益比는 1.0에 가까워지며, 반대로 利率이 동일할 경우 賃金上昇率이 높을수록 收益比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賃金上昇率은 낮을수록, 利率은 높을수록 收益比는 낮아지게 되므로 收益比가 均衡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賃金上昇率은 낮고, 利率이 높은 상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表 2-14〉 賃金上昇率과 利率 變動時

임금상승률	이자율	수입(A)	지출(B)	A/B	지수
0.060	0.055	51.69518	26.38058	1.95959	98.19
0.050	0.040	38.77524	16.46953	2.35436	117.97
0.040	0.030	28.13425	11.10740	2.53293	126.92
0.040	0.040	26.19148	13.12414	1.99567	100.00
0.030	0.040	17.62461	10.53187	1.67345	83.85
0.040	0.055	23.67427	17.09414	1.38494	69.40
0.050	0.060	32.89521	25.24150	1.30322	65.30

예를 들면 賃金上昇率이 5%이고 利率이 6%인 경우의 收益比는 1.30인데 반하여 賃金上昇率이 5%이고 利率이 4%인 경우의 收益比는 2.35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經濟變數의 동향이 年金財政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으로 年金構造가 일정하여도 賃金上昇率과 利率의 변동에 따라 受給負擔構造가 변동하고, 이는 年金財政收支의 변동을 수반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勤勞者의 立場에 상당히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賃金上昇率이 낮고 利率이 높은 상태는 勤勞의 대

가로서의 임금보다 資本의 대가로서의 이자율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勞動分配率은 선진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賃金上昇率이 利率보다 높아져 동일한 年金構造下에서도 收益比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 再分配率

國民年金의 世代內 再分配 效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民年金의 世代內 所得再分配效果를 살펴보기 위해 총 45등급의 標準所得月額 等級表를 기준으로 1995년말 기준 평균소득월액(A)인 943,502원을 年金給與算式¹⁾에 대입하여 계산하여 보았다.

그 결과 最下等級인 22만원 소득자가 20년 가입했을 경우 연금월액이 22만 2천원으로 所得代替率이 100%를 넘는 반면, 20등급인 85만원 소득자의 경우 所得代替率이 37.2%, 最上等級인 45등급인 360만원 소득자의 경우 所得代替率이 2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급여는 자신의 소득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所得上限制度²⁾가 존재함으로 실제로는 소득대체율은 100%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最低 所得等級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하면 이미 所得代替率이 100%를 초과함으로 연금보험료는 계속 납입됨에도 불구하고 加入期間 증가에 따른 年金給與額의 增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收益比는 오히려 下落하는 결과를 낳는다.

1) $2.4(A+0.75B)(1+0.05n)$ 인 급여산식에서 $(1+0.05n)$ 부분은 아직 그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므로 제외하고 계산함.

2) 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 제3항(슬라이드제)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49조).

그러므로 현행의 給與算式 構造는 소득대체율이 100%를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加入期間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收益比는 낮아지는 逆進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低所得層에게는 연금제도가 勞動誘引을 減退시키는 作用을 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한편 最低所得階層과 最高所得階層간에 保險料 負擔額의 차이는 16.4배이나, 基本年金 給與額의 차이는 3.2배로 높은 所得再分配 效果를 보이고 있다. 즉, 所得이 높을수록 所得代替率이 낮아져 再分配 效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最低所得等級인 1등급의 收益比는 6.54, 10등급은 4.28, 20등급은 2.41, 30등급은 1.71, 40등급은 1.41, 最高等級인 360만원 소득자의 경우도 1.31로 1.0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世代內 再分配 보다는 世代間 再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15〉 所得水準別(標準所得月額 等級別) 總給與率

등급	표준소득월액(A)	연금월액(B)	B/A	수익비
1	220,000	221,700	100.8	6.54
5	260,000	227,700	87.6	5.68
10	370,000	244,200	66.0	4.28
15	570,000	274,200	48.1	3.12
20	850,000	316,200	37.2	2.41
25	1,210,000	370,200	30.6	1.98
30	1,660,000	437,700	26.4	1.71
35	2,190,000	517,200	23.6	1.53
40	2,800,000	608,700	21.7	1.41
45	3,600,000	728,700	20.2	1.31

따라서 所得再分配 측면에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급여산식 구조로 볼 때 最低所得階層의 給與率이 너무 높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20년 가입시에도 자신의 勤勞時 所得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所得上限制로 인하여 연금급여가 자기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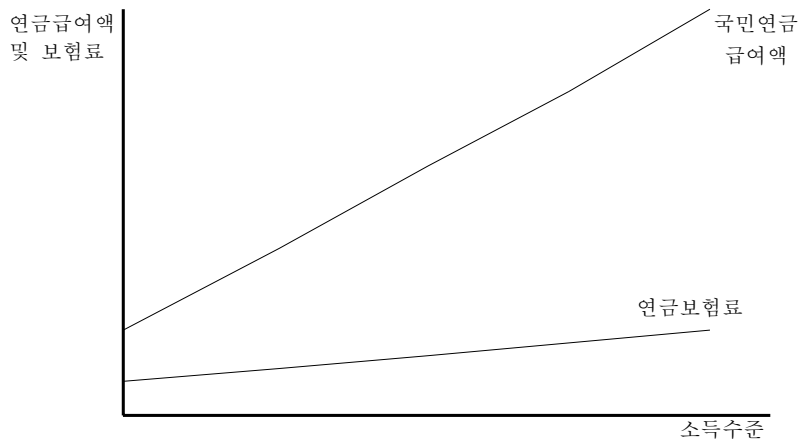
서는 再分配 效果가 오히려 제한된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는 給與算式 構造상 본인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보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加重置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최저소득등급(22만원)과 최고소득등급(360만원)의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저등급소득대비 최고등급소득비율이 16.4배이나 日本의 경우 6.4배, 獨逸은 2.7배로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最高所得等級의 자의 경우도 年金收益比가 1.0을 초과하여 世代內 再分配 측면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世代內 再分配가 없는 높은 再分配率은 未來世代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現世代의 高給與를 위하여 未來世代가 高負擔을 貯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未來世代는 높은 老人扶養比率의 부담을 貯야 하는 세대이므로 그 부담은 한층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圖 2-1] 現行 國民年金의 世代內 再分配 構造



第3章 外國 年金制度의 受給·負擔構造 分析

第1節 分析틀

본 장에서는 外國 年金制度의 歷史的 發展段階別 受給·負擔構造의 分析을 통하여 우리나라 연금제도 수급·부담구조의 적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示唆點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20년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完全老齡年金 수급자가 2008년부터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本格的인 年金受給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정수지상 문제가 없으나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年金制度上의 受給負擔構造가 構造的인 赤字要因을 안고 있어 앞으로 年金制度를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특히 어떻게 適正한 受給負擔構造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또한 그 개혁의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先進外國의 經驗에 대한 고찰은 有意味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많은 선진외국중에서도 日本과 獨逸의 연금제도 발전 경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日本과 獨逸은 社會보장정책 傾向의 유형 분류시 종종 비슷한 군으로 분류되곤 한다(이혜경, 1986: 39~82). 이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政治文化的 環境이 유사하기 때문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社會보장 部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선진경험에 의존하여 많이 참고삼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獨逸과 日本, 그리고 社會보장제도의 도입시 일본의 경험을 많이 참고한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부문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상당한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³⁾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 국가는 직역별 상이한 연금제도, 소득비례 및 재분배적 요소의 균형 등 共通的인 제도들을 공유하며 출발하였지만, 年金制度의 歷史나 成熟度는 각기 다르며 이후의 발전 과정에서 각각 독특한 발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日本의 年金制度는 1986년 基礎年金의 도입을 통한 이층연금체제의 구축으로 독일의 모델과 질적으로 상이한 제도들로 변화되었다.

한편 우리가 참고로 삼은 일본, 독일과 대비되는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는 美國, 스웨덴, 英國 등의 선진외국의 연금제도 경험도 우리나라 연금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유익한 示唆點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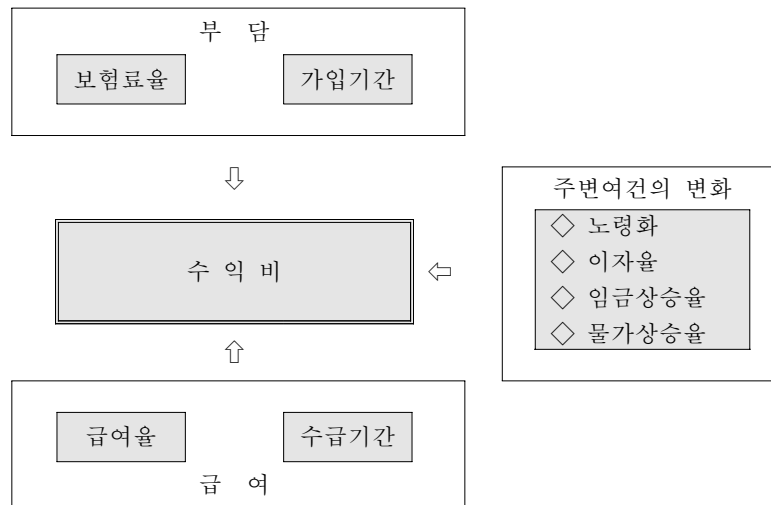
外國 年金制度의 受給負擔構造의 분석을 위한 研究質問은 첫째, 역사적인 발전단계별 연금제도 수급여담구조와 관련한 制度의 變化內容은 무엇인가? 둘째, 연금제도의 수급여담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變遷背景은 무엇인가? 셋째, 수급여담구조의 변화에 따른 年金財政收支 및 世代內·世代間 再分配效果에의 영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본 연구는 특히 소득계층별 급여율 비교를 통한 世代內 所得再分配 정도와 함께 世代間 再分配의 적정점을 찾는 제도적 변화와 그 배경, 기대효과에 주요한 관심을 둔다. 즉 본 연구의 主要關心은 負擔(보험료율, 임금, 가입기간)과 受給(급여율, 임금, 수급기간), 그리고 制度的 與件(노령화율, 이자율, 임금 및 물가상승율) 등이 世代別, 所得階層別

3) 독일이 1989년에 일반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후 53년뒤인 1942년에 일본이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 그로부터 46년 경과후인 1988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험을 참고삼아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의 年金收益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圖 3-1] 收益比와 受給·負擔과의 關係



이에 관련된 主要變數는 ①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수급기간), ② 급여산식 조정 (급여율, 소득계층별 급여율=세대내 재분배), ③ 슬라이드 방식의 도입 및 변화, ④ 과거표준보수의 재평가율, ⑤ 보험료율의 조정(부담율), ⑥ 보험료율 책정방식(재정방식)의 변경 (세대간 재분배), ⑦ 가입기간(연금수급자격요건의 변화), ⑧ 기타 제도의 변화 (표준보수의 상한선 폐지, 표준보수월액에서 실질소득으로의 전환 등), ⑨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기초연금제 및 소득비례제로 이층화) 등이다.

〈表 3-1〉 受給 · 負擔構造의 分析時 考慮變數

구 분	변 수
A. 수급	1. 수급기간(①-② = 평균연금수급기간) ① 평균수명 ② 연금수급개시연령 2. 월평균 급여액 ① 급여기준 소득(전생애 평균보수월액, 전가입자 평균보수월액) ② 급여율(=소득대체율) - 소득계층별 급여율 - 가입기간별 급여탄력성 ③ 슬라이드방식(물가 vs. 임금) ④ 할인율(전생애 평균보수월액의 재평가) 3. 수급인구 ① 급여수급자수
B. 부담	1. 가입기간 - 연금수급 최소자격기간 2. 보험료부과 기준소득 ① 표준보수 및 실질임금 ② 상한선 및 하한선 설정 유무 3. 보험료율 ① 보험요율 ② 보험료율 책정방식(재정방식: 완전적립-수정적립-수정부과-완전부과) ③ 재정: 총지출(a), 총수입(b), 적립기금(c), 수지율(b/a), 적립율(c/a) 4. 인구구조(부과방식) ① 노인인구/근로인구 ② 급여수급자/가입자
C. 수익비: 총수급/ 총부담	1. 세대내 재분배 ① 소득계층별 부담과 급여의 절대액 비교 ② 소득계층별 총급여/총부담 비율 비교 2. 세대간 재분배 ① 세대별(출생연도별) 부담과 급여의 절대액 비교 ② 세대별(출생연도별) 총급여/총부담의 비교 ③ 내부수익을 비교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각 국가별로 現行 年金制度의 基本構造와 現況을 간략히 살펴보고, 크게 制度的 變化와 制度與件의 變化로 구분하여 그 變遷過程을 검토하여 본다. 제도적 변화에서는 法改正을 중심으로 연금제도의 변천과정을 受給負擔構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며, 제도여건의 변화는 人口構造 및 一般經濟의 변화 등의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내외적 변화가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受給負擔構造에 미친 영향을 世代內再分配, 世代間再分配, 財政收支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第2節 日本

1. 年金制度의 基本構造

가. 年金制度의 體系

일본에서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또는 상용임금근로자는 公的年金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年金保險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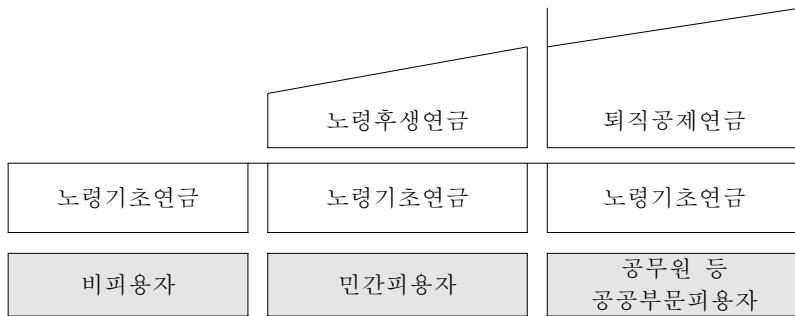
일본의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職種에 따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被傭者는 厚生年金保險 또는 共濟組合에 가입하게 되는데, 民間部門에 고용된 자는 厚生年金에, 公務員등은 國家公務員等 共濟組合 또는 地方公務員共濟組合에 각각 가입하게 된다. 반면 자영업과 농업을 경영하는 자, 무직자, 학생 등 봉급을 받지 않는 非被傭者는 만 20세가 되는 날 부터 國民年金에 가입한다.

國民年金은 1986년부터 全國民 共通의 제도로 도입되어 세종류의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2호 및 제3호 피보험자를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 60세 미만자이고, 제2호 가입자는 후생연금 및 공제조합의 가입자, 제3호 가입자는 제2호 가입자의 피부양 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따라서 일본의 연금제도에서 被傭者는 定額基礎年金(제1층 부분)과 報酬比例年金(제2층 부분)을 지급받는 반면 자영업자, 농민,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처(피부양배우자) 등 非被傭者는 국민연금에서 定額의 基礎年金만을 지급받는다.

[圖 3-2] 日本 年金制度의 基本體系



註: 퇴직공제연금은 노령후생연금상당분과 직역연금상당분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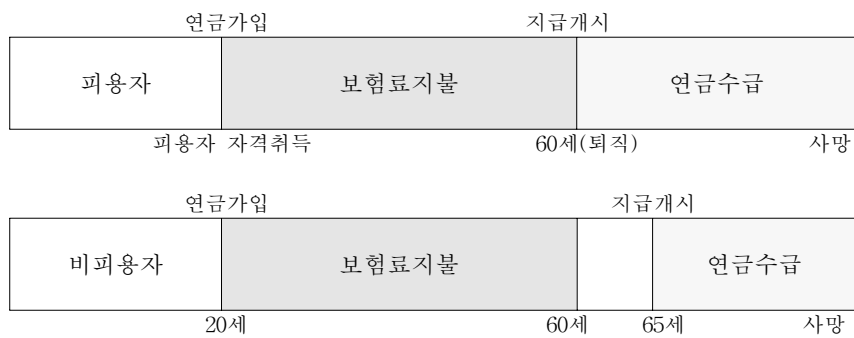
공적연금은 老齡(또는 退職), 障害, 死亡 등 세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수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금급여에는 老齡年金(또는 退職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 등 세종류가 있다.

被傭者는 원칙적으로 60세부터 노령(또는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후생연금가입자 婦人의 支給開始年齡은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0년부터 60세가 된다.

한편 非被傭者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60세부터 지급받는 조기수급도 가능하며, 70세까지 연기하여 수급

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때 연금액은 조기·연기지급에 따라 65세 만액 연금의 최저 58%(60세수급)에서 최고 188%(70세수급)까지 증감된다.

[圖 3-3] 日本 年金制度別 支給開始年齡



한편 被傭者의 경우 支給開始年齡後에도 계속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老齡(또는 退職)年金支給額이 減額되거나 支給停止된다. 1995년 이전에는 감액율이 임금월액의 수준에 따라 20%에서 80%까지 7단계로 세분되어 있었으나 1995년 취업의욕을 장려하기 위한 在職老齡年金의 개선으로 임금과 연금액의 합계액이 임금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就業時에는 20%의 연금을 감액하되 임금과 연금의 합계액이 22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그대로 병급하고, 임금과 연금의 합계액이 22~34만엔일 경우에는 임금 증가 2에 대하여 1의 비율로 연금을 감액하며, 임금이 34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증가하는 분만큼 연금지급을 정지한다. 이와 같은 연금의 감액 및 지급정지는 厚生年金과 私學共濟制度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자에게 한정된다.

연금급여는 年金의 實質購買力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의 消費者物價指數 上昇率에 따라 自動的으로 완전 슬라이드한다. 또한

최소한 5년마다 한번씩 年金制度의 再評價를 통하여 基礎年金은 所費支出의 신장에 맞게 정책적으로 개정되며, 報酬比例의 2층부문은 平均賃金の 상승에 따라 정책적으로 개정되어 長期的으로 2층부문은 賃金슬라이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給與水準

基礎年金은 定額年金이며, 1994년 현재 1인당 연금월액은 약 6만 5천엔이다.⁴⁾ 이러한 만액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세에 가입하여 60세가 될때 까지 40년간 保險料를 납부하고, 年金給與는 65세부터 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보험료 각출이 시작된 것은 1961년 4월부터였으므로 가입가능 기간이 40년이 될 수 있는 것은 1941년 4월에 출생한 사람부터이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加入可能期間이 25년(1926년생)이라도 만액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加入可能年數에 비하여 保險納付年數가 적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따라서 1989년 이후의 실질적인 基礎年金月額의 計算式은 다음과 같다.

$$\text{급부단가} \times (\text{보험료납부연수/가입가능연수}) \times \text{슬라이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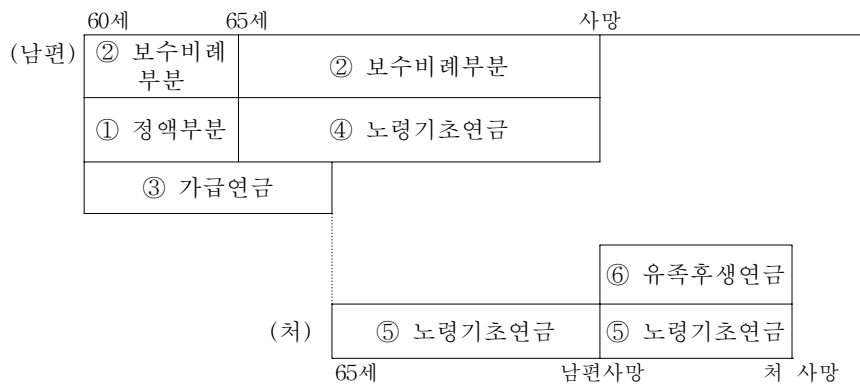
한편 被傭者世帶가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은 妻의 就業與否에 따라 다르므로 專業主婦이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적이 없는 처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면, 60대 전반기에는 피용자였던 남편의 명의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데, 이 연금은 特別支給老齡厚生年金이라고 부른다.

4) 이 금액을 1984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5만엔으로 일본의 기초연금은 소위 '1인 월액 5만엔' 정책 슬로건하에 1986년 4월부터 시작하여 1989년 재평가시에는 55,500만엔, 1994년의 재평가에 의하여 6만5천엔에 달하게 되었다.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은 ①定額部分 ②報酬比例部分 ③加給年金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남편이 65세가 되면 報酬比例分의 연금은 바뀌지 않지만 정액연금이 基礎年金으로 바뀌게 되며, 처가 65세가 되면 남편명의의 가급연금이 妻名義의 基礎年金으로 바뀌게 되나 夫婦合算의 年金額은 감소하지 않는다.

[圖 3-4] 專業主婦 被傭者世帶의 年金給與 構造



註: ①과 ④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차액의 지불이 경과적 가산으로 보증되며, ③과 ⑤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65세 이상인 처에게 대체가산분이 지급된다.

被傭者 定額部分의 월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정액단가} \times \text{가입연수} \times \text{슬라이드율}$$

1973년 定額單價는 1,000엔이었고, 그후 슬라이드에 따라 명목금액이 인상되어 왔으나 1986년부터 정액단가는 출생일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⁵⁾ 이는 현재의 정액부분 연금액이 한사람분의 基礎年金額보다 높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의도와 世代類型(독신, 부부)의 차이에 상

응하는 금액으로 급여수준을 분화시키려는 목적에 있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정액부분의 個人單位化를 추구할 수 있게 되며, 이 조정에는 20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報酬比例部分은 월급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2층부분의 급여에 해당하며 월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급여승율} \times \text{평균표준보수월액} \times \text{가입연수} \times \text{슬라이드율}$$

在職中の 賃金月收入은 과거의 평균임금상승율을 참고하여 再評價하여 계산되며 이를 平均標準報酬月額이라고 한다.

給與乘率은 이전에는 1%(10/1000)로, 가입기간 1년에 평균월수입 1%에 상당하는 연금이 2층부분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30년가입시의 보수비례부분의 급여수준은 평균월수입의 30%에 상당했었다.

그러나 平均加入期間의 신장에 맞추어⁵⁾ 給與乘率을 절하하고 1926년부터 출생한 남자의 報酬比例部分은 어느 세대와 상관 없이 평균 30% 급여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6년도부터 급여승율은 출생일 별로 주어졌다. 1927년 4월 1일에 이전에 출생한 자의 급여승율은 종래와 같이 1%이나 1927년 이후에 출생한 자 부터 20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1946년생부터는 0.75%(7.5/1000)로 하였다. 이러한 0.75%의 급여승율은 40년 가입시 30%급여를 의미한다.

봉급생활자의 처가 專業主婦이고 과거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가 65세에 달할때 까지 1994년 현재 1인당 월 18,833엔의 加給年金이 지급된다.

1994년 피용자의 標準的인 老齡年金額을 살펴보기 위하여 40년 가

5) 1989년도 가격으로 1926년에 출생한 자의 정액단가는 2,603엔이며, 출생이 1년 늦어짐에 따라 단가는 조금씩 인하여 1946년도 이후에 출생한 자의 단가는 1,388엔이었다.

6) 남자의 후생연금 평균가입기간은 1986년 시점에 30년이었으며 앞으로도 서서히 신장되어 장기적으로는 40년가입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자 남자(평균표준보수 336,600엔)를 가정해보면, 이 사람이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은 노령기초연금이 월 65,000엔, 보수비례부분이 100,983엔, 처명의의 노령기초연금이 월 65,000엔으로 합계 230,983엔이다. 이는 현역 근로세대 남자가 벌어들이는 平均賃金月額 336,600엔의 6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남편이 사망하면 遺族年金을 받는다. 붕급생활자였던 남편이 노령연금수급후 65세보다 오래살다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수급하고 있던 연금중 報酬比例部分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 遺族厚生年金으로 남겨진 처에게 지급된다. 이 때 妻는 遺族厚生年金과 자기명의의 老齡基礎年金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표준연금수급자를 가정하면 처의 연금월액은 월 14만엔 정도가 된다.

다. 保險料 및 財政運營

1) 保險料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자영업자, 농민, 무직자, 학생 등은 定額保險料를 각출하는데, 1994년 현재 보험료는 1인당 월 11,100엔이고 1995년에는 11,700엔이다. 한편 부담능력이 빈약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피용자는 정율의 보험료를 각출한다. 보험료는 세금을 포함한 賃金月收入에 부과되며 本人과 事業主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피용자 일반남자의 보험료는 1994년 현재 사업주부담을 포함하여 16.5%이다. 피용자의 국민연금의 基礎年金을 위한 보험료는 피용자가 납부한 定率의 保險料에서 각각의 피용자보험에서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각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처가 專業主婦인 경우 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은 국

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남편이 납부하는 定率保險料에는 무직의 처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이 정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無職인 妻가 정액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이 퇴직하여 정율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무직의 처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의 정액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財政運營

基礎年金의 財政은 世代와 世代의 相助라는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每年 完全決濟되고 있다. 즉, 기초연금급여는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반면 그것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財源은 연도마다 各 制度가 加入者總數에 상응하는 비율로 均等하게 負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基礎年金給與의 1/3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계정은 원칙적으로 積立金을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厚生年金의 주된 財源은 보험료이며 국고부담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후생연금의 경우 기초연금각출금의 1/3이 국고부담이며, 1961년 3월까지의 보험료 각출에 의하여 발생한 후생연금급여의 20%를 국고가 부담하고 있다.

年金保險料率은 長期財政收支 展望에 따라 세대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각출금 및 급여비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재정수입은 적립금이 된다. 후생연금의 적립금은 전액이 국가대장성의 자금운용부에 예탁되어 운용수익을 확충하고 있다.

2. 制度的 與件의 變化

연금의 수급·부담구조에 영향을 주는 社會經濟的 變化로는 크게 人口構造의 變化와 一般經濟의 變化로 요약될 수 있다. 연금과 관련한

인구구조의 변화요인에는 平均壽命의 연장 및 出生率 저하, 이에 따른 老齡化 경향 등이 있으며, 일반경제의 변화로는 보험료 및 급여산정의 기초인 賃金上昇率, 슬라이드율의 기초인 物價上昇率 등을 들 수 있다.

平均壽命의 延長은 出生율의 저하와 함께 노령화의 주요요인을 구성할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年金受給期間의 延長을 의미한다. 따라서 平均壽命의 延長은 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및 재정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表 3-2〉 平均壽命의 推移

(단위: 세)

연 도	남	여	60세 평균여명		65세 평균여명	
			남	여	남	여
1950	59.57	62.97	-	2.97	-	-
1955	63.60	67.75	3.60	7.75	-	2.25
1960	65.32	70.19	5.32	10.19	-	5.19
1965	67.74	72.29	7.74	12.29	2.24	7.29
1970	69.31	74.66	9.31	14.66	4.31	9.66
1975	71.73	76.89	11.73	16.89	6.73	11.89
1980	73.35	78.76	13.35	18.76	8.35	13.76
1985	74.78	80.48	14.78	20.48	9.78	15.48
1990	75.92	81.90	15.92	21.90	10.92	16.90
1994	76.57	82.98	16.57	22.98	11.57	17.98

資料: 후생통계협회, 『보험과 연금의 동향』, 제41권 제14호, 1994. p.58.

日本の 平均壽命은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完全老齡年金의 수급이 가능한 후생연금 제도도입의 20년 경과시점인 1965년에는 平均壽命이 남자 67.74세, 여자 72.29세였으나, 1994년 현재는 남자 76.47세, 여자 82.98세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 8.7세, 10.7세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60세 年金受給時 年金受給期間은 1965년에는 남자 7.74년, 여자 12.29년이었으나 1994년에는 남자 16.57년, 여자 22.98년으로 남녀 모두 9~10년이 연장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65세 年金受給을 가정하면 연금수급기간은 남자 11.57년, 여자 17.98년으로 1965년에 60

세 연금수급시보다 남녀 모두 약 5년이 연장된 것이다.

한편 日本의 出生率(후생통계협회, 1994: 39)은 1970년에 1.88%였던 것이 1990년에는 1.0%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日本의 低出生率은 1990년 현재 미국 1.67, 프랑스 1.35, 독일 1.15, 영국 1.39 등 선진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老齡化의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平均壽命의 연장과 出生率의 저하로 日本의 老齡化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195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였으나, 1970년에는 7.1%로 高齡化 社會(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1995년에는 12.7%, 2000년에는 제2단계 高齡化社會(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3-3〉 人口構造 및 老齡化 推移

연도	총인구 (천인)	60세 이상 (%)	65세 이상 (%)	노령인구 부양율(%)	
				60세 이상/15~59세	65세 이상/15~64세
1950	83,199	7.70	4.94	13.50	8.30
1960	93,418	8.90	5.70	14.50	8.90
1970	104,665	10.65	7.06	16.30	10.25
1975	111,940	11.75	7.92	18.38	11.69
1980	117,563	12.63	8.88	19.93	13.23
1985	122,333	14.10	9.74	22.39	14.45
1990	126,280	16.25	11.01	25.89	16.19
1995	130,065	18.29	12.69	29.69	18.88
2000	133,676	19.81	14.26	32.93	21.74
2005	136,473	21.40	15.45	36.84	24.12
2010	138,102	23.62	16.72	42.10	26.55
2015	138,724	24.24	18.54	43.13	29.94
2020	139,067	23.75	18.81	41.60	30.32
2025	139,491	23.27	18.12	40.55	28.97

資料: 후생성연금국, 『보험과 연금의 동향』, 1995, p.311.

이러한 老齡化 推移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 되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0년, 영국이 45년 걸린데 비하여 매

우 급속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64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老人扶養指數는 1970년에는 10.3%로 근로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00년에는 21.7%로 근로인구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老齡化 경향에 따라 年金制度의 成熟度⁷⁾는 급격히 증가하고 年金扶養比率⁸⁾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연금화되기 직전인 1985년에는 성숙도가 27.3%에 이르렀으나, 1986년 國民年金의 전국민 공통의 基礎年金化로 20세이상 60세미만의 전국민이 가입자로 되면서 성숙도가 대폭 낮아져 1990년에는 11.4%, 1993년에는 14.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國民年金의 年金扶養比率은 1993년 현재 7.2배로 연금가입자 약 7명이 연금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실정이다.

〈表 3-4〉 國民年金의 成熟度 및 年金扶養比率의 推移

(단위: 천명, %, 배)

	피보험자수 (A)	노령연금수급권자수 (B)	성숙도 (B/A)	연금부양비율 (A/B)
1975	25,884	2,731	10.55	9.47
1980	27,596	5,324	19.29	5.18
1985	25,121	6,846	27.28	3.66
1990	66,426	7,584	11.40	8.76
1993	69,276	9,690	14.00	7.15

厚生年金의 경우, 成熟度は 1965년 1.1%, 1975년 4.4%, 1994년에는 17.9%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후생연금의 年金扶養比率은 1975년에

7) 年金制度의 成熟度는 연금수급자수를 연금가입자수로 나눈 백분율로, 연금제도가 얼마나 성숙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8) 年金扶養比率은 성숙도와 역으로 年金加入者を 年金受給者로 나눈 倍率로, 이는 한 사람의 年金受給者を 몇명의 齣出者가 扶養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는 22.9배로 가입자 23명이 1명의 연금수급자를 부양하였으나, 1994년 현재에는 5.59배로 연금가입자 5.6명이 연금수급자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다.

〈表 3-5〉 厚生年金의 成熟度 및 年金扶養比率의 推移

(단위: 천명, %, 배)

	피보험자수 (A)	노령연금수급권자수 (B)	성숙도 (B/A)	연금부양비율 (A/B)
1965	18,418	196	1.06	93.9
1970	22,260	520	2.34	42.8
1975	23,649	1,031	4.36	22.9
1980	25,239	2,018	7.99	12.5
1985	27,068	3,267	12.07	8.3
1986	26,994	3,716	13.77	7.3
1990	30,997	4,760	15.36	6.5
1994	32,740	5,854	17.90	5.6

한편 年金制度와 相關한 一般經濟 指標에는 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이자율 등이 있다. 임금상승율 및 물가상승율은 낮을수록, 이자율은 높을수록 연금의 수급여담구조의 균형 및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는 年金給與의 購買力을 유지하기 위한 슬라이드의 기초가 되는 消費者物價上昇率과 賃金上昇率이 높으면 그만큼 給與部分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利率이 높으면 각출한 保險料의 價値維持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부담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日本의 賃金上昇率 및 物價上昇率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 중반에 物價上昇率, 賃金上昇率이 모두 급격한 상승율을 보였으나 점차 안정되어 최근에는 그 變動幅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6〉 消費者物價上昇率 및 賃金上昇率 推移

(단위: %)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임금상승율	표준보수상승율 (후생연금)	자금운용부 예탁금리
1965	6.7	9.9	21.1	6.5
1970	7.6	15.5	21.2	6.5
1975	11.9	18.1	14.8	8.0
1980	8.0	5.7	7.2	8.0
1985	2.1	3.2	4.2	7.1
1990	3.1	3.8	-	-
1993	1.3	1.5	-	-
1994	0.7	-	-	-

資料: 후생성연금국, 『보험과 연금의 동향』, 1995.

堀勝洋, 「공적연금과, 세대간의 공평」, 『계간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1991, p.404

일본 연금제도에 있어, 70년대 중반은 年金改正을 통한 대폭적인 給與率 提高가 이루어지고 슬라이드제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데다가 슬라이드의 기초인 賃金 및 物價의 높은 상승율로 年金의 受給·負擔構造의 不均衡이 매우 심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受給·負擔의 不均衡에 따른 부담은 未來勤勞世代로 전가되어 世代間 負擔의 不衡平性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최근에는 年金 受給·負擔構造의 均衡化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賃金 및 物價의 변동율이 안정적이고 연금의 수급여담구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給與水準 및 負擔의 適正化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은 世代間 負擔의 移轉幅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年金制度의 變遷

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와 관련한 制度的 變遷은 크게 受給面에서의 변화와 負擔面에서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受給面에서의 지표로

는 給與率(급여산식), 受給開始年齡, 슬라이드방식, 재평가율 등이 있으며, 負擔面에서의 지표로는 保險料率, 標準報酬 등이 있다.

가. 年金 給與水準 關聯制度의 變化

일본 年金 給與水準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시기는 制度導入後 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고, 두번째 시기는 70년대 중반 이후 最近까지의 시기이다.

첫번째 시기에 年金 급여수준과 관련한 제도의 발전은 給與水準의 充實化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 즉 年金도입이후 35~40년 기간은 給與水準의 현실화 및 給與率의 제고를 통한 給與水準의 充分性 확보에 주력해 온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에 厚生年金은 年金급여율을 平均標準報酬의 60% 확보체계로 굳혔으며, 國民年金은 1만엔 年金시대, 2만엔 年金시대 등의 구호를 만들어내면서 給與水準의 現實化를 위한 계속된 노력으로 마침내 1973년 年金大改革時에는 부부합산 5만엔 年金시대를 열므로써 給與水準의 充分性 확보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확립한 年金 급여수준의 기본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두번째 시기의 年金 급여수준과 관련된 발전은 給與水準의 世代內 및 世代間 衡平性 확보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 즉 이 시기는 以前時期에 확보된 給與水準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世代內 및 世代間 衡平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 온 給與의 衡平性 및 合理性 확보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表 3-7〉 年金 給與水準 關聯制度의 變化

연도	연금급여수준 개정내용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비례제: 평균보수월액의 4개월분(1942년 3개월분)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액부분과 보수비례제로 분리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비례부분의 급부승율을 5/1000 → 6/1000으로 상향조정
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액부분: 6만엔 (20년이후 30년까지 피보험자기간 1월당 250엔 가산) 보수비례부분의 급부승율을 6/1000 → 10/1000으로 상향조정. 따라서 평균표준보수월액 × 10/1000 × 피보험자기간 표준급여수준: {6만엔 + (250,000엔 × 10/1000 × 20년)} × 1/12 = 월1만엔 후생연금기금의 창설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연금 2만엔연금 국민연금 부부 합산 2만엔연금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연금 급여율= 평균표준보수의 60% 방안 확정 표준급여수준: 5만2천엔(가입기간 27년, 표준보수 84,600엔) 국민연금: 25년가입시 부부 합산 5만엔 슬라이드제도의 도입: 소비자물가가 5% 이상 변동시 연금의 개정율을 정하여 슬라이드시킴. 표준보수의 재평가율제의 도입: 과거 표준보수를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는 재평가율제를 도입함.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의 급부승율의 하향조정: 1%→0.75% 후생연금 정액부분의 기초연금화(표준연금액: 5만엔) 후생연금 가급연금의 기초연금화(표준연금액: 5만엔) 표준급여수준: 급여율 69%, 176,200엔(가입기간 40년, 표준보수 254,000엔, 노령기초연금(남편, 처) 50,000엔)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자동슬라이드제 도입 국민연금기금제도의 창설: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보다 풍요로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임의보험으로, 지역형 및 직능형국민연금기금의 2종류가 있으며, 연금월액은 3만엔부터 6만 8천엔까지 선택할 수 있음.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급여수준: 급여율 69%, 230,983엔(가입기간 40년, 표준보수 336,600엔, 노령기초연금(남편, 처) 65,000엔) 재직자 노령연금을 임금과 연금의 합계액이 임금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도록 개정. 유족연금의 경우 처의 노령후생연금 1/2와 유족후생연금의 2/3을 병급할 수 있도록 함. 장해연금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도입전에 장애로 된 자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아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던 자에게 장해후생연금이 지급되도록 함. 부분연금제도의 도입: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의 단계적 인상하여 60~64세까지는 정액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보수비례부분만 지급함. 순소득슬라이드제의 도입: 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의 근로세대 임금상승율의 반영에 있어 근로세대의 기준소득을 과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삼고 그 상승율에 따라 슬라이드하도록 개정함.

世代內 衡平性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는 1986년 年金大改革에서 制度間 部分的 一元化를 통한 公同의 基礎年金體系를 확립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制度間 格差에 따른 年金受給者間의 差異를 부분적이나 마 해소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全國民 基礎年金 도입을 통한 女性의 獨自의인 年金權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世代內 衡平性을 제고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수급자간 급여의 形평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4년 연금개정으로 在職老齡年金을 老齡의 就業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선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年金制度의 長期的 安定化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給與의 衡平性 차원으로 여겨지는 世代間 衡平性 확보를 위한 시도가 이 시기에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世代間 受給·負擔의 均衡化를 이루기 위한 給與水準의 改善과 관련된 노력으로 1986년 연금대개혁시 후생연금의 定額部分의 給與單價 및 報酬比例部分의 給與乘率을 낮추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4년 연금개혁시에는 間接的으로 給與率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 후생연금 정액급여의 年金支給開始年齡의 段階的 引上이 이루어졌고, 후생연금 보수비레부분의 슬라이드율을 이전의 근로세대의 과세전 명목 임금의 상승율에 따라 개정하던 것에서 課稅後 純可處分所得의 上昇 率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 給與率(給與算式)의 變化

1994년 현재 일본 후생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40년 加入期間 및 平均標準報酬(336,600엔) 所得者를 기준으로 家口當 平均標準報酬의 69%⁹⁾ 정도이다. 이러한 標準的 厚生年金月額의 구성을 보면, 보수비 레부분인 老齡厚生年金이 후생연금월액의 100,983엔(336.6엔× 0.75 ×

9) 전업주부 가구의 경우를 상정한 급여수준임.

40년)으로 43.7%를 차지하며, 남편 및 처명의 老齡基礎年金 130,000엔(각각 65,000엔)이 후생연금월액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부가 老齡基礎年金만을 수급하는 國民年金 제1호 피보험자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65,000엔을 지급받음으로써 가구당 피용자 平均標準報酬의 38.2% 수준을 지급받게 된다.

日本の 年金制度 歷史上 年金給與水準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첫번째가 1965년 후생연금의 개정이며, 두번째가 1973년 연금개정이고, 세번째로 1985년 연금개정을 들 수 있다.

1965년 연금개정에서는 厚生年金 定額部分을 6만엔으로 대폭 올리고 報酬比例部分의 給與乘率을 6/1000에서 10/100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1960년 개정시에 年金月額이 3,500엔에 지나지 않던 것에서 연금월액 1만엔으로 대폭적인 給與水準의 引上이 이루어졌다. 또한 國民年金도 1966년 개정으로 25년 각출시 연금월액 5,000엔으로, 이는 1960년 개정시 25년 各출에 연금월액 2,000엔인 것에 비하여 2.5배가 인상된 것이다.

또한 1973년 연금개정은 표준적인 사람의 후생노령연금액이 現在加入者 平均標準報酬의 60% 정도가 되도록 定額部分의 單價를 인상함과 동시에 과거의 낮은 標準報酬를 再評價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도 25년 가입시 부부합산 5만엔으로 인상되었다.

1986년에 실행된 연금개정에서는 基礎年金의 도입으로 國民年金에서 定額의 基礎年金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報酬比例部分은 厚生年金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¹⁰⁾ 또한 給與水準과 負擔의 適正化라는 측면에서 厚生年金의 定額部分의 給與單價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報酬比例

10) 일본의 후생연금은 1954년 이후 1985년 개정전까지 給與算式上에 定額部分과 報酬比例部分으로 구분하여 연금액을 산정하여 왔음.

部分의 給與算式을 변경하였다. 給與算式의 변경내용은 給與乘率을 1.0에서 0.75로 하향조정 한 것이다.

이전의 給與乘率 1.0은 加入期間 30년을 기준으로 30%의 연금지급을 적정선으로 상정하고 1년에 平均標準報酬月額의 1%에 상당하는 연금을 2층부분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年金制度가 成熟되어 감에 따라 加入期間이 더욱 연장되어 40년 가입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40년 가입시 이전과 동일한 30%의 給與率을 유지한다는 논리로 給與乘率을 0.75%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러한 給與乘率의 變化는 20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후생연금 정액부분의 정액단가의 하향조정> 정액단가(2,603엔) × 가입연수(30년) × 슬라이드율 ⇒ 정액단가(1,388엔) × 가입연수(40년) × 슬라이드율	
<후생연금 보수비례부분의 급부승율의 하향조정> 평균표준보수월액 × 급부승율(1.00) × 가입연수(30년) × 슬라이드율 ⇒ 평균표준보수월액 × 급부승율(0.75) × 가입연수(40년) × 슬라이드율	

<表 3-8> 厚生年金 報酬比例年金의 給與乘率

생년월일	급부승율	생년월일	급부승율
1927. 4. 2.	1000분의 10	1937. 4. 2.	1000분의 8.54
28. 4. 2.	1000분의 9.86	38. 4. 2.	1000분의 8.41
29. 4. 2.	1000분의 9.72	39. 4. 2.	1000분의 8.29
30. 4. 2.	1000분의 9.58	40. 4. 2.	1000분의 8.18
31. 4. 2.	1000분의 9.44	41. 4. 2.	1000분의 8.06
32. 4. 2.	1000분의 9.31	42. 4. 2.	1000분의 7.94
33. 4. 2.	1000분의 9.17	43. 4. 2.	1000분의 7.83
34. 4. 2.	1000분의 9.04	44. 4. 2.	1000분의 7.72
35. 4. 2.	1000분의 8.91	45. 4. 2.	1000분의 7.61
36. 4. 2.	1000분의 8.79	46. 4. 2.	1000분의 7.50
36. 4. 2.	1000분의 8.66		

일본에서 給與率의 實質的인 縮小를 의미하는 급여승율의 하향조정을 취한 이유는 年金 受給·負擔構造의 適正化를 통하여 年金財政의 安定化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즉 현행 급여체계의 유지로는 장래 보험료율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給與水準의 下向調整을 통하여 受給·負擔構造의 適正化를 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制度改正委員會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給與水準의 下向調整으로 결정시점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되어 개정전에는 결정시점의 후생보험료는 38.8%, 국민연금은 19,500엔(1984년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厚生年金의 경우 결정시에도 28.9%, 國民年金의 경우에는 13,000엔(1984년 가격)으로 改正前의 2/3이하로 輕減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후생성통계협회, 1995)

2) 年金受給開始年齡의 調整

수급측면에서 연금 수급여담구조의 적정화를 위한 두번째 방안으로 年金受給開始年齡의 調整이 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은 受給期間을 단축시키므로써 生涯總給與를 縮小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調整前과 동일한 연금수급연령에 연금을 수급할 시에는 이전보다 낮은 給與率의 연금액을 받게 됨으로써 實質的인 給與率의 縮小方案이기도 하다.

日本의 厚生年金의 年金支給開始年齡은 오랜기간동안 男子의 경우 60세, 女子 및 鑛夫·船員의 경우 55세였다. 이는 다른 先進國들의 年金受給開始年齡, 예컨대 독일 65세, 스웨덴 65세, 영국 65세, 미국 65세, 덴마크 67세, 노르웨이 67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日本의 빠른 年金受給開始年齡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긴 평

均壽命은 受給期間의 長期化로 이어졌으며, 이는 연금 受給·負擔構造의 不均衡과 年金財政의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욱이 30년후에 年金受給者數는 3배에 이르지만 이를 지탱하는 未來 勤勞世代數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現行의 支給開始年齡대로는 厚生年金의 最終保險料率은 31.5%까지 달하여 후대의 피보험자가 막중한 부담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러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年金受給開始年齡의 上向調整을 통하여 연금 수급여담구조의 적정화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年金改正時에 年金受給開始年齡의 조정안을 제출하였지만 國會審議 과정에서 수정되고 차후의 검토과제로 미루어져 바로 관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1994년 年金改正에서 일본정부는 年金受給開始年齡을 段階的으로 上向調整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1994년 연금개정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방안은 部分年金制度의 導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60세부터 64세까지의 60세전반기를 繼續雇傭이나 再雇傭에 의하여 임금과 연금을 합해 생활을 하는 시기로 위치시키고 이 시기를 65세 이후의 본격적 연금생활 시기와 구분하여 部分年金受給期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部分年金受給期에는 후생연금의 報酬比例部分은 이전과 같이 지급되지만 定額部分은 단계적인 조정기간을 거쳐 결국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年金受給開始年齡의 段階的인 引上計劃을 통하여 男子의 경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에 걸쳐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인상하고, 女子 및 鑛夫의 경우에는 남자와 5년 간격을 두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연금수급연령을 각각 65세, 60세로 조정하기로 하였다(表 3-9 참조).

〈表 3-9〉 厚生年金의 支給開始年齡의 引上

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남자	여자	광부
1944	55세	55세	50세
1954	60세	55세	55세
1987	60세	56세	55세
1990	60세	57세	55세
1993	60세	58세	55세
1996	60세	59세	55세
1999	60세	60세	55세
2002	61세	60세	55세
2005	62세	60세	55세
2007	62세	61세	56세
2008	63세	61세	56세
2010	63세	62세	57세
2011	64세	62세	57세
2013	64세	63세	58세
2014	65세	63세	58세
2016	65세	64세	59세
2019	65세	65세	60세

〈表 3-10〉 年金受給開始年齡別 老齡厚生年金의 成熟度 推計

(단위: 만명, %)

	1984년 재계산 (60세지급)			1989년 재계산 (60세지급)			1989년 재계산 (65세지급)		
	피보험 자수	노령 후생연금 수급자수	성숙도	피보험 자수	노령 후생연금 수급자수	성숙도	피보험 자수	노령 후생연금 수급자수	성숙도
1990	2,742	455	16.6	2,948	461	15.6	2,948	461	15.6
1995	2,849	589	20.7	3,069	620	20.2	3,069	620	20.2
2000	2,872	728	25.3	3,066	790	25.8	3,071	767	25.0
2005	2,825	880	31.1	2,985	988	33.1	3,009	891	29.6
2010	2,758	1,034	37.5	2,900	1,192	41.1	2,955	975	33.0
2015	2,743	1,105	40.3	2,857	1,326	46.4	2,924	1,116	38.2
2020	2,787	1,095	39.3	2,895	1,348	46.6	2,952	1,178	39.9

資料: 후생성연금국, 『후생연금·국민연금 평성원년재정계산결과』, 1990, p.207.

1989년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안 제출시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금지급연령을 65세로 할 경우 60세로 유지할 경우보다 年金制度의 成熟度의 增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세로 유지할 경우에는 成熟度가 2000년에 25.8%, 2020년에는 46.6%이나 65세로 할 경우에는 2000년에 25.0%, 2020년에는 39.9%이다(表 3-10 참조). 이때 年金扶養比率은 出生率이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60세 支給開始의 경우 1990년에는 6.5였으나 2000년에는 3.9, 2015년 2.2, 2040년 2.1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65세 支給開始의 경우에는 2015년에 2.6, 2040년에 2.5가 될 전망이다.

또한 年金受給開始年齡別 厚生年金의 財政收支를 추계한 결과(1989년 계산)를 살펴보면, 年金受給開始年齡을 60세로 할 경우에는 保險料率이 최고 31.6%까지 인상되어야 하는 반면, 65세로 할 경우에는 최고 26.1% 선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인상이 약 5.5%의 보험료율의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表 3-11〉 年金受給開始年齡別 厚生年金의 財政收支 推計(1989)

연도	60세 연금수급개시			65세 연금수급개시		
	보험료율	수지율	적립배율	보험료율	수지율	적립배율
1990	14.6	146.1	5.82	14.6	146.1	5.82
1995	16.8	126.4	4.80	16.8	126.4	4.80
2000	19.0	109.5	3.71	19.0	111.8	3.80
2010	27.5	100.0	1.94	23.4	103.9	2.48
2020	30.4	102.1	1.33	26.1	101.6	1.83
2030	31.5	104.0	1.41	26.1	104.0	1.73
2040	31.5	100.1	1.26	26.1	100.1	1.57
2050	31.5	108.1	1.36	26.1	104.3	1.39

註: 보험료율은 남자의 경우임.

적립배율= 연도초적립금/지출합계

資料: 후생성연금국, 『후생연금·국민연금 평성원년재정재계산결과』, 1989, pp.231~232.

3) 슬라이드제의 導入

年金給與水準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의 세번째 요인으로 슬라이드제를 들 수 있다. 연금급여의 實質的 購買力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슬라이드제는 사적연금과 구별되는 公的年金만이 가지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슬라이드 방식의 도입은 先進諸國의 경우 연금이 어느정도 정착된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슬라이드제의 도입은 年金 受給負擔構造의 均衡側面에서는 적절한 부담의 고려없이 수급여분에 무게가 더해짐으로써 適正均衡이 깨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슬라이드제의 도입은 年金財政方式 측면에서 적립방식을 포기하고 賦課方式으로 전환하게 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日本의 公的年金에서 슬라이드제의 도입은 1973년 年金改正時에 이루어졌다. 1973년에 채택된 슬라이드방식의 내용은 全國消費者物價指數가 5% 이상 변동한 경우에 그 變動率을 기준으로 年金額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1989년 연금개정시에는 물가변동율에 따라 정령으로 연금액의 개정을 행할 수 있는 完全自動物價슬라이드제를 도입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한편 연금 受給·負擔構造의 均衡化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1994년 연금개혁시에는 純所得슬라이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厚生年金의 報酬比例部分의 슬라이드를 현 근로세대의 명목임금 상승율에 따라 개정하고 있었으나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勤勞世代의 租稅 및 社會保險料 負擔이 증가하고 현 근로세대의 實質的인 可處分所得(純所得)은 명목임금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세대의 생활수준의 상승이상으로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형평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厚生年金의 報酬比例部分의 年金額을 현 근

로세대의 實質 可處分所得(純所得)의 上昇率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와같은 1994년 개정에 따라 1989년 연금개정 이후 5년간의 名目所得의 上昇率은 17%였지만 순소득슬라이드의 결과 개정율은 16%였다.

4) 標準報酬 再評價率의 導入

연금급여수준과 관련한 마지막 요인으로 標準報酬의 再評價率을 들 수 있다. 후생연금의 표준보수비례부분은 과거의 표준보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인데, 과거의 낮은 標準報酬月額의 名目值로 표준보수월액이 계산됨에 따라 그 금액이 현저히 낮게 계산되는 비합리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개정에서 과거의 標準報酬月額을 최근의 賃金水準에 맞춰 계산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그후 1976년 개정에서 1975년 이전의 과거표준보수월액도 기간에 따라 6.39배에서 1.17배까지 재평가하였으며, 재평가후의 평균표준보수월액이 3만엔 미만일 때에는 3만엔으로 계산하게 하였다.

1994년 현재 厚生年金의 再評價率은 30급으로 구분하여 1958년 3월 이전 표준보수는 13.96배하는 것에서 부터 1993년 4월 이후 소득은 0.99배하도록 되어 있다(高山憲之, 1995: 212).

나. 釀出負擔 關聯制度의 變化

1) 保險料率과 財政方式

몇차례의 年金改正에 따른 年金 給與水準 변화의 폭은 상당히 컸던 반면, 保險料率의 변화의 폭은 완만하였다(表 3-12 참조). 年金 受給·負擔構造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급여의 확대에 상응하여 負擔率의 제고도 급여확대 폭만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厚生年

年金의 保險料率은 급여수준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시점에도 각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 이하의 緩慢한 引上만이 이루어져 옴으로써 年金 受給負擔構造의 不均衡이 심화되는데 주요 요인을 제공해왔다.

〈表 3-12〉 保險料率 推移

후생연금		국민연금	
개정연월	보험료율(%) ¹⁾	개정연월	일인월액(엔)
1942. 6.	6.4	1961. 4.	100 ²⁾ / 150 ³⁾
1944. 10.	11.0	1967. 1.	200 ²⁾ / 250 ³⁾
1947. 9.	9.4	1969. 1.	250 ²⁾ / 300 ³⁾
1948. 8.	3.0	1970. 7.	450
1954. 5.	3.0	1972. 7.	550
1960. 5.	3.5	1974. 1.	900
1965. 5.	5.5	1975. 1.	1,100
1969. 11.	6.2	1976. 4.	1,400
1971. 11.	6.4	1977. 4.	2,200
1973. 11.	7.6	1978. 4.	2,730
1976. 8.	9.1	1979. 4.	3,300
1980. 10.	10.6	1980. 4.	3,770
1985. 10.	12.4	1981. 4.	4,500
1990. 2.	14.3	1982. 4.	5,220
1991. 3.	14.5	1983. 4.	5,830
1994. 10.	16.5	1986. 4.	7,100
1996. 10.	17.35	1990. 4.	8,400
		1991. 4.	8,800
		1992. 4.	9,200
		1993. 4.	9,600
		1994. 4.	11,100
		1995. 4.	11,700

註: 1) 일반남자의 보험료율임(여자, 광내원, 선원과 구별됨).

2) 35세 미만의 자인 경우 보험액임.

3) 35세 이상인 자의 경우 보험액임.

資料: 후생통계협회, 『보험과 연금의 동향』, 제42권 제14호, 1995.

특히 거의 모든 先進諸國 연금제도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日本 역시 年金制度 導入初期에는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설정하였다. 이는 연금 도입으로 인한 齎出負擔의 충격을 줄이고 年金加入 誘引을 제공을 통

하여 연금제도의 安定的 定着에 1차적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초기에 積立方式¹¹⁾을 취하고자 했던 일본 연금제도는 실제적으로는 未來世代의 釀出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修正積立方式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戰後의 經濟·社會的昏亂 및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가치가 보전되지 못한데다가 國民經濟의 부담을 고려하여 1948년에는 保險料率을 이전보다 훨씬 낮은 3%로 인하함으로써 이후의 후생연금 受給負擔構造의 不均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54년 연금개정시에도 보험료는 3%로 그대로 두고 이를 5년마다 인상하도록 하는 修正積立方式을 채택하였다.

1973년 및 1976년 연금개정시의 給與改善 내용은 대폭적인 것이어서 이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平準保險料는 각각 11.3% 및 15% 정도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보험료율의 인상은 각각 1.2% 및 1.5%에 그쳤다. 이는 未來世代 負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財政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시점에서의 상당한 保險料率의 引上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社會經濟政勢를 감안하고 개선에 따른 급격한 負擔增加를 피하기 위하여 소폭의 인상에 그친 것이다.

특히 1973년 改正內容에는 슬라이드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年金價値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연동하여 연금급여액을 인상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釀出時 슬라이드제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의 부담은 오롯이 未來世代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年金財政方式은 더욱 賦課方式¹²⁾ 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즉 슬라이

11) 積立方式은 근로연령시기에 각출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본인이 적립했던 각 출금에 이자가 더해진 것을 노령기에 연금수급하는 형태의 연금재정방식을 일컫음. 즉 적립방식은 본인의 노후준비를 본인의 근로시기에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음.

드제의 도입이 財政方式 轉換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1980년 연금개정에서도 대폭적으로 給與改善이 되었지만 保險料率은 남자의 경우 1.5%인상되는데 그쳤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에서는 남자보다 0.1%가 높은 1.6%가 인상되었고 매년 6월이후에 0.1%씩 인상함으로써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保險料率의 男女差異를 없애도록 하였다. 이는 여자의 경우 年金支給年齡이 남자보다 낮고, 平均年金受給年數가 길며, 일반적으로 報酬가 낮기 때문에 定額部分의 비중이 커지게 되며, 釀出에 비하여 높은 給與를 받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保險料率에 남녀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985년 개정에서 보험료율은 남자의 경우 1.8%가 인상되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도 1980년도 개정에 이어 남녀차를 없애기 위하여 남자보다 0.2% 높은 2.0%가 인상되었으며, 매년 10월이후 1.5%씩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1989년 개정에서는 年金額의 개선, 受給者數의 증가, 平均壽命의 증가에 의한 年金受給期間의 장기화 등에 대응하여 1989년 財政再計算을 기초로 하여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였다.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에서는 남자의 경우 종전의 12.4%를 1990년부터 14.3%로, 1991년에는 14.5%로 인상하고, 여자 및 광부의 보험료율도 마찬가지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1994년 개정에서는 經濟狀況을 배려하여 2단계의 保險料率 引上計劃을 설정하여 1994년 1월부터 2%인상하고 1996년 10월부터는 매년 0.85%를 인상하여 5년간 2.5%의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1994년 年金改正에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

12) 賦課方式은 현 근로세대의 각출료로 현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재정 방식을 의미함.

의 保險料率의 인상을 계획하게 된 것은 未來世代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計劃的으로 保險料 收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4년 개정에서는 연금의 受給負擔構造의 均衡을 위하여 特別保險料를 도입하였다. 종래 후생연금의 보험료에 관해서는 月收만을 保險料 賦課對象으로 하였으나 월수에 대한 保險料를 억제함과 동시에 負擔의 衡平性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너스 등으로부터도 1%의 보험료율로 特別保險料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育兒休職期間中の 保險料 免除制度를 통하여 차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담당할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育兒休職期間中에도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자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험료부담을 하여야 했으나, 1995년부터는 本人負擔分의 保險料를 免除하기로 하였다.

2) 標準報酬

保險料 徵收의 賦課基準이 되는 동시에 保險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標準報酬는 임금의 실세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標準報酬의 下限線 및 上限線 水準이 임금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되어 왔으며, 그 내의 細部等級數는 6급 및 36급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상한선 및 하한선간의 소득차이는 4배에서 27배까지 다양하여 왔다.

1994년 개정에서는 하한선이 9만 2천엔이고 상한선이 59만엔이며, 그 내에 3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평균표준보수는 303,611엔이다.

〈表 3-13〉 厚生年金 標準報酬의 推移

	표준보수		최고/최저(배)
	등급	월액(엔)	
1942. 6 ~ 1944. 5.	1~15	10 ~ 150	15.0
1944. 5 ~ 1946. 3.	1~20	10 ~ 200	20.0
1946. 4 ~ 1947. 5.	1~20	30 ~ 600	20.0
1947. 6 ~ 1948. 7.	1~ 6	100 ~ 600	6.0
1948. 8 ~ 1949. 4.	1~27	300 ~ 8,100	27.0
1949. 5 ~ 1953. 8.	1~10	2,000 ~ 8,000	4.0
1953. 9 ~ 1954. 4.	1~ 6	3,000 ~ 8,000	2.7
1954. 5 ~ 1960. 4.	1~12	3,000 ~ 18,000	6.0
1960. 5 ~ 1965. 4.	1~20	3,000 ~ 36,000	12.0
1965. 5 ~ 1969. 10.	1~23	7,000 ~ 60,000	8.6
1969. 11 ~ 1971. 10.	1~28	10,000 ~ 100,000	10.0
1971. 11 ~ 1973. 10.	1~33	10,000 ~ 134,000	13.4
1973. 11 ~ 1976. 7.	1~35	20,000 ~ 200,000	10.0
1976. 8 ~ 1980. 9.	1~36	30,000 ~ 320,000	10.7
1980. 10 ~ 1985. 9.	1~35	45,000 ~ 410,000	9.1
1985. 10 ~ 1989. 11.	1~31	68,000 ~ 470,000	6.9
1989. 12 ~ 1994. 10.	1~30	80,000 ~ 530,000	6.6
1994. 11 ~	1~30	92,000 ~ 590,000	6.4

〈表 3-14〉 厚生年金保險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의 推移

(단위: 엔)

연도	평균	제1종(남자)	제2종(여자)	제3종 (선원, 광내원)	제4종 (임의계속)
1955	11,719	13,192	7,350	14,277	-
1960	15,976	18,742	9,167	20,491	-
1965	27,974	32,938	17,337	34,991	25,666
1970	52,003	61,515	32,288	65,303	37,827
1975	118,222	136,635	77,425	150,295	73,423
1980	181,723	211,471	115,896	234,813	122,243
1985	226,132	263,552	145,447	288,653	-
1988	248,667	289,120	163,789	288,487	150,271
1990	273,684	318,682	181,493	320,144	161,057
1991	284,362	330,566	190,914	334,816	168,106
1992	295,145	337,142	198,458	346,806	177,214
1993	295,125	340,798	203,125	354,355	186,089
1994	303,611	351,140	207,696	365,106	194,481

3) 國庫負擔

社會保險의 財源主體로는 대체로 使用者, 被傭者, 國家 등 3자를 들 수 있다. 國家의 理念的 스펙트럼상의 위치에 따라 社會保險에서 國庫負擔의 정도가 달라진다. 國家가 공적 社會보장의 여건조성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中立性을 지키거나 事務費 등 최소 부담에 그치기도 하고, 國家가 사용자, 피용자와 함께 積極的인 財源負擔의 主體로서 3자 부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公的年金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이유로 未來世代의 負擔을 전제로 하는 世代間 相助를 기본적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年金制度의 成熟度가 높아지고 年金扶養負擔이 커질수록 國庫는 制度의 安定的 維持·發展을 위하여 공적연금에 있어서만큼은 더이상 財政的 中立性을 고수하기가 어렵다.

日本의 경우, 현재 기초연금인 國民年金에서의 國庫負擔은 基礎年金 給與費의 1/3, 保險料免除期間에 대한 노령기초연금의 급여에 필요한 비용, 附加年金給與額의 1/4, 事務費의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厚生年金에 있어서는 후생연금 가입자의 基礎年金 釀出金의 1/3, 事務費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있어 국고부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4년에는 給與費의 10%(광부는 20%)를 국고부담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1954년에는 給與費의 15%(광부는 2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1971년 개정에서 이전까지 釀出時에 國庫負擔이 이루어지던 것을 給與時 부담(급여비의 1/3)으로 변경하였다. 制度發足 當時에 국고부담을 釀出時에 하도록 한 것은 被保險者의 釀出意慾 증진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발족 이후 20~30년이 경과하면서 반드시 釀出時 負擔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의 受給者 및 受給費用의 增大를 전제로 年金財政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는 오히려 給與時 負擔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고부담 시점을 급여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國庫負擔을 각출시에서 給與時로 변경한 것은 未來世代에의 負擔移轉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1971년 개정에서의 國庫負擔의 시점의 변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부담은 원칙적으로 基礎年金의 給與費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자등의 제1호 피보험자가 基礎年金 給與費用을 인원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총액 중 1/3,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釀出金중 1/3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밖에 면제기간분의 급여, 가급연금, 사무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4) 被傭者 年金制度間의 財政調整事業

人口의 高齡化, 産業構造 및 就業構造의 변화에 대하여 공적연금제도 전체의 장기적 안정과 정합성이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1984년 2월에 1995년을 목표로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를 행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 개정에서 基礎年金의 도입으로 公的年金制度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一元化가 완료되었으며, 2층부분에 해당하는 被傭者 年金制度에 관해서도 점차적으로 給與面에서의 均衡이 꾀해지고 있다.

被傭者 年金制度의 一元化를 위하여 1990년부터 일원화를 위한 정비작업조치로 被傭者 年金間의 財政調整事業이 개시되었다. 이 제도에 의하여 費用負擔 調整의 대상이 되는 급여는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老齡·退職給與이며, 이것도 1961년 4월이후의 가입기간에 관계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조정은 각 피용자 연금제도가 각 제도 가입자의 標準報酬總額에 따른 調整釀出金を 각출하고 이 조정각출금을

재원으로 각 피고용자 연금제도마다의 조정대상급여 상당액을 調整交付金으로 하여 교부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 제도가 현재 재정이 곤란한 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부금의 수취자인 日本鐵道共濟組合(JR) 및 日本담배産業共濟組合의 자조노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사이에 JR공제에 관한 실질교부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特例減額措置가 설정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공적연금의 일원화의 전망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1992까지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었다.

그러나 1992년에는 被傭者 年金制度間의 費用負擔의 調整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일부를 개정하여 1989년의 개정에서 성립한 제도간 조정법에 있어서의 特例減額措置가 1992말에 종결되게 되어있었던 것을 당분간 延長하여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JR공제에의 교부금을 1,150억엔에서 970억엔으로 減額하도록 하였다.

4. 發展段階別 受給負擔構造의 分析

가. 收益比 分析

現 年金制度의 受給·負擔體系는 연금 수급의 상당부분¹³⁾이 未來世代로 부터의 所得移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人口의 高齡化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年金受給者의 증가 또는 加入期間의 신장으로 급여비는 증대해가는 반면 제도의 지탱자인 現役 勤勞世代는 감소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勤勞世代 2.4인이 1명의 老人을

13) 일본의 대표적인 연금학자인 高山憲之에 의하면 현 노령세대 급여의 15%만이 본인의 각출에 의한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고 나머지 85%는 미래세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高山憲之, 『연금개혁의 구상』, 사학연금관리공단 역, 1993, p.7).

부양해야 함으로써 현재제의 유지시 未來 勤勞世代가 부담하여야 할 釀出率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長期的인 年金制度의 安定化를 위하여 世代間의 給與와 負擔의 均衡을 확보하고 장래 勤勞世代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여기서는 厚生年金의 世代內 再分配 및 世代間 再分配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所得階層別 給與率과 主要年度別 總給與/總釀出의 收益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收益費를 살펴보기 위한 계획이다.(表 3-15, 3-16, 3-17 참조).

〈表 3-15〉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制度的 與件

연도	성숙도	연금 부양 비율	가입기간	평균수명		수급개시 연령		수급기간		임금:물가:이자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1.06	93.9	20년	67.74	72.29	60	55	7.74	17.29	9.9 : 6.7 : 6.5
1975	4.36	22.9	20, 30년	71.73	76.89	60	55	11.73	21.89	9.1 : 6.0 : 4.0
1986	12.07	8.3	20, 30, 40년	74.78	80.48	60	55	14.78	25.48	3.2 : 2.1 : 7.1
1994	17.90	5.6	20, 30, 40년	76.57	82.98	60	58	16.57	24.98	3.0 : 1.5 : 6.0

註: 1975년 임금: 물가: 이자는 실제의 1/2 수치이며 1994년 수치는 가정치임.

〈表 3-16〉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給與算式

연도	후생연금의 월연금급여산식
1965	(정액부분 60,000엔/12) + (표준보수 × 10/1000 × 가입기간)
1975	(정액부분 1,000엔×가입기간) + (표준보수×10/1000×가입기간) + 가급연금 2,400엔
1986	(남편명의 노령기초연금 50,000엔) + (처명의 노령기초연금 50,000엔) + (표준보수 × 7.5/1000 × 가입기간)
1994	(남편명의 노령기초연금 65,000엔) + (처명의 노령기초연금 65,000엔) + (표준보수 × 7.5/1000 × 가입기간)

〈表 3-17〉 主要年度別 厚生年金의 給與率 및 保險料率

(단위: 엔, %, 배수)

연도	소득계층 (표준보수)	가입 기간	월연금 급여액	급여율	최고가입기간의 최고연금액/ 최저연금액	보험료율	
						남	여
1965	상한 60,000	20년	17,000	28.3	2.66	5.5	3.9
	평균 27,974		10,594	37.9			
	하한 7,000		6,400	91.4			
1975	상한 200,000	20년	62,400	31.2	2.41	7.6	5.8
		30년	92,400	46.2			
	평균 118,222	20년	46,044	38.9			
		30년	67,867	57.4			
	하한 20,000	20년	26,400	132.0			
		30년	38,400	192.0			
1985	상한 470,000	20년	170,500	36.3	2.00	12.4	11.45
		30년	205,750	43.8			
		40년	241,000	51.3			
	평균 226,132	20년	117,419	51.9			
		30년	150,879	66.7			
		40년	167,839	74.2			
	하한 68,000	20년	110,200	161.1			
		30년	115,300	169.6			
		40년	120,400	177.1			
1994	상한 590,000	20년	218,500	37.0	1.95	16.5	16.5
		30년	262,750	44.5			
		40년	307,000	52.0			
	평균 303,611	20년	175,541	57.8			
		30년	198,312	65.3			
		40년	221,083	72.8			
	하한 92,000	20년	143,800	156.3			
		30년	150,700	163.8			
		40년	157,600	171.3			

加入期間別, 所得階層別, 性別 厚生年金의 收益比는 〈表 3-18〉 과 같다. 1975년까지는 現世代의 給與負擔을 次世代로 상당부분 이전함으로써 低所得階層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給與率의 연금액을 지급받지만 양적인 면에서 次世代로부터의 純移轉 所得은 고소득계층이 저소득계

층보다 큰 불합리한 역진적 분배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1985년부터는 최하계층을 제외하고 收益比가 1.0 이하로 낮아짐으로써 실질적인 世代內 再分配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表 3-18〉 加入期間別, 所得階層別, 性別 厚生年金의 收益比

(단위: 천엔, 배)

연도	조건		남자			여자		
	가입 기간	소득 계층	생애 총급여	생애 총각출	총급여/ 총각출	생애 총급여	생애 총각출	총급여/ 총각출
1965	20년	최상	825.0	308.7	2.67	1,768.1	218.9	8.08
		평균	515.1	143.9	3.58	1,103.9	102.1	10.82
		최하	310.9	36.0	8.63	666.2	25.5	26.08
1975	20년	최상	4,313.7	1,093.6	3.94	8,498.4	834.6	10.18
		평균	3,179.2	646.4	4.98	6,263.2	493.3	12.70
		최하	1,825.0	109.4	16.69	3,595.5	83.5	43.08
	30년	최상	15,191.2	3,221.7	4.72	29,928.1	2,458.7	12.17
		평균	11,156.6	1,904.4	5.86	21,979.5	1,453.4	15.12
		최하	6,313.2	322.2	19.60	12,437.7	245.9	50.59
1986	20년	최상	3,092.9	2,973.6	1.04	4,213.8	2,745.8	1.53
		평균	2,127.6	1,430.7	1.48	2,898.7	1,321.1	2.19
		최하	1,985.9	430.2	4.62	2,705.7	397.3	6.81
	30년	최상	5,113.6	7,568.2	0.68	6,966.9	6,988.4	0.99
		평균	3,746.6	3,641.3	1.03	5,104.5	3,362.3	1.52
		최하	2,864.8	1,094.9	2.61	3,903.0	1,011.1	3.86
	40년	최상	8,270.7	17,307.2	0.48	11,268.2	15,981.2	0.71
		평균	5,711.1	8,327.0	0.69	7,780.9	7,689.1	1.01
		최하	4,099.0	2,504.0	1.64	5,584.6	2,312.2	2.42
1994	20년	최상	4,137.6	4,417.7	0.94	5,472.5	4,417.7	1.24
		평균	3,326.2	2,273.3	1.46	4,399.3	2,273.3	1.94
		최하	2,725.5	688.9	3.96	3,604.8	688.9	5.23
	30년	최상	6,687.8	10,456.6	0.64	8,845.4	10,456.6	0.85
		평균	5,050.1	5,380.9	0.94	6,679.4	5,380.9	1.24
		최하	3,838.6	1,630.5	2.35	5,077.0	1,630.5	3.11
	40년	최상	10,502.6	22,146.8	0.47	13,891.0	22,146.8	0.63
		평균	7,566.4	11,396.6	0.66	10,007.5	11,396.6	0.88
		최하	5,394.9	3,453.4	1.56	7,135.5	3,453.4	2.06

한편 厚生年金의 財政收支 및 積立倍率 추이는 다음과 같다(表 3-19, 3-20 참조).

〈表 3-19〉 厚生年金의 財政收支 推移

(단위: 백만엔)

	1989	1990	1992	1994
수입총액	17,944,128	26,058,022	31,661,907	34,720,567
보험료수입	10,490,993	13,050,692	14,955,010	16,339,805
국고부담	1,694,259	2,144,172	2,605,962	2,979,058
제도간조정	-	4,411,515	6,606,153	7,602,798
선원보험특별회계	14,350	13,806	15,634	15,588
국민연금특별회계	1,819,435	2,212,159	2,500,992	2,509,285
운용수입	3,915,945	4,215,186	4,955,416	5,262,117
연금복지사업단납부금	-	-	12,610	0
잡수입	9,144	10,490	10,127	11,914,575
지출총액	13,339,482	19,415,241	24,544,664	28,062,799
보험급부비	9,628,350	10,503,093	12,146,046	13,827,699
제도간조정	-	4,487,407	6,697,173	7,680,477
국민연금특별회계	3,563,797	4,264,603	5,510,191	6,317,128
복지시설비	124,046	132,929	152,737	175,784
기타지출	23,289	27,206	38,515	61,709
수지차액	4,604,645	6,642,781	7,117,242	6,657,767
총수입/총지출(%)	134.5	134.2	129.0	123.7
보험료수입/보험급부비(%)	109.0	124.3	123.1	118.2

〈表 3-20〉 厚生年金의 積立金 累積現況

(단위: 억엔, 배)

연도	적립금(A)	연금급여지출(B)	A/B(배)
1988	656,126	84,823	7.74
1989	702,175	93,434	7.52
1990	768,605	102,241	7.52
1991	839,970	110,377	7.61
1992	911,340	120,876	7.54
1993	978,705	129,139	7.58
1994	1,045,318	137,647	7.59

나. 收益比 分析에 대한 文獻研究

1) 野口의 分析

厚生年金은 後世代보다도 前世代에 보다 큰 이익을 주고 世代間에 커다란 손익의 차를 가져오므로써 世代間의 衡平에 반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는 公的年金에서 世代間 收益性的의 격차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적연금에 있어 세대간 형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첫째, 각출한 保險料의 總額과 수급하는 年金의 總額을 비교하여 전세대가 후세대보다도 收益性的이 높다는 점, 둘째, 老齡世代가 수급하는 연금재원의 대부분은 자신이 각출한 보험료가 아니고 勤勞世代가 각출한 보험료에 의해 지급받고 老齡世代는 勤勞世代로부터 많은 액의 移轉을 받고 있다는 점, 셋째, 老齡世代가 수급하는 연금액이 勤勞世代의 소득액과 비교하여 너무 높다는 점 등이다. 두번째 측면은 어떤 특정 시대에 태어난 年齡集團과 다른 시대에 태어난 年齡集團을 비교하는 것인 반면, 세번째 측면은 출생연도와 관계없고 동시대의 老齡世代와 勞動世代의 비교하는 것이다.

公的年金 收益性的의 世代間 推計는 内部收益率(수급연금총액과 각출 보험료총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 給與・釀出比率(각출한 보험료의 총액에 대한 수급하는 연금총액의 비율), 移轉額(수급하는 연금의 총액으로부터 각출한 보험료의 총액을 공제한 액) 등으로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保險料의 總額에는 연금수급때까지의 利子が 더해지고 (각출보험료 총액), 장래 수급하는 年金의 總額은 일정율로 슬라이드 되고 또한 일정의 이자율로 割引된 연금수급시의 現在價値(수급연금 총액)로 나타낸다. 이러한 추계결과들은 後世代로 갈수록 公的年金의 收益性的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이는 世代間 公平에 반하

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89년 일본정부의 연금제도 개정안을 기초로 野口 教授가 행했던 추계를 보면 <表 3-21> 과 같다.

<表 3-21> 厚生年金加入者の 生涯負擔 및 生涯給與

생년	지급개시연령 (세)	보험료총액 (만엔)	연금급부액 (만엔)	연금급부총액/ 보험료총액 (%)
1920	60	851	2,645	3.11
1925	60	1,015	3,122	3.08
1930	60	1,216	3,534	2.91
1935	60	1,498	3,878	2.59
1940	62	1,823	3,263	1.79
1945	64	2,184	2,697	1.23
1950	65	2,555	2,456	0.96
1955	65	2,932	2,456	0.84
1960	65	3,307	2,456	0.74
1965	65	3,663	2,456	0.67
1970	65	3,980	2,456	0.62
1975	65	4,221	2,456	0.58
1980	65	4,412	2,456	0.56
1985	65	4,553	2,456	0.54
1990	65	4,647	2,456	0.53
1995	65	4,700	2,456	0.52
2000	65	4,719	2,456	0.52

資料: 野口條紀雄, 「공적연금에서의 수급·부담구조의 세대간 격차」, 『季刊 現代經濟』, 1984, 봄.

여기서는 일본의 厚生年金의 財政方式이 賦課方式으로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령·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65세부터 수급하는 연금에 관하여 4%의 일정율로 슬라이드하고 60세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5.5%라는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한다.

<表 3-21> 에서 年金給與總額/保險料總額으로 나타낸 厚生年金의 收益性은 후세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1950년생을 기점으로 그 以前世代는 收益比가 1.0 이상으로 총급여비가 총각출보다 높으나, 1950

년생 以後世代의 경우에는 收益比가 1.0 이하로 총급여비보다 총각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후생연금은 1950년 以前世代의 연금급여를 後世代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麻生良文의 分析

1994년 年金改革에 따른 厚生年金의 世代間 移轉을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추계는 部分年金의 도입, 급여의 가치분 소득슬라이드 등 1994년 年金改革案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主要한 前提는 ① 급여의 가치분 소득 슬라이드의 고려 ② 부부는 동연령, 전업주부를 가정, ③ 연금가입시기는 35년(25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 지불), ④ 새로운 보험료율로 계산, ⑤ 보너스에 대한 1%의 부담 고려 등이다.

〈表 3-22〉는 1930년 출생부터 2000년 출생까지 세대의 給與總額, 保險料 負擔總額, 純移轉을 각각 1994년을 기준으로 할인한 결과이다. 또한 生涯所得(계산의 사정상, 25세부터 59세까지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동소득의 할인가치를 사용)에 대한 給與·保險料 負擔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또한 純移轉의 누진도를 보기 위하여 世代內 再分配를 제시하였다. 세대간 재분배 값은 급여 중 현역시대의 보수에 비례하는 부분에서 보험료 부담을 제하고 100으로 나눈 값으로 각 세대의 平均所得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1% 증가한 때에 純移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純移轉이 마이너스로 되는 세대는 196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 19965년생의 純移轉은 1994년 시점에서의 할인가치로 마이너스 63만 엔이다. 그 이전의 세대에서 純移轉은 플러스로 1930년생의 순이전액은 4525만엔에 이른다. 이는 생애소득의 약 3할에 이르는 액이다. 순이전은 1935년생도 생애소득의 2할을 넘고 1945년생도 1할에 가까운 액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5년생은 거의 급여와 각출의 수지가 균등

하지만 장래 세대는 생애소득의 9%가 공적연금에 의해 거둬들여지고 있다.

이 추계에서는 연금의 平均加入期間이 전체세대에서 동일한 것으로 했다. 이 전제로 인하여 고령세대의 급여가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의 고령자에 대한 이전은 크다. 1930년생 세대의 급여가 15% 감소했다해도 給與의 生涯所得에 대한 비율은 0.31이며 純移轉은 0.24정도로 된다. 給與·醜出比率도 3.93과 4에 가깝다.

또한 部分年金의 도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완료된다. 또한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이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 것은 그 후의 세대로 60세부터 부분연금을 받고 그 후 만액연금을 받는다. 만액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서서히 인상되게 되어 있고 1941, 1942년생 세대는 61세부터 1943, 1944년생은 62세로부터 인상되고 1949년생 이후의 세대에서 이행이 완료된다(60세부터 64세까지는 부분연금만이 지급됨).

給與의 生涯所得에 대한 비율이 1940년생 이후 저하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部分年金의 도입에 의한 효과이며, 또 하나는 可處分 所得 슬라이드의 효과이다.

한편 保險料率이 금후 단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醜出의 生涯所得에 대한 비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다. 이번 추계에서는 保險料率은 2020년의 29.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2025년 이후 29.6%의 수준에서 안정된다고 하는 厚生性의 保險料率의 전망을 이용했다.

이것은 보너스에 대한 1%의 징수가 더해지고 있다 (이것은 보험료를 0.3% 포인트의 증가와 같다). 2000년생의 세대에서 醜出의 生涯所得에 대한 비율이 0.3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반영한 것이다.

〈表 3-22〉 厚生年金의 世代間 移轉

(단위: 만엔, %, 배수)

생년	급부	각출	순이전	세대간 재분배	생애소득에 대한 비율			급부/ 각출
					급부	각출	순이전	
1930	5,861	1,336	4,525	9.46	0.37	0.08	0.29	4.39
1935	5,476	1,675	3,801	5.40	0.32	0.10	0.22	3.27
1940	5,002	2,020	2,981	0.24	0.28	0.11	0.17	2.48
1945	4,266	2,336	1,929	-4.88	0.23	0.13	0.10	1.83
1950	3,785	2,596	1,188	-8.66	0.22	0.15	0.07	1.46
1955	3,502	2,777	725	-11.43	0.22	0.17	0.05	1.26
1960	3,253	2,923	330	-13.86	0.22	0.20	0.02	1.11
1965	3,005	3,068	-63	-16.31	0.22	0.22	-0.00	0.98
1970	2,783	3,144	-361	-18.07	0.22	0.25	-0.03	0.89
1975	2,578	3,149	-571	-19.05	0.22	0.27	-0.05	0.82
1980	2,388	3,097	-709	-19.38	0.21	0.27	-0.06	0.77
1985	2,212	2,996	-784	-19.18	0.21	0.28	-0.07	0.74
1990	2,049	2,858	-808	-18.53	0.21	0.29	-0.08	0.72
1995	1,898	2,691	-793	-17.56	0.21	0.30	-0.09	0.71
2000	1,759	2,506	-748	-16.36	0.21	0.30	-0.09	0.70

註: 전액은 1994년시점 할인가적임.

資料: 麻生良文, 「公的年金의 世代間移轉」, 『季刊社會保障研究』, Vol.31, No.2, 1995.

〈表 3-22〉에서 보면, 전후 생의 세대에서는 給與의 生涯所得에 대한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釀出은 保險料率의 段階的인 引上을 반영하여 급속하게 증가해 간다. 釀出의 生涯所得에 대한 비율은 1945년 태어난 세대가 0.13이었던 것에 비하여 1960년에 태어난 세대에서는 이 비율은 0.20에 달하고 1995년에 태어난 세대는 0.30에 달한다. 따라서 전후 태어난 세대에 한정한다면 世代間的 純移轉이 다른 큰 원인은 保險料率의 단계적인 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世代內 再分配는 다음의 계산을 하여 얻을 수치이다. 각 세대의 平均所得 家計를 생각해 보자. 이 가계가 받는 급여 중 定額部分을 sbc, 급여 중 報酬比例部分을 sbw, 保險料負擔을 st,

純移轉을 nsb 로 나타낸다. 平均所得의 $x\%$ 증가(생애를 통하여 일정하게 $x\%$ 로 증가한다고 한다)시 소득의 가계의 純移轉을 $nsb(x)$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begin{aligned} nsb(x) &= sbw(1 + \frac{x}{100}) + sbc - st(1 + \frac{x}{100}) \\ &= sbw + sbc - st + (sbw - st) \times \frac{x}{100} \\ &= nsb + (sbw - st) \frac{x}{100} \end{aligned}$$

〈表 3-22〉의 世代內 再分配는 $(sbw-st)/100$ 을 계산한 것이다. 결국 이는 평균소득 1%의 증가가 순이전을 몇만엔 증가시킬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숫자가 플러스라면 소득수준이 높은만큼 純移轉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逆進的인 再分配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역으로 마이너스라면 소득이 높은 가계에서의 純移轉이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940년 태어난 세대에서는 逆進的인 再分配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태어난 세대에서는 逆進的인 再分配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평균소득의 2배의 소득의 가계(100% 증가)의 이전은 1930년생의 경우 평균소득의 가계의 이전이 4525만엔보다도 946만엔 크다는 것이다. 역진적인 재분배는 전후 태어난 세대에서는 해소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도 예를 들면 1950년생의 경우에도 평균 소득의 2배의 소득의 가계의 순이전은 플러스이다.

이와같은 厚生年金이 야기한 世代間 移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세대의 평균소득 가계에서는 1965년생의 세대에서 수지가 거의 균등하고 그 이전의 세대에는 플러스의 이전이 있고 그 이후의 세대의 이전은 마이너스이다. 둘째, 각 세대의 평균소득의 가계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의 사이의 순이전이 다른 큰 원인은 각 세대가 직면

한 보험료율의 차이이다. 셋째, 1940년 이전의 세대에서는 지극히 역진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동일 세대 내부만 생각한 역진적인 재분배는 전후 태어난 세대에서는 해소된다. 다섯째, 1965년 태어난 이후의 세대로부터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에 이전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1930년대에 태어난 고소득층에의 이전은 대단히 크다.

第3節 獨逸

1. 年金制度의 基本構造

獨逸의 年金保險에는 주요한 제도로 勞働者 年金保險과 職員年金保險이 있고 그 외에 광업종업원 연금보험, 수공업자 연금보험, 전문직 직업자 단체 연금보험, 농업자 노령 부조 등이 있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액 공비부담의 公務員 年金制度가 있다.

年金保險의 運營機關은 勞働者 年金保險의 경우에는 18개소의 州保險事務所, 연방철도 보험 사무소, 해원금고이며, 職員年金保險에 대해서는 聯邦職員保險事務所, 광업종업원 연금보험에 관해서는 연방광업종업원 조합, 농업자노령부조에 관해서는 19개소의 농업노령금고이고, 수공업자 연금보험에 관해서는 주보험사무소가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公的인 年金保險은 재활을 위한 급여, 사망 일시금등의 급여도 행하지만 활동의 압도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年金의 給與로, 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① 可得能力의 감퇴에 따른 年金 ② 老齡年金 ③ 遺族年金 ④ 離婚後의 年金의 4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①은 가득능력의 50%이하에의 저하에 대한 職務不能年金과 거의 완전한 능력상실에

대한 可得不能年金으로 나누어지고 ③은 과부, 홀아비연금과 고아연금 ④는 이혼과부, 홀아비연금과 양육연금으로 나뉜다. ②의 노령연금도 모델적으로는 남자 65세, 여성 60세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되고 있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早期受給의 가능성이 있고 또 受給年齡을 연장하여 연금액을 인상할 가능성도 인정되고 있다.

年金水準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R = (P \times B) / 100 \times (J \times St) / 100$$

R은 個人的 年金額이다. P는 個人的 算定 基礎이며 피보험자가 노동생활에 있어서 가득한 임금과 전체 보험자의 평균 임금과의 비율이며 최고는 200%로 결정되고 있다. B는 一般算定基礎이며 매년 절대액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前年の 일반산정기초를 전년의 전피보험자의 總平均所得의 前前年の 수준에 대한 신장율에 비례하여 인상하는 형으로 결정된다. 1989년에 있어서는 그 해의 總平均所得의 75%로 되고 있다. J는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불려지는 保險加入期間이며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각출한 기간에 더하여 예를 들면 실업, 직업훈련, 질병의 기간, 그리고 1986년부터는 육아기간이 포함된다. St는 保險加入期間에 대한 加算率이며 老齡年金의 경우는 1.5이다.

독일의 연금보험이 能力主義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개개의 연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P와 J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다. 이는 退職以前의 生活水準과 연금생활의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그 결과 과거에 있어서의 可得水準과 保險加入期間에 따라 연금액은 個人差가 매우 크게 된다. 특히 女性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남성에 비하여 적어 낮은 연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公的年金의 財政은 기본적으로는 保險料와 聯邦政府의 補助金에 의해 負擔되고 있다. 政府의 援助는 급여측면의 一般算定基礎에 대응

시키는 형으로 결정되고 있다. 保險料에 관해서는 1957년의 개혁 이래 賦課方式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必要한 年金給與 總額으로부터 聯邦政府의 補助를 제한 分을 被保險者에 부담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保險料率은 年金수급자수와 피보험자수의 비례 및 임금총액과 年金수준의 비율, 연방정부의 원조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단, 年金급여액 중에는 年金생활자가 가입하는 疾病保險에의 保險料의 지불분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年金生活者의 疾病保險에 관해서는 피고용자의 고용부담분에 해당하는 반액부분을 年金보험기관에 부담하고 남은 반액을 年金생활자 자신이 부담한다.

2. 制度的 與件의 變化

가. 人口構造의 變化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人口 高齡化는 선진 제국에 공통된 사회 현상이며 21세기에 걸쳐 장기적으로 각국의 年金제도에 중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문제는 老齡人口의 增加뿐만 아니라 年少人口의 減少, 出生率의 低下, 女性의 育兒·介護와 社會進出의 문제 등 폭넓게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 서독의 인구는 이미 1974년에 6,205만인으로 그 피크를 맞이하여 그 후 감소로 전환하여 1980년 6,157만인, 1985년에 6,102만인으로 국제연합의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2000년 5,948인, 2025년에는 5,349만인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서국 제국에서 가장 낮은 出生率과 平均壽命이 현저한 신장이 있다.

합계특수출생율은 1965년의 2.51로부터 해마다 급감하여 1975년에는 1.45로 되고 1985년은 1.28까지 저하하고 있다. 구 서독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1.57을 훨씬 하회하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접하는 비율(고령화 비율)은 독일에서는 이미 1934년에 7.1%이었고 전후 한층 급속히 人口高齡化가 진행되어 1970년에는 13.2%, 1985년에는 14.7%로 되었다. 향후 2000년에는 18.2%, 2030년에는 28.3%로 한층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人口高齡化의 결과 年金受給者 比率(연금수급자의 보험료 각출자에 대한 비율)은 1986년의 56%로부터 2040년에는 약 2.5배인 140%로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2020년 경에는 100%, 즉 保險料 釀出者와 年金受給者의 비율이 1대 1로 된다. 2040년에는 전자가 100인에 대하여 후자가 140인으로 되고 保險料 釀出者 2인이 연금 수급자 약 3인을 돌봐주게 된다.

최근의 老齡年金의 受給者數는 1972년에 476만인, 1975년 549만인, 1980년 627만인, 1985년 670만인, 1990년의 잠정치로 824만인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20년간 1.7배로 증가하고 있다. 年金支給開始 年齡의 단계적 인상 조치는 年金受給者 비율의 개선에 연결된다.

이러한 人口構造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社會經濟的 變動에 따라 賦課方式에 기초한 연금제도에서는 現在의 保險料率 18.7%를 2030년 경에는 2배로 인상하든가 역으로 年金額을 반분으로 인하하든가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被保險者·年金受給者·國家의 3자에 의한 負擔의 公平化에 따라 피보험자나 기업의 부담 능력을 넘는 37~42%라고 하는 保險料率의 인상을 저지하고, 2040년경에도 26~31% 정도로 억제할 수 있는 改革을 행하는 것이 조금히 요청되고 있다.

나. 經濟·雇傭環境의 變化

제1차 석유위기 이후 低成長經濟에의 이행, 國家政策의 악화, 失業者의 증가, 人口高齡化의 진전 등에 따라 社會保障의 財政危機가 부각

되고 구미 선진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社會保障에 대한 전반적인 再檢討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EC 제국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경제운영을 과시하고 있던 구 서독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있다. 1980년대는 1970년대 후반 이상으로 심각한 長期的인 經濟停滯가 계속되고 실질 성장율은 1980년 1.5%, 1981년 0%, 1982년 마이너스 1%, 1983년 1.8%로 제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며 1984년 이후도 2~3%의 저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의 名目所得 成長率도 둔화하고 名目所得으로부터 所得稅·社會保險料를 뺀 純所得은 한층 불리한 영향을 받고 實質 所得은 1980년대 들어서 물론 정체 내지 저하하고 있다.

失業率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 급증하고 등록 失業者가 1975~76년에 100만대로 오르고 지금까지 1% 이하였던 失業率로 4%대로 상승했다. 그 후 1980년까지는 100만인을 넘지 않았던 것이 1980년대는 해마다 雇傭狀況이 악화되고 1981년의 失業者數 127만인, 失業率 5.5%로부터 1985년의 230만인, 9.3%로 악화의 일로를 걷고 그 후도 200만인대, 9% 전후의 높은 실업율이 되고 있다. 즉 1980년대를 통하여 長期的으로 勞動市場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그 영향은 高齡者나 女子, 障礙者 등에 심각하다.

이러한 經濟·雇傭環境의 변화는 당연히 年金 財政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勞働者年金保險과 職員年金保險을 합친 變動 準備金은 마침내 1984년에는 전년 연금지출액의 0.9개월분으로 되고 법정최저준비금인 1개월분을 하회하고 연금의 지불에도 지장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年金保險은 100년의 연금 사상 처음으로 단기 대부를 1984년 말에 받아 급한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러한 長期的인 經濟·雇傭 環境의 악화가 1980년대를 통하여 1970년대 후반 이후로 본격적인 연금제도의 재검토를 압박하는 배경으로 되고 있다.

다. 高年齡者의 就業 狀況의 變化

1970년대 이후 高學力化와 早期退職의 經향에 따라 就業年數의 短縮化가 進행됐다. 특히 취업연수의 단축은 1972년의 年金年齡 選擇制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 구 서독에서는 65세로 고정적이었던 노령연금 支給開始年齡이 제 2차 연금개혁에 의해 彈力化하고 특례로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60~63세부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도의 노동에 대한 생각과 수급조건의 유리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65세 이전에 早期 退職하고 老齡年金을 수급하는 자가 증가하여 곧이어 特例가 正常化되고 65세 지급개시의 원칙은 有名無實化하고 있었다. 즉, 1989년에는 정규의 65세에 신규재정연금을 수급하는 남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60~64세에 퇴직하여 연금을 수급하는 자가 70%까지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제 2차 연금개혁 이후 高年齡者의 勞動力率은 해마다 떨어지고 예를 들면 63세 남자의 노동력율은 1970년의 67%로부터 1980년에는 27%, 또한 1989년은 21%로 저하하고 있고 특히 60~64세의 남성의 노동력율이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연금개혁은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여 年金財政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졌으며, 部分年金制度의 도입은 이 特例 廢止의 緩衝裝置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다른 한편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에 의한 서비스 경제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최근 雇傭의 彈力化가 이루어지고 있고, 高齡者의 勞動機會도 증대하고 있다. 또 노동능력이나 노동의욕은 고령자의 경우, 동

일 연령에서도 개인차가 크다. 고령자의 개개인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파트타임 고용 등의 활용에 의해 職業生活로부터 年金生活로 서서히 이행하는 환경이 정비되어 간다. 또 人口高齡化가 진전하고 있는 중에서 각각 한계를 갖고 있는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을 지원하는 高齡者 雇傭의 중요성이 근년 구미에서는 주목되고 있지만 구 서독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며 部分就業·部分年金의 사상이 1994년 연금개혁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라. 貧困高齡者의 生活問題

전후 年金生活者도 1957년의 제1차 年金改革에 따른 임금 슬라이드 제의 도입에 따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標準年金이나 平均年金額의 매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標準賃金の 조건을 채우지 않는 年金受給者나 低額의 年金을 수급하고 있는 高齡者가 다수 존재한다.

전후 복지국가의 진전 과정에서 서독에서의 막대한 은폐된 貧困層의 존재를 지적하고 1970년대 중엽에 나온 보고서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CDU의 가이슬러였다. 그는 “1974년에 있어서 약 200만의 세대(세대 전체의 약 9%)에서 580만인 하에서는 월간순소득이 사회원호 신청가능수준 이하였다”고 제안하고 오늘날의 새로운 사회 문제는 어린이, 주부, 노인이라는 무력한 집단의 보호·보장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1983년말에 실시된 각종 조사에서도 資産·所得 隔差가 확대되고 있고, 자산보유액이 적은 세대나 차금을 안고 있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분석되고 있다. 연방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87%의 세대는 자산이 債務를 상회하는 정의 금융자산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8.1%의 세대(189만 세대)에서는 채무가 자산을 상회하고 있고, 5.3%

의 세대(124만 세대)는 자산 제로였다.

또한 資産分布도 지극히 편중되어 있고 소수의 고액소득자에 자산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의 소득분포결과에 따르면 피고용세대의 44%가 가처분소득월액 2,000마르크 이하이며, 피고용자 세대의 77%가 3,000마르크 이하이다. 즉 전 세대의 50% 이상의 세대의 지출이 월 2,900마르크 이하이다.

社會扶助 受給者 數를 보아도 1970년은 약 150만인이지만 1980년대를 통하여 증가경향에 있고 1980년 214만인, 1986년에는 302만인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인구 1,000인비로 본 扶助 受給率도 1970년의 25로부터 1980년 35, 1986년에는 49로 상승하고 있다. 社會扶助 受給者 전체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은 1970년대의 30%로부터 1980년 28%, 1985년에 18%로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지만 절대수로는 65세 이상의 사회부조 수급자수는 1970년의 48만인으로부터 1980년의 60만인, 1985년의 51만인으로 거의 감소하고 있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의 高齡 女性의 社會扶助 受給率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多數의 高齡 貧困者의 존재가 현행 年金制度의 근본적 改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 被保險者間의 不公平性의 問題

구 서독의 公的年金制度는 노동자연금보험, 직원연금보험, 광산종업원연금보험 등의 직능별로 분립하고 있지만 1957년의 年金改革으로 노동자연금보험과 직원연금보험은 내용적으로 거의 통일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比例釀出·比例給與의 원칙에서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화이트 칼라의 임금격차를 반영하여 양 제도간에는 平均年金額에 큰 격차가 있고 그 시정이 장년 과제로 되고 있다.

또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男女不平等의 시정도 1980년대의 과제로

되고 있었다. 1975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는 1984년까지 遺族年金의 男女 平等化와 女性の 年金保障을 위한 법개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1977년에 「女性(妻) 및 遺族의 社會保障을 위한 專門家 委員會」(여성·유족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1979년에는 각종의 유족연금의 급여 방법과 육아기간의 산입에 관한 최초의 개혁안을 공표하고 있다. 1982년 가을의 CDU/CSU·FDP정권 탄생 후에도 검토가 계속되었지만 1985년 7월에 「유족연금·양육기간법」의 성립에 따라 일체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녀간의 연금 격차는 크게 남아 있다.

남녀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賃金面에 있어서의 격차 외에 결혼, 육아, 가족의 간호·개호 등으로 퇴직·휴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保險加入期間이 짧아지기 쉬운 것을 들 수 있다. 15세로부터 65세까지의 남자의 평균 취업율이 82%인 것에 대하여 여성의 직장 진출이 두두러지고 있는 서독에서도 여성의 平均 就業率은 54%로 남자보다 현저히 낮다.

3. 年金制度의 變遷

가. 第1次 年金改革(1957年)

1957년의 年金改革은 年金의 性格, 年金算定方式, 年金財政方式 등 現行 年金制度의 기본 「틀」을 결정한 중대한 개혁이었다. 年金改革은 야당인 사회민주당(SDP)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민주·사회동맹(CDU·CSU), 자유민주당(FDP) 등 정부여당 내부에서의 격렬한 대립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改革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所得比例的 요소가 더욱 강화되는 給與算式의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연금액이 定額의 基礎年金部

분과 각출된 보험료에 따른 所得比例部分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금액이 피보험자의 보험료 각출기간 중의 總平均報酬와 加入年數에 正比例하여 산정되게 됨으로써 임금대체성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다. 이는 연금액이 全體 被保險者의 平均總報酬와 個人의 平均總報酬와의 比率, 즉 生産性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生産性 年金'의 성격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액의 산정은 개인의 평균보수와 함께 현재의 全體 被保險者의 平均總報酬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는데, 이는 급여액이 賃金水準의 上昇에 따라 連動하여 산정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으로부터 이미 탈퇴한 年金受給者도 經濟成長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을 누리게 되고 연금수급자와 근로세대와의 소득격차의 확대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年金財政方式이 積立方式으로부터 30년 사이에 10년을 단위로 하는 期間 修正賦課方式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최종년의 말에 전년도의 급여비용의 변동준비금이 남을 수 있도록 保險料率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재정상황은 2년마다 추계를 행한다.

이 외에 급여에 재할 부분이 추가되고 생산활동에의 복귀를 지원하며, 보험료율이 11%로부터 14%로 되었고, 노동자연금보험과 직원연금보험이 통일적인 내용을 갖도록 하였다.

1957년 연금개혁은 노후의 생활보장이 본인의 근로시의 임금수준 및 현 근로세대의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함으로써 年金의 '世代間 連帶 契約'으로서의 性格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한편 1965년부터 1967년간의 景氣後退와 政權交代(SPD와 CDU/CSU의 대연립 정권)를 거쳐 1967년의 경제안정성장촉진법이나 1969년의 제3차 연금보험개정법에 따라 1967년에는 연금 보험에의 聯邦補助의 削減이 이루어졌으며, 1968년부터 保險料率이 매년 1%씩 인상되어

1970년에 17%로 되고 1974년에는 18%로 되었다.

또한 年金受給者 疾病保險의 保險料로 2%를 징수하기로 하였으나 1968년부터 1969년의 2년만에 중지되었다. 1968년부터 직원연금에서의 高額所得者의 適用除外가 없어지게 되고 직원은 전부 강제적용하게 되었다.

1969년부터 勞働者年金保險과 職員年金保險사이에 財政調整制度를 도입하여 어느 한쪽의 積立금이 전년의 지출의 2개월 분을 하회하고 다른 쪽의 적립금은 4개월 분을 상회할 때에는 전자의 적립금이 2개월 분으로 될 수 있도록 후자에 조정 지불을하기로 하였다.

1969년부터 財政方式이 賦課方式으로 교체되었으며 노동자연금보험과 직원연금과 합산한 積立금이 3년 연속하여 전년 지출의 3개월분을 하회할 때, 그 해로부터 保險料率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財政推計는 매년 15년마다 행한다.

나. 第2次 年金改革(1972年)

1969년의 총선거 후 SPD는 FDP와 聯立政權을 형성하고 1972년 10월에 성립한 제2차 연금개혁법은 종래의 제도적 조직 가운데서의 給與擴大를 기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

첫째, 彈力的 退職年齡에 의한 노령연금수급을 인정하여, 일정의 보험료각출기간을 채우는 자는 63세(중도 장애자, 가득 불능 또는 직업 불능의 자는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部分就業도 인정된다

둘째, 最低年金保障制를 도입하였다. 이는 특히 低賃金을 받는 여자의 연금수준을 인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5년 이상의 강제가입기간을 갖는 자의 1972년까지의 平均總報酬가 全體被保險者의 平均總報酬의 75%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전체 피보험자의 평균

총노동보수의 75%를 얻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하였다.

셋째, 年金水準을 확보하기 위하여 標準年金(가입연수 40년으로 전체피보험자의 평균총보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가진 자의 연금)이 2년 연속해서 全體 被保險者의 平均總報酬의 5할을 하회하는 경우 聯邦政府는 연금수준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主婦와 自營業者의 任意加入을 인정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독일 국민은 사회보험인 어떠한 연금보험에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1975년의 「장애자사회보험법」에 따라 중도장해자의 임의가입과 장해자 작업소 및 시설에서 일하는 장해자에 대한 강제적용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2차 연금개혁 실시 직후 일어난 2차에 걸친 石油危機에 따라 서독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각종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연금의 임금상승에 따른 調整率이 好景氣時의 賃金上昇率 수준으로 연동되어 年金財政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77년의 제20차 연금조정법, 1978년의 제21차 연금조정법에 의한 財政健全化 조치가 취해졌다. 제20차 연금조정법에 의한 財政健全化 조치를 살펴보면, 기재정연금의 조정 시기를 반년 늦춰 1979년 1월로 하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一般算定基礎의 산출 대상의 時間的 差異를 1년 短縮하여 보다 現實의 賃金水準에 가까운 형태로 개정하였다.

또한 準備義務 積立金 규모를 종래의 3개월분에서 1개월분으로 개정하고, 財政調整의 條件을 緩和하여 한쪽의 적립금이 4개월 분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의 연금지급에 장애가 없는 한 다른 쪽에의 조정 지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任意加入者의 最低保險料를 월액 18마르크(1977년)로부터 段階的으로 引上하여 1980년에는 80마르크

로 한다. 1979년 이후 강제가입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도 強制適用者로 하고 실업수당에 대응하는 年金保險料를 聯邦 雇傭廳이 부담한다. 年金受給者 疾病保險에 대한 보조를 10.98%로부터 11%로 인상하고 기타의 초과 부담은 폐지했다. 또한 強制加入者의 범주를 制限하고 그 이상의 자는 1978년 이후부터는 任意加入者로 하였다. 兒童加給을 152.90마르크의 定額制로 했다. 15년의 加入期間을 채우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의 직업재활은 1979년 이후부터 실업보험으로 이관하였다.

한편 1978년의 제21차 年金調整法은 한층 그 내용을 강화했다. 年金調整率을 통상의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1979년을 4.5%, 1980년 및 1981년을 4.0%로 함과 동시에 연금액 산정의 기초로 되는 一般算定基礎額도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 年金保險料率을 1981년부터 18.5%로 인상했다. 강제가입을 면제받는 자의 所得活動의 限度를 월수 390마르크, 또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2개월 또는 50일 이상으로 했다. 1979년 이후의 任意加入者는 보험료의 각출이 3년 연속하고 각출액이 1년 합계해서 최저보험료의 12개월분을 넘는 경우에만 슬라이드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任意加入者의 最低保險料는 1979년, 1980년에 월액 72마르크로 하고 1981년 이후는 보험료산정 한도액의 신장에 따라 개정하도록 하였다. 年金受給者 疾病保險에 있어서도 1982년 이후부터는 年金受給者가 保險料를 각출하도록 하였다. 1982년 연금조정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11.8%로 하고 실시를 1983년까지 연기하였다.

이와 같이 負擔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982년 年金調整法에 의한 保險料率의 引下(1980년은 18.0%) 등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나, 1982년 가을 SPD/FDP 정권은 붕괴하고 대신에 CDU/CSU/FDP 정권이 탄생했다.

전 정권은 1975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1984년까지 유족 연금의 男女 平等化와 女性의 年金保障을 위한 법개정을 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1977년에 「여성(처) 및 유족의 사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1979년에는 각종의 遺族年金의 給與 方法과 育兒期間의 산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동년에는 「사회심의회」가 예년의 年金改正에 따른 의견서에 있어서 年金財政의 長期安定策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81년에 제출된 의견서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노령보장의 장기적인 제문제』라는 제하로 서력 2000년 이후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금 제도의 존재 방법을 논하고 있다.

또한 동년 발족한 「노령보장제도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권이 바뀌고 말았다. 이들 개혁안이 검토해 왔던 과제는 제3차 연금개혁에 있어서 실현된 遺族年金의 男女 平等化와 年金給與에 있어서의 養育(育兒)期間의 고려를 제외하고는 현재에 있어서도 미해결이다.

신정권은 그 시정 방침 연설에 있어서 「높은 경제 성장율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서술하고 자유와 활력과 자기 책임을 확대하는 의향을 꺼내 놓았다. 그리고 사회정권의 목적은 참으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주는 것에 있다고 하여 시민의 자조와 호조가 우선되고 국가는 보충적 역할을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財政危機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숨 돌림」에 따라 새로운 연대의 기초로 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연금액의 개정의 반년 연기이며 1982년 12월의 1983년 예산 관련법에 따라 실행되었다. 이것에 따라 전의 개정기로부터 1년 반 후의 1983년의 7월에 간신히 개정이 행해졌다. 동시에 연기되고 있었던 年金受給者의 疾病保險의 보험료도 1%(그 후도

1984년: 3%, 1985년: 5% 인상된다)의 자기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되었다. 1983년 예산 관련법에는 그 외에도 保險料率의 引上(1983년 9월부터 18.5%), 聯邦補助金の 削減(약 9억 마르크) 등의 재정대책과 제20차 연금조정법에 따라 도입된 失業給與 受給者の 강제가입의 除外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4년 예산관련법과 年金調整法에 따라 年金財政의 올바른 확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의 조치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것도 年金改革의 조치가 연금제도의 構造 改革的 효과를 갖고 年金法의 정비에 따라 연금의 보다 합리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금의 개정율의 기초로 되는 一般算定率의 伸長率을 前年の 전피보험자의 평균 총노동 보수의 신장율로 했다. 이에 따라 年金額의 上昇率이 現役 勞動者の 賃金上昇率에 완전히 연계하는 것으로 된다. ② 標準年金의 年金水準의 확보 조항이 「연금과 可處分 勞動報酬와의 均衡있는 발전이라는 원칙」의 선언으로 바뀌었다. 통상 퇴직연령에 따른 老齡年金 受給資格 요건으로서 15년간의 보험기간이 필요하고 있었던 것을 고쳐, 5년간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했다. 이는 女子 受給資格者를 배려한 것이다. ④ 職業不能年金의 수급자격 요건으로서 保險事故 발생의 최근 5년간 중 3년간의 보험료 각출기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연금의 임금 대체성을 강화했다. ⑤ 疾病手當 등의 사회급여에 대하여 완전한 齎出義務를 부과함과 동시에 特別手當(크리스마스 휴가 수당, 유급 휴가 수당 등)에 관한 齎出義務를 강화했다. ⑥ 재결혼의 寡婦(寡夫) 연금의 一時金の 액을 과거의 연금액의 5년분으로부터 2년분으로 감액했다. ⑦ 종래 연금의 兒童加給을 신규재정 연금부터는 兒童手當으로 전환하고 연금재정의 경감을 꾀했다. ⑧ 재할 참가자가 강제가입에서 제외되고 재할참가 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탈락기간으로 되었다. ⑨ 결핵급여를 疾病保險

의 급여로 전환했다.

그런데 1984년 말의 年金財政의 곤란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1984년 雇傭促進 法定年金保險法 改正法에 따라, 1985년부터 1989년까지에 한하여 保險料率을 18.7%까지 인상하는 것이 결정됐다. 그러나 1984년 말의 年金財政은 당초의 전망 이상으로 악화하고 變動準備金이 1개월 분이라는 최저액을 하회해 버리고 말았다.

다. 第3次 年金改革(1985年)

1985년 11월 서독(당시)의 의회에 있어서 「遺族年金의 개정 및 연금 보험에 있어서의 兒童養育期間의 승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명칭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은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분은 遺族年金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의 취급을 실현하고 후반부는 兒童의 養育을 행한 자에 一定 期間의 保險加入 및 保險金 釀出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아동교육의 부담을 社會的으로 調整하려고 하는 것이다.

1985년의 법 개정의 전반부분은 1975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遺族年金에 있어서의 男女의 다른 취급을 즉각 헌법위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平等한 취급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妻는 자기연금의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夫가 사망하면 自動적으로 夫의 연금의 60%를 遺族年金(과부연금)으로 수취할 수 있었으나, 夫는 妻가 사망한 경우에 自動적으로 遺族年金을 받는 것이 아니고 寡아비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生前에 妻가 주로 生計를 지원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라는 특별한 전제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1911년의 유족연금제도의 도입시점에 상정되고 있었던 상황, 즉 일반적으로 男便이 唯一한 家計의 支持者라는 상황이 붕괴하고 妻의 可

得生活에의 참가가 늘어나고 夫婦가 共同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남편에게만 지워지는 특별한 전제는 거의 의미를 잃고 있다. 따라서 1985년 개정 이후부터 夫는 妻가 사망한 경우 자동적으로 홀아비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遺族年金을 새로운 夫婦의 存在方式에 적용시키려는 것이며 하나의 家族政策的 措置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조치에 의해 併給支給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부터 과생하는 財政負擔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부연금, 홀아비연금 모두에 새로운 制限이 설정됐다. 즉 遺族年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配偶者가 받고 있던 연금의 60%이지만 자기 연금을 포함한 所得이 월액 900마르크를 넘는다면 넘은 부분의 40%가 遺族年金으로부터 控除되는 것이다. 개정 당시의 寡婦年金의 평균이 676마르크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은 2,590마르크 이상의 자기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 이 900마르크의 경계는 연금의 一般算定基礎에 합쳐 슬라이드되고 또 自己 所得이 감소한다면 당연 이 遺族年金의 停止部分은 다시 지급된다.

이 제한 규정은 寡婦年金에 관해 종래는 없었기 때문에 급격한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10년의 移行措置가 취해졌다. 결국 夫가 1986년 1월 1일부터 1995년 1월 1일의 사이에 사망한 寡婦에 있어서는 900마르크를 넘는 所得의 割引率이 1년째 0, 2년째 10%, 3년째 20%로 인상되고 5년째로부터는 4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개정의 후반 부분은 한층 큰 家族政策的 意圖를 갖고 있다. 결국 독일 국내에서 어린이를 양육하여 1986년 이후에 65세가 되는(따라서 1921년 이후 탄생의) 母親(양모, 계모, 기른 어머니를 포함한다)은 어린이 1인당 1년의 法定 年金保險 加入期間이 인정되는 것이다. 夫婦가 合意한다면 이 기간을 父親의 保險加入期間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률의 발효의 때에 이미 장애연금이나 조기노령퇴직연금을 취득하고 있는 처 또는 부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보험사고에 의한 연금재정의 때에 적어도 만 65세까지 이 養育期間이 산입된다. 또 이 규칙의 발효의 때에 만 65세의 직전에 있는 사람으로 保險加入期間이 老齡退職年金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不足分을 자유의사에 따라 釀出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4년 1월 1일부터 老齡退職年金의 청구권 획득을 위한 保險加入期間이 지금까지의 15년으로부터 5년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년간만 가득활동을 하여 퇴직하고 3인의 아동을 양육한 女性은 이것에 의해 5년의 最低保險加入期間을 만족한 것으로 되어 1986년부터는 자신의 연금을 수취할 수 있다.

兒童養育期間 중은 항상 平均가득의 75%가 취득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것은 개정 당시의 연금수준에서는 아동 1인당 월액 25마르크의 인상으로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10년간 年金保險에 가입하고 항상 全被保險者의 平均可得의 75%를 취득해 왔던 여성은 1986년에 65세가 되어 연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구법의 경우 월액 250마르크의 연금으로 된다. 그러나 그녀가 3인의 어린이를 갖고 각각 출산후 1년간 가득을 중단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어린이 당 1년의 保險加入期間이 산입되고 그 기간 중도 平均가득의 75%를 취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각각 25마르크가 가산되어 그녀의 年金額은 325마르크가 된다. 가득활동을 일정 행하지 않는 따라서 年金保險에 각출을 하지 않는 기른 자녀가 4인 이하의 경우 兒童養育期間의 승인만으로는 아직 자기의 연금 청구권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不足分을 自由意思에 따라 각출하는 것에 의해 5년의 最低條件을 채울 수 있다. 더구나 이 경우 법정 最低釀出相當額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예를 들면 3인의 어린이를 기른 여성은 약 2,000마르크의 임의 각출에 의해 월액 90마르크의 연금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育

兒期間의 도입없이 임의의 각출만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1만 6,300마르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兒童養育期間의 산입이 출산율 증가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1986년과 1987년에 새롭게 지급된 여성에의 연금의 65%, 70만건이 養育期間의 산입을 포함하고 있었다.

개정 시점에서 이미 65세 이상인 여성에 대해서는 이 법률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財政的 制約에 의해서였다. 전체의 여성에 아동육아기간의 산입을 인정한다면 연간 50~60억 마르크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年金保險의 財政을 압박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100년 이상에 걸쳐 무시되어 왔던 育兒活動을 적어도 현재 이후는 연금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 정부 및 의회의 의도였으나 여론에서 이를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1921년 이전에 탄생한 母親의 育兒에 대한 법정 연금보험의 급여에 관한 법률」 소위 「育兒給與法」이 제정되었지만 年金은 아니며, 연금과 병행하여 지불되는 독자의 급여라고 간주되고 있다. 지급액은 평균가득의 75%를 취득한 경우의 연금과 동액이며 비용은 聯邦이 年金保險機關에 불입하는 형을 띤다. 약 410만명이 이 급여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즉각 出生率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世代間 契約의 실현에 대해 불가결의 요소가 처음으로 年金保險에 편입되었다는 것의 의의는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곧 扶養할 世代를 키우는 노력이 연금체계 중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었던 것이며 다음 세대는 그 모친을 통하여 다원사회에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라. 第4次 年金改革法(1992年)

1992년 年金改革法은 人口構造나 社會經濟構造 등의 변화에 적응해

가고 年金財政의 長期安定化를 목표로 시행된 것으로 2010년경까지 고려한 長期的 改革이다. 법개정으로 주목되는 첫째는 1980년대에 제안된 각종의 기본연금 구상을 채용하지 않고 現行 制度의 틀 내에서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차 연금개혁의 기본적 특색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제2차 연금개혁으로 도입된 연금연령선택제를 高齡化 社會에 적응한 형으로 修正하면서 保險主義를 기초로 하는 現行 制度의 有志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改革의 基本理念이다. 이를 위하여 총조정주의로부터 純調整主義로의 변경, 年金支給開始年齡의 65세로의 단계적 인상, 聯邦補助金の 동태화 등의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둘째로 지적해야 하는 점은 兒童養育期間 및 介護期間의 보험기간에의 산입, 部分年金制 및 減額年金制의 도입 등 인구구조나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주목할만한 시책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법은 단순한 재정재건법이나 비용절감법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개혁에 따라 年金財政은 2010년경까지는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1997년경까지는 保險料率을 현행의 18.7%로 유지할 수 있고 그 후의 2015년경까지도 부담 가능한 25% 이하로 억제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現行 年金制度의 基本的 틀의 維持

공적연금제도의 長期安定性과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現行 制度의 틀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다. 被雇傭者 年金制度는 금후에도 勞動者 年金保險, 職員 年金保險, 鑛山 從業員 年金保險의 3제도로 나누어져 유지된다.

현행 제도의 기본적 특질인 임금·가입기간의 年金額과의 연결성의 원칙이 금후도 유지된다. 따라서 최저활의 보장만이 아니라 생활수준

의 보장이 계속 실시된다. 즉 공적연금이 종전 소득의 일정 퍼센트(가입기간 45년의 모델 연금 수급자인 순임금의 약 70%의 연금 수준을 확보)를 보장하는 임금대체 기능을 금후도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1980년대 중엽에 무성하게 논의된 조세형의 기본연금 내지 기본연금의 도입을 확실히 부정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保險主義에 기초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이하와 같은 부분적 수정도 도입되었다. 우선 年金調整 方式이지만 취업자와 연금생활자와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年金額의 매년의 인상을 내지 슬라이드율이 全被保險者의 평균 총노동보수의 상승율이 아니라 租稅·社會保險料 공제 후의 전피보험자의 平均 純勞動報酬의 上昇率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되었다(총조정주의로부터 순조정주의로의 변경). 또 종래와 같이 연금조정법에 의해 매년의 기재정연금의 슬라이드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전 제 6편 자체에 매년 7월 1일에 연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방 정부의 정령에 따라 슬라이드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었다.

年金額의 計算式도 단순화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행해졌다. 연금연액이 아니라 당초부터 연금월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고쳐져 예를 들면 노령 연금의 연금월액 = 가치단위 × 일반산정기초 × 0.00015 × 1/12로 계산된다. 또 保險料 釀出期間에 기초한 연금 부분과 보험료 무각출 기간에 기초한 연금 부분은 분리하여 나타내게 되었다.

종래 失業保險金이나 疾病手當의 수급 중은 연금보험에의 보험료 불입을 면제하고 그 기간(소위 탈락 기간)도 보험료 각출 기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금회의 개정에서 그들 기간에 관해서는 1995년부터 종전의 임금의 80%를 기초로 하는 보험

료를 각각의 기관에 부담시키고 1997년부터 실제의 보험료 각출 기간에 기초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게 되었다. 保險料 無釀出 期間에 관한 보험주의가 강화되게 되었다. 보험료는 종전대로 보수액을 기초로 계산되고 징수된다.

2) 年金支給開始年齡의 段階的 引上

구 서독에서는 정년과 동시에 연금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노동자의 일반적 퇴직 패턴이지만 1972년의 제2차 연금개혁에서 연금연령선택성이 도입되고 그 이전의 정년인 65세보다도 조기에 퇴직하여 60-63세로부터 彈力的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회의 개정에 의해 통상의 남성의 경우 早期支給開始年齡을 63세로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生涯勞動時間의 長期化에 연결되는 조치이다. 이 인상에는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으로부터의 반대도 강력하고 최후까지 가장 논의가 행해졌던 점이지만 世代間의 均衡 維持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승인되었다. 단지 정부안에서는 인상을 1995년부터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개시 기간을 6개월 늦춰 2001년부터 당초는 4개월마다 한달씩, 2005년부터는 2개월마다 1월씩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2006년 12월에 현행의 63세로부터 65세로 인상을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피보험자는 1937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나고 만 63세에 노령 퇴직 연금의 수급 자격을 2001년에 취득할 수 있는 예정의 자이다. 1943년 12월 이후에 태어난 피보험자는 65세가 통상의 年金支給開始 연령이 된다.

失業者 및 女性이 대상으로 되는 현행의 60세로부터 65세에의 인상도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2012년에 완료한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被保險者는 1940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나

고 실업자 또는 여성으로 만 60세에 노령퇴직연금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정의 자이다. 1952년 11월 이후에 태어난 피보험자는 전부 65세가 통상의 연금지급개시연령으로 된다.

그러나 年金支給開始年齡 인상 조치는 중도 장애자와 직무 불능 연금가득불능연금 수급자 및 광산 종업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들은 종래대로 60세로부터 조기 노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年金支給開始年齡의 단계적 인상이 노동시장이나 연금 재정 등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연금 보고서에 1997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예측의 여하에 따라서는 위에서 서술한 실시 기간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남기고 있다.

3) 減額年金制度의 導入

(2)의 조치에 따라 年金支給開始年齡이 65세로 인상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年金支給開始年齡의 彈力化는 계속되고 이하와 같은 형으로 기본적으로는 유지되게 되었다. 65세라는 標準的인 年金支給開始年齡을 최대 3년 앞당겨 조기 수급을 희망하는 자는 62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 경우 종래와 달리 2001년부터는 保險數理的인 감액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1개월 당 0.3%씩 감액된다. 예를 들면 1년 앞당긴 수급의 경우 3.6%, 3년 앞당긴 수급의 경우는 10.8%의 감액 연금이 된다.

역으로 年金支給開始年齡을 65세 이후로 늦추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증액연금이 지급되고 1개월에 0.5%, 1년에 6%씩 증액된다. 증액연금은 1992년부터 실시된다.

4) 部分年金制度의 導入

한층 生涯勞動時間을 彈力化하기 위해 새롭게 部分年金制度가 도입

되었다. 就勞時間을 파트 타임의 형으로 3분의 1, 2분의 1 또는 3분의 2로 단축한 경우에는 기타 요건이 채워지면 在職과 마찬가지로 각각 전부 연금의 3분의 2, 2분의 1, 또는 3분의 1의 部分年金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部分 退職 경우의 소득 제한(ELP)은

$ELP(t) = M \cdot EP(t-1) \cdot APA(t)$ 로 산출된다.

$EP(t-1)$ = 부분퇴직한 연도의 1년 전의 퇴직자의 상대적 소득액

APA = 현실의 연금액(즉, 전부연금의 액)

M = 승수

를 나타내고 부분연금이 3분의 1, 2분의 1 또는 3분의 2의 경우 M 은 각각 70, 52.5, 35로 된다. 예를 들면 $EP(t-1) = 1$ (평균적 소득을 얻고 있는 자), 1992년 현재의 $APA = 39.58DM$, 3분의 1의 부분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ELP 는 $70 \times 1 \times 39.58DM = 2,770.60DM$ (월액)으로 되고 이 액까지의 소득이 인정된다. 보험기간 45년으로 평균소득을 얻고 있는 標準年金 受給者의 경우 全部年金은 1,781DM이고 3분의 1의 부분 연금은 593.70DM으로 그 경우의 所得制限은 2,770.60DM(월액)으로 된다. ELP 는 전피보험자의 平均純賃金の 上昇率에 슬라이드하여 매년 인상된다.

部分年金 수급자는 자신이 선택한 시점에서 언제라도 현재 수급하고 있는 部分年金과는 다른 부분연금이던가 또는 全部年金으로 이행할 수 있다. 部分年金은 65세 이후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부분 취로 내지 部分退職과 部分年金을 조합시키는 것에 의해 被保險者의 직업생활로부터 연금생활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年金保險의 財政負擔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5) 女性・家族政策的 改革

財政再建 내지 費用 切感的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회의 개혁에서 주목되는 것이 兒童養育期間의 勘案期間의 擴大와 無償의 介護 期間의 도입이다.

전자는 1985년의 遺族年金・養育期間法에 따라 1986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지만 동법에서는 1인의 어린이당 생후 1년간 어린이를 양육한 자는 전부 1년의 보험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金회의 개정에서는 1992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에 관해서는 2년 연장하여 어린이 1인당 3년의 보험 기간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기간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하나는 兒童教育을 위한 고려기간으로 어린이 1인당 최장 10년의 양육 기간을 이 기간으로 인정하고 保險期間에 산입한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 있어서의 重度介護者の 介護期間을 일정 요건(1주당 최저 10시간의 개호에 해당하는 것 등)하에 고려 기간으로서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에 산입한다.

6) 聯邦補助金の 動態化

年金保險에 대한 聯邦補助금이 1990년에 3억 마르크, 1991년에 23억 마르크로 증액된다. 1992년 이후는 聯邦補助금은 전년의 연금지출의 변동 뿐만 아니라 保險料率의 개정이나 賃金上昇率에 연동하여 증감된다. 이 3자간 상호의 「自動調節裝置」에 따라 보험료 각출자, 연금수급자, 국가의 3자간에 의해 공평한 비용부담이 확보되게 된다.

이 自動調節裝置의 도입 등에 의해 公的年金의 保險料率은 2000년에 20~20.5%로 억제할 수 있고 金회의 개혁에 따라 2000년까지 약 2%의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21.2~22%의 보험료율이 예측되고 있고 절감 효과는 약 3%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7) 年金關係法の 統合과 그 社會法典에의 編入

지금까지 제국 보험법(RVO, 동법은 勞動者 年金保險에 관한 조문을 포함한다), 職員年金保險法(AVG), 제국 광산 종업원 공제 조합법(RKG, 동법은 광업 종업원 연금 보험에 관한 조문을 포함한다) 및 다수의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연금 관계의 법률이 통합되고 연금 보험법은 전부 사회법전 제 6편에 새롭게 규정되게 되었다. 900 이상 있었던 규정이 320으로 정리되고 각 장절의 편성도 정리되고 체계화되었다. 또 일반 가정 주부도 알기 쉽도록 조문도 평면화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第 4 章 國民年金 政策시뮬레이션 分析

第 1 節 模型의 構造 및 前提條件

본 장에서는 世代間 公正한 年金의 實現, 年金財政의 均衡 維持 등을 할 수 있는 適正年金構造의 선택을 위하여 각종 연금관련 변수의 변동에 따라 따라 年金財政收支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政策實驗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성의 변동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며, 出生率이 변동할 때 그 출생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규출생자가 經濟活動人口에 들어가면서 부터이다. 財政方式의 선택은 年金構造의 時間的 經路를 결정한다. 釀出率, 年金給與率, 年金受給年齡 등의 연금구조가 각년도 각세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年金財政方式의 선택에 따른다. 一般經濟에서는 生産이 일어나고 생산된 것은 消費되거나 貯蓄된다. 생산된 것이 分配되는 과정에서 利率과 賃金上昇率이 결정된다.

人口構造, 年金構造, 一般經濟는 연금재정수지를 결정한다. 年金財政收支는 각출료수입, 이식수입, 연금지출액 등이 산정되는 것이다. 年金財政收支는 다시 年金構造에 영향을 미치고 一般經濟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은 相互反應過程에서 각 세대별로 所得의 移轉이 발생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모형에 담아야 適正年金構造의 선택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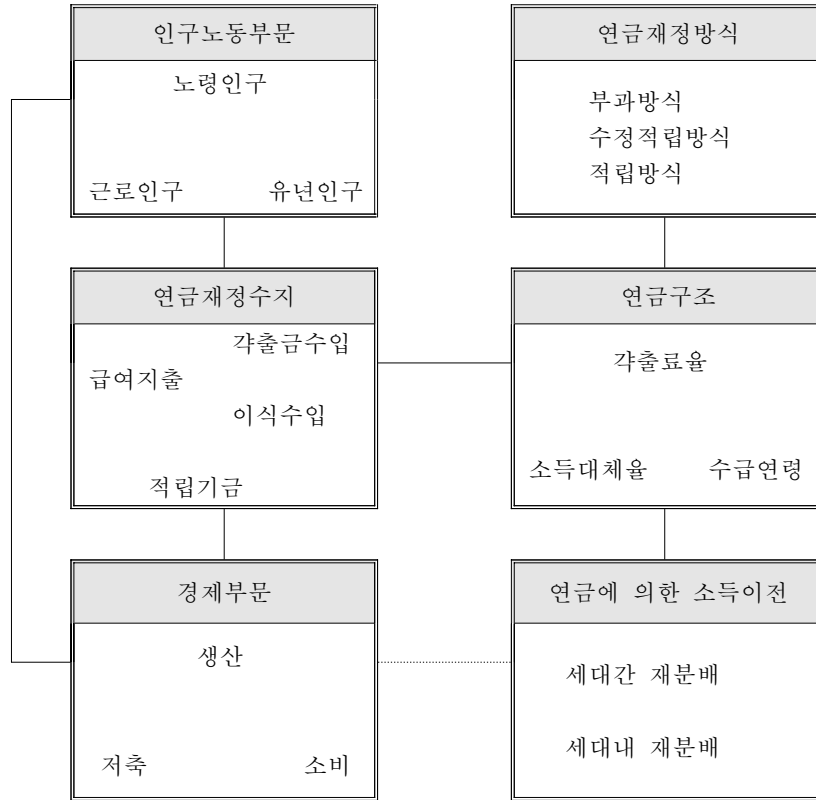
대안의 기초자료를 찾을 수 있다(圖 4-1 참조). 본장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먼저 適正給與의 모색을 위하여 給與水準에 따른 年金財政收支의 變動을 분석하였다. 현행의 조건하에서는 給與水準의 變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다음으로 年金受給年齡의 調整에 따른 年金財政收支의 變動을 살펴보려고 한다, 平均壽命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도자체가 현행과 같이 유지되더라도 年金受給負擔構造는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財政安定化를 위해서는 적절한 年金受給年齡의 조정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年金保險料率의 변동에 따른 年金財政收支의 變動을 살펴보았다. 급여수준이 현행수준의 유지가 불가피하면 年金保險料率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圖 4-1] 政策實驗 構造



넷째, 積立基金의 運用收益率에 따른 年金財政收支의 變動을 살펴 보았다. 積立基金의 運用수익율은 市場利率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좁게는 公共部門과 金融部門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의 變動 등에 따라 수익율이 變動될 수 있고, 넓게는 積立基金의 海外投資與否 등 기금의 運用범위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문제를 政策實驗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19개의 실험을 행하였다(表 4-1 참조).

〈表 4-1〉 政策實驗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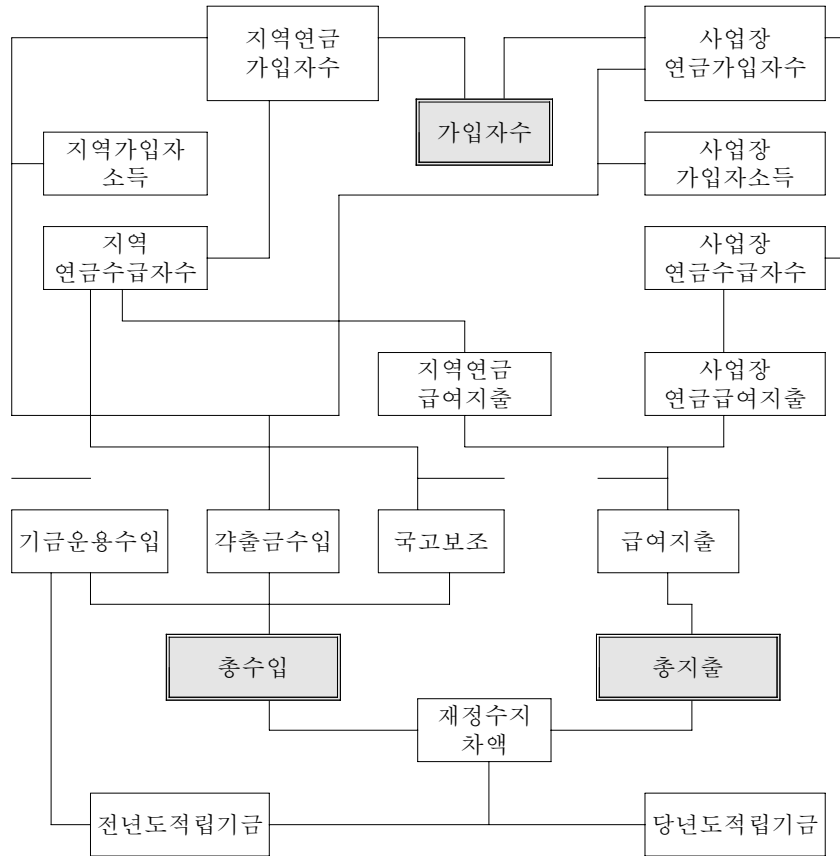
구분	구조조정 방안	비 고
A	급여수준의 조정(2000년)	급여산식 조정 [1.8×(A+B)]
B	"	급여산식 조정 [2.0×(A+0.75×B)]
C	"	급여산식 조정 [1.2×(A+0.75×B)]
D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61세로 조정
E	"	63세로 조정
F	"	65세로 조정
G	연금보험료율의 조정방법	연금보험료 1% 상향 조정(2003년)
H	"	연금보험료 3% 상향 조정(2003년)
I	"	연금보험료 3%씩 5년간격 연차조정
J	"	유족연금·장해연금 보험료 별도부과
K	" 조정시점	각출금수입 = 총지출시점
L	"	총수입 = 총지출 시점
M	"	적립기금 고갈 시점
N	기금운용 수익율의 조정	수익율 1% 포인트 상향조정
O	"	균형재정 이자율
P	가입자별 재정수지	사업장연금만 실시
Q	"	지역연금만 실시
R	부과방식(1988년)	기초연금, 1인1연금 동시가정

第 2 節 模型構造

1. 模型의 흐름圖

위의 실험을 행하기 위한 본모형은 年金部門과 巨視經濟部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 4-2] 國民年金 財政收支 推計模型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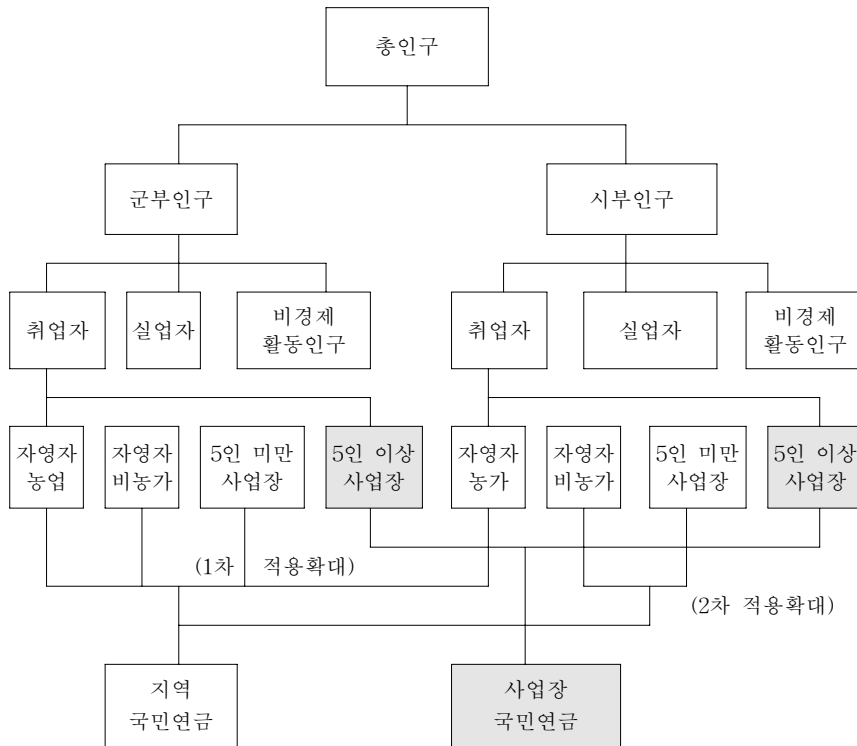


2. 人口 및 加入者數 推計

加入者數는 總人口를 郡部人口와 市部人口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非經濟活動人口, 失業者, 就業者로 구분하고 就業者는 다시 5인 이상 事業場 加入者, 農業自營者, 非農業自營者로 구분하였다.

加入者數 추계와 관련하여서는 郡地域의 農漁民을 포함한 自營者와 都市地域 農漁民을 1995년부터 우선 가입시키고, 1998년부터는 都市地域 自營者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圖 4-3] 加入者數 推計 概念圖



3. 年金財政收入

年金財政收入은 釀出料收入과 積立基金의 利殖收入으로 構成되며 이는 각각 事業場年金과 地域年金으로 나뉘어 산출된다. 즉, 다음의 각 과정이 事業場年金과 地域年金에서 각각 계산되고 최종으로 합산된다. 이의 추계식은 다음과 같다.

가. 釀出料收入 推計式

$$CR(t) = \sum_{j=18}^{59} \{ (MO(t, j) \cdot MW(t, j) + FO(t, j) \cdot FW(t, j)) RC(t) \}$$

CR(t) : t년도 醱出料收入

RC(t) : t년도 醱出料率

MO(t,j) : 사업장 가입자수

FO(t,j) : 지역 가입자수

MW(t,j) : 사업장 평균임금

FW(t,j) : 지역 평균임금

나. 積立基金 利殖收入 推計式

$$IR(t) = FUND(t-1) \cdot RI(t) + (CR(t) - TE(t)) \cdot \{ (1 + RI(t))^{0.5} - 1 \}$$

$$TR(t) = CR(t) + IR(t)$$

$$FFD(t) = TR(t) - TE(t)$$

$$FUND(t) = FUND(t-1) + FFD(t)$$

따라서

$$TR(t) = CR(t) + FUND(t-1) \cdot RI(t) + \\ (CR(t) - TE(t)) \cdot \{ (1 + RI(t))^{0.5} - 1 \}$$

$$FFD(t) = CR(t) + FUND(t-1) \cdot RI(t) + \\ (CR(t) - TE(t)) \cdot \{ (1 + RI(t))^{0.5} - 1 \} - TE(t)$$

$$FUND(t) = FUND(t-1) + FUND(t-1) \cdot RI(t) + CR(t) - \\ TE(t) + (CR(t) - TE(t)) \cdot \{ (1 + RI(t))^{0.5} - 1 \} \\ = FUND(t-1) \cdot (1 + RI(t)) + (CR(t) - TE(t)) \cdot (1 + RI(t))^{0.5}$$

여기서 IR(t) : t년도 積立基金 利殖收入

TR(t) : t년도 財政收入

FFD(t) : t년도 財政收入差
 TE(t) : t년도 財政支出
 FUND(t): t년도 積立基金
 RI(t) : t년도 利殖率

4. 年金財政支出

地域年金部門과 事業場年金部門으로 나누어 추계하되 地域年金은 地域加入者, 地域年金受給者, 地域年金加入者所得 등의 變數를 기초로 하여 收入과 支出變數를 추계하며, 事業場年金도 동일한 구조로 추계하였다. 地域年金에 대한 確率統計는 아직 없으므로 기존의 事業場年金의 統計를 準用한다. 國庫支援중 釀出金補助의 경우 農漁民加入者數와 所得額의 函數로 가정하였다.

年金財政支出은 老齡年金支出, 遺族年金支出, 障害年金支出 및 返還一時金支出로 구성되며, 각각의 受給者數에 1인당 平均給與額을 곱함으로써 산출되고 여기에다 家族手當적 성격의 加給年金額을 가산한다. 본 모형에서는 노령연금수급자수를 과거의 가입자수와 유족연금 수급자수, 장해연금수급자수, 반환일시금수급자수 및 가입기간의 함수로 설정함으로써 총수급기간과 총가입기간간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

가. 遺族年金支出

<1인당 평균 遺族年金給與額의 산정>

遺族年金給與額의 산식은

$$PY = \frac{2.4}{12} \times (A+B) \times (1+0.05n) \times \text{급여율} + \text{가급연금}$$

(n은 20년 초과가입연수)

여기서 給與率은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50%,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60%로서 제도시행 이후 10년까지는 40%를 적용하고, 그이후 20년까지는 40%에서 45%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20년 이후에는 세가지 給與率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가입자에 비해서 고령의 연금수급자의 死亡率이 높으므로 年金制度가 성숙될수록 20년이상 가입의 경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시행 20년 이후(즉, 2008년 이후) 2028년경까지는 50%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20년 초과가입년수 n 의 산정은 제도시행 이후 20년까지는 $n=0$ 이 될 것이며, 20년 이후(2008년경)부터 2028년경까지는 약 4.3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NNY(t) = f(NO A_{(t-1)}, ND_{(t-1)}, NGA_{(t-1)})$$

$$NY(t) = NY(t)\{1 - DY\} + NNY(t)$$

NY : 유족연금수급자수

NOA : 노령연금수급자수

ND : 장해연금수급자수

NGA : 가입자수

遺族年金受給者數는 전년도 가입자수, 노령연금수급자수, 장해연금수급자수의 함수이다. 遺族年金支出額은 1인당 유족연금액과 유족연금수급자수의 곱이다.

$$EY(t) = NY(t) \cdot PY(t)$$

EY(t) : t년도 유족연금지출

NY(t) : t년도 유족연금 수급자수

PY(t) : t년도 1인당평균 유족연금수급액

나. 障害年金支出

〈1인당 平均 障害年金給與額의 정산〉

障害年金給與額의 산식은

$$PD = \frac{2.4}{12} \times (A + B) \times (1 + 0.05n) \times \text{급여율} + \text{가급연금}$$

(n은 20년 초과가입연수)

따라서, 1인당 障害年金受給額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NND(t) = RS \times GA(t-1)$$

$$ND(t) = NND_t + ND_t(1 - dd)$$

$$ED(t) = PD(t) \times ND(t)$$

ED(t) : t년도 장해연금

ND(t) : 장해연금수급자수

PD(t) : 1인당 장해연금액

NND(t) : 신규장해연금수급자수

RS(t) : 장해연금발생을

다. 返還一時金支出

〈1인당 平均 返還一時金〉

返還一時金の 산식은,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는 本人負擔額 × 利率 × 使用者負擔額이고, 1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는 (本人負擔額 + 使用者負擔額) × 利率로서, 탈퇴후 1년 경과시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989년부터 지출이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返還一時金支出〉

$$ELSR(t) = \sum_{j=19}^{59} LSR(t, j) \times BLSR(t, j)$$

ELSR(t) : t년도 반환일시금지출

LSR(t, j) : t년도 j연령계급 返還一時金受給者數

BLSR(t, j) : t년도 j연령계급 1인당평균 返還一時金

라. 老齡年金支出

老齡年金支出은 完全老齡年金支出, 減額老齡年金支出 및 特例老齡年金支出로 구성되며 각 지출에 加給年金額을 가산한다. 完全老齡年金支出은 完全老齡年金受給者數에 1인당 平均完全老齡年金受給額을 곱해서 정산한다.

$$2.4 \times \{ \text{연금수급 전년도 전가입자 평균보수월액(A)} + (\text{연금수급자의 가입전기간 평균보수월액(B)}) \times (1 + 0.05 \times 20\text{년초과가입연수}(n))$$

그런데 本推計에서는 報酬年額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면,

$$POA = \frac{2.4}{12} \times (A + B) \times (1 + 0.05 \times n)$$

$$= 0.2 \times (A + B) \times (1 + 0.05 \times n)$$

A = 연금수급 전년도 전가입자 평균보수연액

B = 연금수급자의 가입전기간 평균보수연액

n = 20년 초과가입년수

$$NNOA(t) = [\text{수급대상연령의 총가입자수} \times \text{가입기간} - (\text{장해연금 수급자수} \times \text{가입기간} + \text{유족연금수급자수} \times \text{가입기간} +$$

반환일시금수급자수×가입기간] /평균가입기간

$$NOA(t) = NNOA(t) + NOA(t-1) \times \{1 - d_t\}$$

$$EOA(t) = POA(t) \times NOA(t)$$

EOA(t) : t년도 노령연금지출

NNOA(t): t년도 신규노령연금 수급자수

NOA(t) : t년도 노령연금 수급자수

d(t) : t년도 노령연금 수급자 탈락율

5. 政府 및 巨視經濟部門

政府部門은 정부지출을 國民總生産의 函數로 설정하였다. 즉, 政府支出이 먼저 결정되고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액만큼 租稅를 조달한다. 均衡財政을 가정하고 있다.

$$G_t = f(Y_t)$$

G_t : 政府支出額

Y : 國民所得額

$$TAX_t = G_t$$

TAX_t : 租稅徵收額

저축은 크게 個人貯蓄과 國民貯蓄으로 구분하였다. 個人貯蓄은 國民總生産(GNP_t)에서 租稅支出額을 감한 다음 연금재정으로 부터의 給與額(TE)을 더하고 年金醜出額(CR)을 감한 것에 總消費를 감한 나머지로 한다.

$$PS_t = GNP_t - TAX_t + TE_t - CR_t - CONSUM_t$$

$$NS_t = GNP_t - G_t - CONSUM_t$$

國民貯蓄은 國民總生産에서 政府消費와 民間消費額을 곱한 것이다. 본모형은 小規模 開放經濟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資本市場은 開放되어 있고 勞動市場은 閉鎖된 경제를 가정하고 있다.

第3節 假定 및 資料

本 模型의 目的은 年金制度의 施行으로 인한 國民經濟의 變化를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다가 보다는 變化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제도시행에 관련된 實證的인 證據에 관심을 두지 않고 年金制度 關聯變數의 代替에 의한 巨視經濟的 反應의 導出에 관심을 가졌다.

1. 年金計劃

老齡年金은 國民年金의 基本年金 算式에 따라 결정된다. 釀出料率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 6%, 1998년이후는 9%가 2050년까지 유지되며, 國民年金制度 加入者는 1988년이후 1992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 199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에는 農漁民年金 도입, 1988년 이후는 全國民의 年金化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2008년부터 完全老齡年金受給者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때 60세이상의 年齡集團중 일정비율만이 연금을 수급하며 그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全老齡人口가 연금을 수급받게 되고 18~59세의 모든 就業者들은 각출을 하게 된다.

2. 시뮬레이션 變數의 設定

本 模型은 政策시뮬레이션實驗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매개변수의 값이 주어질 때, 즉 出生率, 死亡率, 經濟活動參加率의 변화 등 初期條件의 集合이 주어질 때 다른 變數들의 값에 따라 모형이 결정된다. 年金計劃, 人口假定, 經濟과라메터들이 각각 選擇代案別로 실험되고 그 결과가 비교된다.

初期人口는 우리나라의 1987년 經濟企劃院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出生率, 死亡率, 經濟活動參加率, 失業率에 관한 가정은 우리나라의 경험에 기초하였다. 一般經濟과라메터들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에 基礎하고 있다.

本 시뮬레이션모형은 長期的인 變化趨勢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外國과의 貿易을 무시한 一國家模型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은 기준이 되는 가정과 매개변수값을 정하고 개별 政策시뮬레이션에서 必要變數만을 調整하면서 1988~2100년 기간에 걸쳐서 進行되었다. 한편 基本假定은 다음과 같다.

〈人口・勞動部門〉

* 出生率과 死亡率

우리나라의 인구는 통계청의 고위인구추계인구를 사용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그 比率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死亡率은 經濟企劃院에서 만든 1989년의 韓國人의 標準生命表를 사용하였으며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經濟活動參加率과 失業率

우리나라의 經濟活動參加率과 失業率은 『雇傭構造特別調査』 1992년 수치를 기초로 하여 年齡別 및 性別로 계산하였다. 절대적인 비율과

구조상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1987년의 고용구조를 완전고용상태로 가정함).

〈加入者數 推計〉

1990년 統計廳 人口住宅總調查報告書 자료를 이용하여 市部와 郡部の 自營者 비율을 계산하고, 統計廳의 雇傭構造特別調查 자료를 이용하여 市·郡別 自營者중 農漁民數 비율을 추정하였고 事業場 加入者의 경우는 1990년의 總人口에 대한 國民年金 事業場 加入者 年齡別 性別 구성비율을 기초로 하였다. 한편 人口가 部門間에 移動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郡部에서 市部로, 農業분야에서 非農業분야로 人口가 移動한다고 가정하였다. .

3. 시뮬레이션 解法

초기 持續均衡狀態에서의 經濟均衡을 위한 解는 家計, 企業, 政府 행위에 기초한 복잡한 非線形方程式 體系에서 나온다. 解는 Gauss-Seidel 방법으로서 반복기법(iteration techniques)을 취하고 있다.

Algorithm은 內生變數의 부분집합에 대한 假想值를 가지고 시작한다. 內生變數중 일부변수의 초기치는 外生的으로 提供된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解가 그 假想值와 각각 같아질때, 가상치인 解(정해)가 결정된다. 따라서 그 解가 가상치인 內生變數의 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앞의 반복에서 나온 값을 새로운 假想值로 하여 또 다시 解를 구한다.

模型은 人口·勞動部門에서 시작된다. 외생적으로 주어진 總人口(성별, 연령별), 經濟活動參加率, 就業率에 의하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가 구해진다. 人口勞動部門의 就業者數는 企業部門으로 들어가 資本스톡 초기치와 國民總生産額을 결합하여 결정하고, 오일러의 법칙에 따

라 賃金率과 利率을 구한다. 임금율과 이자율은 家計의 消費行爲에 영향을 미쳐서 性別, 연령별 1인당 消費支出額을 결정한다.

한편 賃金率, 利率, 就業者數는 年金部門에 영향을 미치고 연금부문에서 결정된 年金財政收入과 年金財政支出은 貯蓄額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1회의 演算過程이다. 이 연산과정은 초기에 假想值로 總資本스톡과 勤勞所得稅率, 資本所得稅率, 消費稅率의 값이 연립방정식체계에서 산출된 解와 일치할 때 當년도의 해가 결정되고 차기년도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산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一個年度의 解가 산출되기 까지는 4~5회의 反復이 필요하였다.

第 4 節 財政收支 展望

1. 加入者數 推計

먼저 總人口는 1996년에 4,532만명에서 2030년에 5,379만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5,145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加入者數를 보면 事業場加入者는 1996년에 563만명에서 2010년에 598만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509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地域加入者數는 1996년은 郡部の 自營者와 市部の 農漁民이 가입하여 179만명이었다가 1998년에는 市部の 自營者가 가입하여 718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4-2〉 加入者數 展望

(단위: 명)

	총인구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총가입자
1996	45,322,260	5,632,352	1,794,829	7,427,181
2000	46,926,410	5,815,364	7,403,043	13,218,410
2005	48,968,780	5,973,916	7,941,917	13,915,830
2010	50,653,200	5,980,803	8,306,358	14,287,160
2015	51,813,540	5,928,215	8,534,038	14,462,250
2020	52,662,700	5,809,025	8,466,626	14,275,650
2025	53,367,270	5,677,543	8,249,414	13,926,960
2030	53,785,410	5,505,626	7,993,083	13,498,710
2035	53,762,710	5,300,763	7,658,752	12,959,510
2040	53,210,070	5,153,989	7,406,577	12,560,570
2045	52,231,620	5,074,531	7,172,845	12,247,380
2050	51,448,960	5,094,756	7,167,446	12,262,200

1998년이후는 總人口數의 변동에 따라 다소 변동하여 2030년경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나 그이후는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71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總加入者數도 事業場 및 地域加入者의 동향에 따라 변동하여 1996년에는 743만명, 2000년에는 1,322만명, 2030년경에는 1,350만명, 2050년경에는 1,226만명으로 변동할 것이 예상된다.

2. 年金 및 返還一時金受給者 展望

事業場 年金 受給者數의 동향을 보면 返還一時金受給者數는 全國民 年金化가 추진되는 1998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年金受給者數의 경우는 老齡年金 受給者數가 가장 많아 1996년에는 7만 2천명에서 2000년에는 16만명, 2010년에는 51만 9천명, 2030년경에는 184만 5천명, 2050년경에는 2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表 4-3〉 受給者數(事業場)

(단위: 명)

	장해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총수급자
1996	9,704	38,303	72,047	120,054
2000	14,379	67,059	155,436	236,874
2005	20,158	117,620	318,640	456,418
2010	25,563	185,372	519,431	730,367
2015	30,362	259,843	763,784	1,053,989
2020	34,504	340,623	1,128,120	1,503,247
2025	37,974	430,057	1,506,942	1,974,974
2030	40,581	521,349	1,845,140	2,407,069
2035	42,193	592,529	2,107,518	2,742,240
2040	42,624	610,424	2,261,597	2,914,646
2045	42,217	592,850	2,391,623	3,026,689
2050	41,287	566,292	2,452,667	3,060,246

遺族年金 受給者數는 1996년의 3만 8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40년경에는 61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50년경에는 56만 6천명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障害年金 受給者數는 1996년의 1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4만 1천명으로 증가하여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年金受給者數는 2050년경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地域 年金 受給者數의 동향은 事業場 受給者 동향과 거의 비슷하지만 加入者數에 비하여 受給者數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地域加入者의 年齡構造가 사업장가입자의 연령구조보다 高齡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受給者數를 事業場과 地域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事業場과 地域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統合하여 운영하므로 加入과 受給을 事業場·地域別로 나누기 힘들고 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表 4-4〉 受給者數(地域)

(단위: 명)

	장해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총수급자
1996	274	1,489	0	1,763
2000	4,838	26,186	76,781	107,806
2005	12,156	95,733	482,822	590,711
2010	19,428	212,218	904,255	1,135,901
2015	26,237	365,567	1,386,148	1,777,953
2020	32,346	543,863	2,033,464	2,609,673
2025	37,617	675,848	2,600,859	3,314,324
2030	41,775	806,647	3,081,772	3,930,194
2035	44,722	904,104	3,472,667	4,421,493
2040	46,198	919,493	3,642,067	4,607,758
2045	46,601	885,676	3,767,134	4,699,410
2050	46,291	832,988	3,808,658	4,687,937

〈表 4-5〉 關聯指標 變動推移

(단위: 배수)

	총가입자/ 총인구	60세이상 수급자/ 60세 이상 인구	수급자수/ 가입자수(사업장)	수급자수/ 가입자수(전체)
1996	.24104	.01846	.01382	.01048
2000	.41583	.05095	.03009	.01921
2005	.42540	.15124	.06211	.06374
2010	.42775	.24076	.10427	.11503
2015	.42806	.31872	.15590	.17648
2020	.43049	.38332	.22990	.26477
2025	.43123	.41448	.30891	.34317
2030	.43338	.43523	.38400	.41483
2035	.43390	.44087	.44522	.47525
2040	.42957	.42902	.46417	.48562
2045	.42655	.41102	.45835	.47263
2050	.42547	.39600	.42465	.43169

返還一時金 受給者數는 2050년에 32만 5천명선, 老齡年金 受給者數는 2000년에는 7만 7천명에서 2050년경에는 381만명선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遺族年金 受給者數는 점차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83만 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障害年金 受給者數도 점차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4만 6천명으로 증가하여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地域受給者數도 2050년경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支出額 展望

먼저 事業場 年金支出額을 보면, 受給者數의 급증에 따라 給與支出額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의 경우, 1995년에는 老齡年金給與支出額이 返還一時金 支出額보다 적었으나 2000년대초까지는 特例老齡年金 受給者의 급속한 증가로, 그이후는 인구의 老齡化에 기인한 完全年金 受給者數의 증가로 年金支給額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遺族 및 障害給與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경의 각 급여의 구성비를 보면 老齡給與는 81.6%, 遺族給與는 14.7%, 障害給與는 0.6%정도가 되어 老齡給與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6년의 구성비 9.5% : 5.8% : 2.7%와 비교하면 노령연금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返還一時金 給與額의 비율은 1995년에 81.8%에서 2050년경에는 3.1%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추계에서는 國民年金의 加入者를 事業場의 경우는 5인이상 事業場 從事者, 地域의 경우는 自營者로 하되, 1家口에 1명 즉 世帶別 加入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 종사자, 가족종사자,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등은 強制加入對象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年金脫退者가 계속 발생하고 返還一時金의 支給은 계속된다.

地域年金의 年金給與支出額도 위의 事業場과 거의 유사한 동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給與支出額도 많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리운영비는 보험료 수입액의 2%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表 4-6〉 年金保險料率 變動推移

(단위: 배수)

	임금율	이자율	장애인 유족 보험료율	연금 보험료율 (사업장)	연금 보험료율 (지역)	필요 보험료율
1996	7.3908	.0388	.0010	.0600	.0300	.0123
2000	8.1935	.0274	.0014	.0900	.0600	.0087
2005	9.1305	.0158	.0025	.0900	.0900	.0177
2010	10.1039	.0121	.0042	.0900	.0900	.0297
2015	11.1791	.0116	.0065	.0900	.0900	.0475
2020	12.4912	.0112	.0099	.0900	.0900	.0771
2025	13.8976	.0110	.0147	.0900	.0900	.1133
2030	15.4240	.0110	.0208	.0900	.0900	.1540
2035	17.1085	.0110	.0277	.0900	.0900	.1950
2040	18.7943	.0112	.0338	.0900	.0900	.2253
2045	20.5629	.0116	.0382	.0900	.0900	.2479
2050	22.2066	.0122	.0400	.0900	.0900	.2560

〈表 4-7〉 給與支出 變動展望(事業場)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반환일시금	장해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총지출
1996	567	19	66	40	692
2000	320	29	191	73	613
2005	456	44	563	138	1,201
2010	497	59	1,245	251	2,052
2015	567	74	2,449	434	3,524
2020	623	89	4,739	725	6,176
2025	676	105	7,948	1,191	9,920
2030	740	120	11,887	1,852	14,599
2035	779	135	16,032	2,642	19,588
2040	839	148	19,413	3,383	23,784
2045	883	161	22,670	4,028	27,742
2050	965	175	25,223	4,548	30,912

〈表 4-8〉 給與支出 變動展望(地域)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반환일시금	장해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총지출
1996	1	1	0	1	3
2000	54	10	52	27	143
2005	154	24	460	93	731
2010	281	39	1,177	212	1,709
2015	376	56	2,465	417	3,313
2020	419	72	4,983	749	6,223
2025	451	89	8,269	1,251	10,060
2030	501	106	12,151	1,935	14,693
2035	519	121	16,713	2,790	20,143
2040	563	136	20,730	3,737	25,165
2045	571	150	24,638	4,624	29,983
2050	625	164	27,658	5,278	33,725

4. 財政收支 및 積立基金 展望

總支出이 釀出金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이며 總支出이 總收入을 초과하는 赤字發生時點은 2024년경이고 2024년경에 最大 基金規模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積立基金 枯渴은 2039년경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1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國民年金 長期財政 推計結果(1994년 12월)는 총지출이 각출료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0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5년, 기금고갈 시점은 2033년, 최대 적립기금 규모는 1993년 기준으로 342조원이었음.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비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는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人口推計는 통계청이 1991년에 발표한 인구전망 자료 중 高位推計置를 사용한 반면, 타 연구는 中位推計置를 사용하였기 때문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의 出生率과 관련된 인구동향 보고에 의하면 고위추계치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고위추계치를 사용하면 老齡人口에 비하여 勤勞人口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어 年金加入者에 대하여 年金受給者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연금 재정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짐.

둘째, 加入者數 假定에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0년에 사업장가입자는 773만명, 지역가입자는 924만명으로 총가입자는 1,697만명으로 추계하였는데 비하여 본 연구는 동년도에 사업장가입자를 598만명, 지역가입자를 830만명으로 총가입자는 1,429만명으로 추계하였음. 따라서 국민연

總收入은 加入者數의 증가와 所得額의 상승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保險料(醜出金)收入은 1996년도에 3조 4,250억원에서 2050년도에는 22조 8,84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基金運營收入은 1996년에는 4,850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 總支出이 總收入을 초과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2039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면서 미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總支出은 1996년의 7,580억원에서 2050년경에는 65조 87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總支出의 增加率이 總收入 增加率을 크게 앞질러 年金財政의 赤字規模는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表 4-9〉 財政收支 展望(基本)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0,727	11,835	2,111	9,724	82,695	277,747
2010	12,114	13,540	3,997	9,543	130,755	399,387
2015	13,467	15,370	7,101	8,269	175,614	528,295
2020	14,810	17,047	12,690	4,357	206,409	654,180
2025	16,126	18,456	20,297	-1,841	210,056	764,239
2030	17,324	19,398	29,633	-10,235	177,134	849,487
2035	18,503	19,829	40,097	-20,268	95,676	898,191
2040	19,705	19,761	49,338	-29,577	-32,691	913,370
2045	21,111	21,111	58,143	-37,032	-204,987	895,307
2050	22,884	22,884	65,087	-42,203	-405,173	858,330

〈表 4-10〉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基本)

금관리공단 추계가 본 연구보다 가입자수를 많이 잡고 있다는 점이 加入者數가 많을수록 赤字要因이 累增되는 불균형한 현행 체계하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조기에 발생하는 원인이 됨.

마지막으로 利率率, 賃金上昇率 등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의 차이가 재정수지 전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1231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869
2005	5.08141	5.60624	39.17157	.29773	.01771
2010	3.03079	3.38761	32.71305	.32739	.02970
2015	1.89645	2.16439	24.73015	.33242	.04746
2020	1.16708	1.34330	16.26525	.31552	.07712
2025	.79450	.90930	10.34893	.27486	.11328
2030	.58460	.65461	5.97758	.20852	.15395
2035	.46145	.49453	2.38612	.10652	.19504
2040	.39939	.40052	-.66259	-.03579	.22534
2045	.36309	.36309	-3.52554	-.22896	.24788
2050	.35159	.35159	-6.22506	-.47205	.25598

따라서 관련지표의 변동을 보면 總支出에 대한 保險料 收入의 비율인 收支率은 1996년의 452%에서 2000년에 895%로 높아지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35%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된다. 이는 積立基金에 의한 運用收益이 없을 경우 保險料率을 현행 9%에서 2배 이상 상승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總支出에 대한 總收入의 비율인 總收支率도 수지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총지출에 대한 기금의 비율인 基金倍率은 1996년의 21.5배에서 2000년에는 45.4배로 높아지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16.3배, 2030년경에는 6.0배로 줄어들다가 2030년대 후반에는 1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수지를 균형시키는 연금보험료율을 18%로 가정했었을 경우 예상필요기금액은 책임준비금적 성격을 가지는데, 1996년에 84조 원, 2000년에 161조 원, 2010년경에 399조 원, 2030년경에 849조 원, 2050년경에는 858조 원에 이른다. 따라서 必要積立基金에 대한 積立基金의 비율인 積立率은 1996년에 19%, 2015년에는 33.2%이나 재정수지의

적자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대 말에 이르르면 거의 zero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때, 現行의 受給-負擔構造는 必要積立基金의 최대 33.3% 수준밖에 채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修正積立方式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第5節 政策代案別 財政效果 分析

1. 給與水準의 調整

給與水準의 調整은 3가지 방법으로 실험하여 보았다. 먼저 제1방안으로 給與算式上의 A부문(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도 B부문과 마찬가지로 加重值 0.75를 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85.7%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2.4 \times (A + 0.75B) \Rightarrow 1.8 \times (A + B)$$

이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3년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2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4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年金保險料를 1%정도 上向調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表 4-11〉 財政收支 展望(A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71,655
2000	7,924	8,770	831	7,939	40,255	137,621
2005	10,727	11,843	1,922	9,921	83,425	236,608
2010	12,114	13,563	3,571	9,992	133,170	340,077
2015	13,467	15,425	6,259	9,166	181,472	449,591
2020	14,810	17,165	11,068	6,097	219,115	556,353
2025	16,126	18,691	17,604	1,086	234,960	649,409
2030	17,324	19,818	25,626	-5,808	220,960	720,863
2035	18,503	20,525	34,606	-14,082	166,929	760,992
2040	19,705	20,844	42,546	-21,702	74,415	772,206
2045	21,111	21,111	50,104	-28,913	-57,830	754,890
2050	22,884	22,884	56,081	-33,196	-214,969	720,996

〈表 4-12〉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A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22751	.01231
2000	9.53979	10.55734	48.46222	.29251	.00816
2005	5.58035	6.16080	43.39760	.35259	.01613
2010	3.39256	3.79830	37.29407	.39159	.02653
2015	2.15156	2.46434	28.99270	.40364	.04183
2020	1.33818	1.55092	19.79784	.39384	.06726
2025	.91605	1.06172	13.34689	.36181	.09825
2030	.67602	.77335	8.62255	.30652	.13313
2035	.53466	.59309	4.82364	.21936	.16833
2040	.46316	.48992	1.74906	.09637	.19432
2045	.42134	.42134	-1.15418	-.07661	.21360
2050	.40806	.40806	-3.83320	-.29816	.22055

제2방안으로 給與算式에서 2.4배하여 주던 것을 2.0배로 조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83.3%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2.4 \times (A + 0.75B) \Rightarrow 2.0 \times (A + 0.75B)$$

〈表 4-13〉 財政收支 展望(B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69,587
2000	7,924	8,770	822	7,948	40,264	133,632
2005	10,727	11,844	1,891	9,954	83,547	229,752
2010	12,114	13,567	3,500	10,067	133,572	330,191
2015	13,467	15,434	6,119	9,315	182,448	436,474
2020	14,810	17,185	10,797	6,387	221,233	540,049
2025	16,126	18,730	17,155	1,574	239,110	630,271
2030	17,324	19,888	24,958	-5,070	228,264	699,617
2035	18,503	20,641	33,691	-13,051	178,804	738,328
2040	19,705	21,024	41,414	-20,389	92,266	748,892
2045	21,111	21,144	48,765	-27,621	-32,803	731,685
2050	22,884	22,884	54,580	-31,695	-182,735	698,317

〈表 4-14〉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B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23427	.01231
2000	9.64541	10.67423	49.00985	.30131	.00807
2005	5.67320	6.26399	44.18396	.36364	.01586
2010	3.46143	3.87648	38.16605	.40453	.02600
2015	2.20090	2.52236	29.81718	.41800	.04089
2020	1.37169	1.59158	20.48983	.40965	.06561
2025	.94002	1.09177	13.93807	.37938	.09574
2030	.69411	.79684	9.14594	.32627	.12966
2035	.54918	.61264	5.30712	.24217	.16388
2040	.47582	.50767	2.22790	.12320	.18915
2045	.43292	.43359	-.67269	-.04483	.20789
2050	.41928	.41928	-3.34805	-.26168	.21465

이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5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7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4년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3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5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방안에 비하여 재정적자시점과 기금고갈시점은 약 1년정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이다.

제3방안으로 給與算式에서 2.4배하여 주던 것을 1.2배로 조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給與率을 현행수준의 50.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2.4 \times (A + 0.75B) \Rightarrow 1.2 \times (A + 0.75B)$$

〈表 4-15〉 財政收支 展望(C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40,643
2000	7,924	8,770	694	8,075	40,392	77,791
2005	10,727	11,863	1,450	10,412	85,250	133,765
2010	12,114	13,619	2,505	11,114	139,206	191,805
2015	13,467	15,563	4,154	11,408	196,116	252,837
2020	14,810	17,461	7,011	10,449	250,880	311,793
2025	16,126	19,276	10,871	8,405	297,217	362,344
2030	17,324	20,866	15,608	5,258	330,521	399,886
2035	18,503	22,263	20,881	1,383	345,055	418,613
2040	19,705	23,551	25,565	-2,013	342,171	419,947
2045	21,111	24,917	30,008	-5,091	322,005	404,097
2050	22,884	26,535	33,564	-7,029	291,141	377,837

이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3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8년으로 기금고갈없이 지속된다. 2040년 경에는 기금배율은 13.4배, 적립율은 81.5%를 유지하게 되어 연금재정의 안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수급-부담구조가 부담에 비하여 수혜폭이 2배이상 되는 불균형한 구조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表 4-16〉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C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40111	.01231
2000	11.41465	12.63219	58.18309	.51923	.00682
2005	7.39580	8.17861	58.77420	.63731	.01217
2010	4.83553	5.43639	55.56573	.72577	.01861
2015	3.24171	3.74615	47.20778	.77566	.02776
2020	2.11235	2.49032	35.78188	.80464	.04261
2025	1.48340	1.77314	27.34020	.82026	.06067
2030	1.10991	1.33689	21.17639	.82654	.08109
2035	.88612	1.06622	16.52516	.82428	.10157
2040	.77080	.92123	13.38452	.81480	.11676
2045	.70352	.83034	10.73075	.79685	.12793
2050	.68181	.79057	8.67412	.77055	.13200

2.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老齡年金受給年齡을 61세, 63세, 65세 세가지로 변경시켰을 때 年金財政收支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表 4-17〉 加入者 및 受給者 關聯指標의 變動推移(D案)

(단위: 배수)

	가입율	연금수급율	수급자비율 (사업장)	수급자비율 (전체)
1996	.23827	.01061	.00727	.00551
2000	.41086	.03659	.01825	.01273
2005	.42066	.12659	.04433	.05001
2010	.42196	.20857	.08054	.09297
2015	.41983	.28158	.12440	.14301
2020	.42064	.34559	.19304	.21992
2025	.42197	.38362	.27041	.29809
2030	.42244	.41012	.34157	.36640
2035	.42345	.42043	.40372	.42928
2040	.41890	.41210	.42286	.44204
2045	.41823	.39676	.42353	.43772
2050	.41713	.38310	.39089	.39961

먼저 年金受給年齡을 61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財政赤字 發生時點은 2년정도, 基金枯渴 時點은 3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18〉 財政收支 展望(D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1	730	3,180	16,352	84,112
2000	7,924	8,775	804	7,971	40,482	161,846
2005	10,727	11,849	1,897	9,952	83,857	278,943
2010	12,114	13,570	3,551	10,019	133,819	402,516
2015	13,467	15,433	6,162	9,271	182,300	535,104
2020	14,810	17,175	11,167	6,008	219,901	667,900
2025	16,126	18,683	18,446	237	233,338	787,904
2030	17,324	19,753	27,079	-7,326	213,162	886,105
2035	18,503	20,353	37,343	-16,990	147,695	951,067
2040	19,705	20,480	46,142	-25,662	36,746	983,974
2045	21,111	21,111	55,358	-34,247	-119,270	986,020
2050	22,884	22,884	61,904	-39,020	-304,472	969,880

〈表 4-19〉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D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68891	5.35464	22.38906	.19440	.01186
2000	9.85996	10.91789	50.37125	.25013	.00789
2005	5.65342	6.24470	44.19367	.30062	.01592
2010	3.41140	3.82146	37.68409	.33246	.02638
2015	2.18538	2.50443	29.58291	.34068	.04118
2020	1.32627	1.53798	19.69204	.32924	.06786
2025	.87422	1.01284	12.64958	.29615	.10295
2030	.63974	.72945	7.87183	.24056	.14068
2035	.49548	.54503	3.95509	.15529	.18164
2040	.42706	.44385	.79636	.03734	.21074
2045	.38136	.38136	-2.15453	-.12096	.23600
2050	.36967	.36967	-4.91843	-.31393	.24346

年金受給年齡을 63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8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6년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2040년에 基金倍率は 3.5배, 積立率は 13.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4-20〉 加入者 및 受給者 關聯指標의 變動推移(Е案)

(단위: 배수)

	가입율	연금수급율	수급자비율 (사업장)	수급자비율 (전체)
1996	.23340	.00769	.00438	.00332
2000	.40153	.02213	.00881	.00645
2005	.41126	.09428	.02575	.03212
2010	.41099	.16538	.05277	.06325
2015	.40758	.23125	.08807	.10089
2020	.40344	.29054	.14174	.15544
2025	.40387	.33759	.21059	.22647
2030	.40336	.37263	.27630	.29116
2035	.40309	.38923	.33350	.35101
2040	.40087	.38505	.35544	.37169
2045	.40080	.37214	.35681	.37187
2050	.40186	.35969	.33052	.34244

〈表 4-21〉 財政收支 展望(Е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1	721	3,190	16,376	84,137
2000	7,924	8,778	728	8,050	40,690	162,061
2005	10,727	11,864	1,619	10,246	85,144	280,263
2010	12,114	13,606	2,932	10,673	137,543	406,313
2015	13,467	15,513	5,019	10,494	190,717	543,668
2020	14,810	17,346	8,894	8,452	238,219	686,515
2025	16,126	19,008	15,354	3,654	267,202	822,305
2030	17,324	20,275	23,151	-2,877	266,388	939,942
2035	18,503	21,144	32,586	-11,442	226,957	1,031,350
2040	19,705	21,591	41,343	-19,751	143,937	1,092,668
2045	21,111	21,767	50,183	-28,416	20,352	1,129,705
2050	22,884	22,884	56,684	-33,800	-139,426	1,147,847

〈表 4-22〉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E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74890	5.42388	22.70949	.19464	.01171
2000	10.88455	12.05694	55.89050	.25108	.00715
2005	6.62794	7.33024	52.60660	.30380	.01358
2010	4.13115	4.63980	46.90453	.33851	.02179
2015	2.68312	3.09079	37.99752	.35080	.03354
2020	1.66525	1.95032	26.78481	.34700	.05405
2025	1.05029	1.23799	17.40273	.32494	.08569
2030	.74827	.87574	11.50637	.28341	.12028
2035	.56781	.64887	6.96488	.22006	.15850
2040	.47663	.52225	3.48156	.13173	.18882
2045	.42068	.43375	.40557	.01802	.21394
2050	.40372	.40372	-2.45969	-.12147	.22293

年金受給年齡을 65세로 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9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1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1년경 이후로 나타났다. 이 경우 2040년에 基金倍率は 6.5배, 積立率は 20.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4-23〉 受給者數 變動推移(F案: 事業場)

(단위: 배수)

	가입율	연금수급율	수급자비율 (사업장)	수급자비율 (전체)
1996	.22930	.00487	.00228	.00173
2000	.39336	.01260	.00440	.00302
2005	.40194	.06228	.01380	.01771
2010	.40179	.12444	.03413	.04066
2015	.39750	.18433	.06325	.06896
2020	.38910	.23831	.10262	.10572
2025	.38718	.29111	.15892	.16423
2030	.38754	.33396	.22074	.22715
2035	.38463	.35611	.26979	.27875
2040	.38496	.35703	.29758	.30784
2045	.38303	.34578	.29465	.30550
2050	.38811	.33604	.28156	.29030

이렇게 볼 때 年金受給年齡을 60세에서 65세로 최대한 조정하였을 경우에도 年金受給-負擔構造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다, 年金赤字發生時點을 2039년에서 2051년으로 연장시키는 효과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4〉 財政收支 展望(F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2	713	3,198	16,402	84,164
2000	7,924	8,779	691	8,088	40,779	162,154
2005	10,727	11,872	1,390	10,482	85,937	281,075
2010	12,114	13,630	2,471	11,159	140,125	408,944
2015	13,467	15,572	4,169	11,403	196,945	550,002
2020	14,810	17,473	7,053	10,421	252,026	700,541
2025	16,126	19,265	12,437	6,828	294,520	850,045
2030	17,324	20,714	19,759	955	311,412	985,909
2035	18,503	21,825	28,012	-6,187	295,758	1,101,491
2040	19,705	22,581	37,125	-14,544	239,523	1,190,075
2045	21,111	23,127	44,821	-21,694	146,304	1,258,049
2050	22,884	23,522	52,215	-28,692	15,329	1,308,968

〈表 4-25〉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F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79964	5.48270	22.98767	.19488	.01159
2000	11.46096	12.69735	58.97896	.25148	.00679
2005	7.71833	8.54210	61.83192	.30574	.01166
2010	4.90242	5.51579	56.70660	.34265	.01836
2015	3.23021	3.73519	47.23923	.35808	.02786
2020	2.10002	2.47760	35.73550	.35976	.04286
2025	1.29663	1.54903	23.68096	.34648	.06941
2030	.87675	1.04834	15.76074	.31586	.10265
2035	.66052	.77913	10.55819	.26851	.13626
2040	.53078	.60824	6.45183	.20127	.16956
2045	.47101	.51598	3.26418	.11629	.19108
2050	.43828	.45049	.29358	.01171	.20535

3. 年金保險料率의 調整

受給-負擔構造를 適正化함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방법중의 하나는 年金保險料率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年金保險料率의 인상폭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연금보험료율의 조정시점과 관련하여 3가지 방안, 이와는 별개로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보험료부과 방법을 실험하였다.

먼저 年金保險料率의 引上幅과 관련하여 보험료율을 2003년부터 1%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년정도, 기금고갈시점은 3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表 4-26〉 財政收支 展望(G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1,915	13,058	2,157	10,901	86,142	277,666
2010	13,445	14,973	4,111	10,862	140,510	398,809
2015	14,939	17,024	7,228	9,796	192,585	526,966
2020	16,423	18,929	12,819	6,110	231,692	651,994
2025	17,876	20,576	20,421	156	244,833	761,148
2030	19,198	21,756	29,747	-7,990	222,631	845,457
2035	20,501	22,436	40,189	-17,752	153,201	893,240
2040	21,830	22,643	49,414	-26,771	38,269	907,499
2045	23,384	23,384	58,197	-34,813	-122,378	888,614
2050	25,345	25,345	65,133	-39,788	-310,869	850,658

〈表 4-2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G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1231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869
2005	5.52480	6.05471	39.94350	.31024	.01810
2010	3.27087	3.64250	34.18236	.35232	.03057
2015	2.06686	2.35529	26.64500	.36546	.04838
2020	1.28108	1.47659	18.07365	.35536	.07806
2025	.87537	1.00762	11.98934	.32166	.11424
2030	.64539	.73138	7.48417	.26333	.15494
2035	.51012	.55827	3.81202	.17151	.19603
2040	.44178	.45823	.77445	.04217	.22636
2045	.40181	.40181	-2.10281	-.13772	.24888
2050	.38913	.38913	-4.77280	-.36545	.25699

만약 2003년경부터 연금보험료율을 3% 인상조정할 경우에는,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9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7년경 이후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5년정도, 기금고갈시점은 8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表 4-28〉 財政收支 展望(H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급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4,287	15,500	2,248	13,252	93,033	277,503
2010	16,098	17,830	4,337	13,493	159,987	397,656
2015	17,867	20,320	7,480	12,840	226,450	524,314
2020	19,626	22,680	13,076	9,604	282,125	647,634
2025	21,350	24,802	20,666	4,136	314,193	754,987
2030	22,918	26,459	29,972	-3,513	313,371	837,430
2035	24,463	27,638	40,370	-12,732	267,944	883,383
2040	26,040	28,398	49,562	-21,164	179,844	895,816
2045	27,886	28,899	58,301	-29,402	47,615	875,198
2050	30,217	30,217	65,221	-35,004	-116,375	835,369

〈表 4-29〉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H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1231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869
2005	6.35670	6.89627	41.39313	.33525	.01888
2010	3.71166	4.11096	36.88734	.40233	.03233
2015	2.38873	2.71660	30.27445	.43190	.05024
2020	1.50095	1.73446	21.57586	.43562	.07995
2025	1.03310	1.20015	15.20350	.41616	.11616
2030	.76466	.88278	10.45550	.37421	.15693
2035	.60598	.68462	6.63727	.30332	.19803
2040	.52541	.57297	3.62866	.20076	.22839
2045	.47831	.49569	.81672	.05441	.25088
2050	.46331	.46331	-1.78433	-.13931	.25901

또한 2003년경부터 5년 간격으로 연금보험료율을 3%씩 상향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8%까지 인상시킬 경우에는,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2년경이나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6년이나 적립기금의 고갈시점 2050년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적립율은 50% 내외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40년대 말경에 감소경향을 보였다.

〈表 4-30〉 財政收支 展望(I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2,803	13,972	2,194	11,778	88,739	277,600
2010	18,416	20,073	4,295	15,778	156,087	398,178
2015	24,820	27,391	7,787	19,604	243,392	524,112
2020	29,308	32,893	13,714	19,179	336,891	644,533
2025	31,773	36,348	21,494	14,855	420,122	747,347
2030	34,015	39,346	30,825	8,521	476,735	824,368
2035	36,228	41,937	41,125	812	495,968	864,732
2040	38,495	44,258	50,237	-5,979	480,418	871,429
2045	41,161	46,649	58,851	-12,202	430,186	845,007
2050	44,544	49,453	65,715	-16,262	357,784	798,825

한편 관련지표를 보면 수지율과 총수지율이 2050년에는 각각 67.8%, 75.3% 수준을 나타냈다.

〈表 4-31〉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I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1231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869
2005	5.83600	6.36898	40.45064	.31967	.01842
2010	4.28724	4.67308	36.33754	.39200	.03199
2015	3.18745	3.51760	31.25723	.46439	.05236
2020	2.13712	2.39852	24.56556	.52269	.08423
2025	1.47823	1.69112	19.54625	.56215	.12177
2030	1.10349	1.27644	15.46606	.57830	.16312
2035	.88092	1.01974	12.05989	.57355	.20433
2040	.76626	.88098	9.56307	.55130	.23491
2045	.69941	.79267	7.30980	.50909	.25736
2050	.67784	.75254	5.44449	.44789	.26555

〈表 4-32〉 財政收支 展望(J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8,063	8,908	885	8,023	40,339	161,554
2005	11,024	12,147	2,116	10,031	84,002	277,724
2010	12,671	14,133	4,006	10,127	134,364	399,307
2015	14,437	16,419	7,116	9,303	183,416	528,115
2020	16,428	18,815	12,711	6,104	221,397	653,843
2025	18,732	21,331	20,324	1,007	236,903	763,680
2030	21,288	23,819	29,662	-5,843	222,672	848,434
2035	24,115	26,177	40,118	-13,941	168,867	896,768
2040	26,998	28,189	49,339	-21,150	78,416	911,522
2045	29,916	29,916	58,103	-28,038	-50,284	893,182
2050	32,836	32,836	64,989	-32,154	-202,489	855,710

두번째로 遺族年金과 障害年金 급여에 필요한 保險料를 별도로 추가 부과할 경우,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 총

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4년경으로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년정도, 기금고갈 시점은 5년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3〉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J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1231
2000	9.10827	10.06315	45.56948	.24970	.00869
2005	5.20956	5.74033	39.69544	.30246	.01776
2010	3.16281	3.52791	33.53950	.33649	.02977
2015	2.02888	2.30738	25.77540	.34730	.04759
2020	1.29245	1.48022	17.41770	.33861	.07733
2025	.92169	1.04955	11.65621	.31021	.11363
2030	.71769	.80300	7.50696	.26245	.15450
2035	.60111	.65250	4.20925	.18831	.19586
2040	.54720	.57134	1.58934	.08603	.22648
2045	.51489	.51489	-.86544	-.05630	.24932
2050	.50525	.50525	-3.11572	-.23663	.25763

마지막으로 年金保險料率의 引上時點別로 年金財政收支의 變動效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保險料 收入과 總支出이 一致하는 시점부터 총지출에 사용하는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總收入은 總支出 보다 높은 상태에서 유지됨으로 基金倍率과 積立率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40년경의 基金倍率의 경우 5배 정도, 積立率은 29%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4-34〉 財政收支 展望(K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0,727	11,835	2,111	9,724	82,695	277,747
2010	12,114	13,540	3,997	9,543	130,755	399,387
2015	13,467	15,370	7,101	8,269	175,614	528,295
2020	14,810	17,047	12,690	4,357	206,409	654,180
2025	20,405	22,788	20,405	2,383	219,016	764,078
2030	30,279	32,805	30,279	2,527	231,355	847,260
2035	41,528	44,236	41,528	2,708	244,498	889,856
2040	51,516	54,482	51,516	2,966	258,804	894,042
2045	60,830	64,155	60,830	3,325	274,675	860,660
2050	68,129	71,907	68,129	3,778	292,668	803,732

〈表 4-35〉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K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1231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869
2005	5.08141	5.60624	39.17157	.29773	.01771
2010	3.03079	3.38761	32.71305	.32739	.02970
2015	1.89645	2.16439	24.73015	.33242	.04746
2020	1.16708	1.34330	16.26525	.31552	.07712
2025	1.00000	1.11679	10.73360	.28664	.11392
2030	1.00000	1.08344	7.64079	.27306	.15779
2035	1.00000	1.06522	5.88760	.27476	.20369
2040	1.00000	1.05758	5.02378	.28948	.23893
2045	1.00000	1.05465	4.51541	.31914	.26547
2050	1.00000	1.05545	4.29578	.36414	.27652

總收入과 總支出이 일치되는 시점부터 총지출에서 이자수익액을 공제한 액수만큼을 年金保險料로 징수할 경우 2024년 이후에도 年金財政은 均衡을 이루어 積立基金額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된다. 2040년경의 기금배율은 4배수준, 적립율은 23.75 수준에서 재정균형이 유지될 것

으로 보인다. 2050년경에도 基金倍率は 3배 정도, 積立率は 26.2%내외의 상태로 재정균형이 유지된다.

〈表 4-36〉 財政收支 展望(L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0,727	11,835	2,111	9,724	82,695	277,747
2010	12,114	13,540	3,997	9,543	130,755	399,387
2015	13,467	15,370	7,101	8,269	175,614	528,295
2020	14,810	17,047	12,690	4,357	206,409	654,180
2025	17,977	20,314	20,314	0	212,436	764,225
2030	27,716	30,062	30,062	0	212,435	848,164
2035	38,941	41,318	41,318	0	212,435	892,025
2040	48,869	51,326	51,326	0	212,434	897,511
2045	58,078	60,673	60,673	0	212,434	865,428
2050	65,220	67,988	67,988	0	212,434	809,880

〈表 4-3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L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0443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039
2005	5.08141	5.60624	39.17157	.29773	.00842
2010	3.03079	3.38761	32.71305	.32739	.01910
2015	1.89645	2.16439	24.73015	.33242	.03474
2020	1.16708	1.34330	16.26525	.31552	.06353
2025	.88496	1.00000	10.45777	.27798	.10033
2030	.92195	1.00000	7.06651	.25046	.14426
2035	.94248	1.00000	5.14146	.23815	.19065
2040	.95212	1.00000	4.13889	.23669	.22610
2045	.95723	1.00000	3.50132	.24547	.25272
2050	.95928	1.00000	3.12456	.26230	.26384

그러나 基金枯渴 時點부터 총지출에 필요한 年金保險料를 징수할 경우에는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均衡財政으로 운영된다. 이때

必要 保險料率은 거의 27%를 초과하게 되어 그 當時에 勤勞世代에게 상당한 年金保險料 負擔을 넘기는 효과를 가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總支出과 總收入이 일치되는 시점에 均衡保險料率을 적용하는 경우보다는 1.0%정도의 年金保險料 追加負擔이 예상된다.

〈表 4-38〉 財政收支 展望(M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84,060
2000	7,924	8,770	885	7,884	40,201	161,554
2005	10,727	11,835	2,111	9,724	82,695	277,747
2010	12,114	13,540	3,997	9,543	130,755	399,387
2015	13,467	15,370	7,101	8,269	175,614	528,295
2020	14,810	17,047	12,690	4,357	206,409	654,180
2025	16,126	18,456	20,297	-1,841	210,056	764,239
2030	17,324	19,398	29,633	-10,235	177,134	849,487
2035	18,503	19,829	40,097	-20,268	95,676	898,191
2040	49,826	50,170	50,170	0	24,355	912,593
2045	60,548	60,840	60,840	0	24,355	884,347
2050	68,319	68,631	68,631	0	24,355	827,898

〈表 4-39〉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M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19394	.00443
2000	8.95164	9.90646	45.41280	.24884	.00039
2005	5.08141	5.60624	39.17157	.29773	.00842
2010	3.03079	3.38761	32.71305	.32739	.01910
2015	1.89645	2.16439	24.73015	.33242	.03474
2020	1.16708	1.34330	16.26525	.31552	.06353
2025	.79450	.90930	10.34893	.27486	.10027
2030	.58460	.65461	5.97758	.20852	.14317
2035	.46145	.49453	2.38612	.10652	.18858
2040	.99313	1.00000	.48544	.02669	.22797
2045	.99521	1.00000	.40031	.02754	.26109
2050	.99545	1.00000	.35486	.02942	.27445

4. 積立基金 運用收益率의 調整

中·短期的으로 볼때, 積立基金의 運用收益率을 높이는 것은 기금재정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運用수익율을 1% 포인트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2년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자발생 시점은 2년, 기금고갈 시점은 3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N案).

현재의 受給-負擔構造下에서도 年金財政의 均衡을 맞출 수 있는 基金運用 收益率은 얼마인가를 살펴보았다. 만약 기금운용 수익율을 아래의 표와 같이 유지할 경우 總支出이 年金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으로 동일하지만, 높은 기금운용 수입의 유지로 총수입의 총지출에 대한 초과는 계속 유지되어 2050년경에는 기금배율이 11.9배, 적립율은 92%를 달성하게 된다(O案).

다시 말해서 처음에 기본으로 가정된 利率보다 4.5% 포인트 정도의 收益率이 유지되어야 財政收支의 均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表 4-40〉 年金保險料率의 變動推移(N案)

(단위: 배수)

	입금율	이자율	유족·장해 보험료율	연금 보험료율 (사업장)	연금 보험료율 (지역)	균형 보험료율
1996	7.3908	.0488	.0010	.0600	.0300	.0123
2000	8.1935	.0374	.0014	.0900	.0600	.0087
2005	9.1305	.0258	.0025	.0900	.0900	.0177
2010	10.1039	.0221	.0042	.0900	.0900	.0297
2015	11.1791	.0216	.0065	.0900	.0900	.0475
2020	12.4912	.0212	.0099	.0900	.0900	.0771
2025	13.8976	.0210	.0147	.0900	.0900	.1133
2030	15.4240	.0210	.0208	.0900	.0900	.1540
2035	17.1085	.0210	.0277	.0900	.0900	.1950
2040	18.7943	.0212	.0338	.0900	.0900	.2253
2045	20.5629	.0216	.0382	.0900	.0900	.2479
2050	22.2066	.0222	.0400	.0900	.0900	.2560

〈表 4-41〉 財政收支 展望(N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4,057	758	3,299	16,784	84,060
2000	7,924	9,135	885	8,250	41,747	161,554
2005	10,727	12,663	2,111	10,552	87,441	277,747
2010	12,114	14,951	3,997	10,954	141,352	399,387
2015	13,467	17,414	7,101	10,313	195,159	528,295
2020	14,810	19,672	12,690	6,982	237,967	654,180
2025	16,126	21,468	20,297	1,170	256,000	764,239
2030	17,324	22,483	29,633	-7,150	238,511	849,487
2035	18,503	22,512	40,097	-17,585	171,481	898,191
2040	19,705	21,519	49,338	-27,820	53,966	913,370
2045	21,111	21,111	58,143	-37,032	-115,939	895,395
2050	22,884	22,884	65,087	-42,203	-316,125	858,422

〈表 4-42〉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N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35134	22.13885	.19967	.01231
2000	8.95164	10.31944	47.15966	.25841	.00869
2005	5.08141	5.99836	41.41978	.31482	.01771
2010	3.03079	3.74055	35.36411	.35392	.02970
2015	1.89645	2.45232	27.48244	.36941	.04746
2020	1.16708	1.55017	18.75204	.36376	.07712
2025	.79450	1.05766	12.61248	.33497	.11328
2030	.58460	.75872	8.04881	.28077	.15395
2035	.46145	.56144	4.27666	.19092	.19504
2040	.39939	.43614	1.09380	.05908	.22534
2045	.36309	.36309	-1.99402	-.12948	.24788
2050	.35159	.35159	-4.85693	-.36826	.25598

〈表 4-43〉 受給-負擔構造 均衡에 必要한 實質利子率(○案)

	실질이자율(기본)	실질이자율(대안)
1995	.0388	.0731
2000	.0274	.0675
2005	.0158	.0631
2010	.0121	.0595
2015	.0116	.0570
2020	.0112	.0551
2025	.0110	.0543
2030	.0110	.0540
2035	.0110	.0541
2040	.0112	.0550
2045	.0116	.0571
2050	.0122	.0599

〈表 4-44〉 財政收支 展望(○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4,399	812	3,587	17,625	83,898
2000	7,924	10,245	932	9,313	45,400	161,180
2005	10,727	16,109	2,212	13,896	102,730	276,934
2010	12,114	21,661	4,150	17,511	183,085	397,831
2015	13,467	27,930	7,295	20,635	280,594	525,701
2020	14,810	34,607	12,893	21,714	388,018	650,401
2025	16,126	41,447	20,509	20,938	494,471	759,173
2030	17,324	47,975	29,863	18,113	592,235	842,983
2035	18,503	53,610	40,336	13,275	668,100	890,104
2040	19,705	58,769	49,597	9,172	723,264	903,522
2045	21,111	63,810	58,417	5,393	755,995	883,680
2050	22,884	69,216	65,400	3,816	779,286	844,516

〈表 4-45〉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21794	5.41857	21.70794	.21007	.01318
2000	8.50158	10.99113	48.70745	.28167	.00915
2005	4.84887	7.28131	46.43493	.37095	.01856
2010	2.91883	5.21917	44.11314	.46021	.03083
2015	1.84619	3.82889	38.46640	.53375	.04875
2020	1.14871	2.68411	30.09484	.59658	.07835
2025	.78629	2.02091	24.10969	.65133	.11446
2030	.58011	1.60654	19.83203	.70255	.15514
2035	.45872	1.32911	16.56355	.75059	.19620
2040	.39731	1.18493	14.58286	.80049	.22652
2045	.36139	1.09231	12.94134	.85551	.24904
2050	.34992	1.05836	11.91574	.92276	.25720

5. 加入範圍의 變化에 따른 財政收支 變動

이제까지의 추계결과는 1988년 5인이상 事業場 적용, 1995년 農漁村 地域 및 都市地域 農漁民 擴大, 1998년 都市自營者 擴大를 가정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는 加入範圍에 따른 國民年金 財政收支의 變化를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추계결과는 基本案을 가정한 것이었으나, 事業場 年金만 있는 경우와 地域年金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 재정수지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事業場 年金만 있는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6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5년경으로 나타났다.

地域年金만 있는 경우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1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2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34년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地域年金の 財政收支가 事業場年金보다 더 빨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46〉 財政收支 展望(P案: 事業場)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154	3,635	753	2,882	15,904	81,541
2000	5,442	6,210	719	5,491	34,830	134,273
2005	6,269	7,145	1,324	5,820	63,689	206,143
2010	6,967	7,980	2,194	5,786	92,633	279,584
2015	7,640	8,929	3,691	5,238	120,374	357,107
2020	8,368	9,868	6,380	3,489	141,866	434,294
2025	9,134	10,745	10,175	569	150,859	505,419
2030	9,825	11,386	14,918	-3,532	142,104	565,539
2035	10,523	11,809	19,981	-8,172	110,326	609,556
2040	11,240	12,035	24,245	-12,210	57,644	640,484
2045	12,135	12,191	28,276	-16,085	-15,845	660,221
2050	13,187	13,187	31,514	-18,327	-102,795	675,428

〈表 4-4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P案: 事業場)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18942	4.82790	21.12431	.19504	.01432
2000	7.57288	8.64042	48.46571	.25940	.01188
2005	4.73317	5.39466	48.08898	.30896	.01901
2010	3.17531	3.63702	42.21941	.33132	.02834
2015	2.07003	2.41927	32.61544	.33708	.04348
2020	1.31170	1.54682	22.23664	.32666	.06861
2025	.89771	1.05596	14.82606	.29848	.10025
2030	.65858	.76321	9.52553	.25127	.13666
2035	.52668	.59102	5.52170	.18099	.17088
2040	.46362	.49638	2.37757	.09000	.19413
2045	.42916	.43114	-.56035	-.02400	.20971
2050	.41844	.41844	-3.26189	-.15219	.21508

〈表 4-48〉 財政收支 展望(Q案: 地域)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271	276	5	271	400	83,831
2000	2,500	2,576	168	2,408	5,399	164,313
2005	4,516	4,738	794	3,944	19,159	286,735
2010	5,242	5,635	1,826	3,809	38,518	418,941
2015	5,956	6,535	3,465	3,070	55,870	565,076
2020	6,602	7,291	6,427	864	65,257	720,240
2025	7,183	7,846	10,331	-2,486	59,682	878,038
2030	7,718	8,173	15,047	-6,874	34,868	1,035,511
2035	8,225	8,225	20,597	-12,262	-15,889	1,185,742
2040	8,738	8,738	25,715	-16,978	-91,069	1,329,314
2045	9,278	9,278	30,631	-21,353	-190,178	1,469,337
2050	10,035	10,035	34,458	-24,423	-305,915	1,617,583

6. 導入初期부터 完全賦課方式으로 運用되었을 境遇

1988년 국민연금 도입시에 60세 이상 전노인에게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20%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일종의 기초연금적 성격을 띠며 1인 1연금체제가 실시되는 것을 함께 가정하였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율은 초기에는 5.4%로 급여를 충당할 수 있지만, 2015년에는 9%를 초과하고 2050년에는 18%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表 4-49〉 財政收支 展望(R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6,330	6,330	6,330	0	0	141,042
2000	8,402	8,402	8,402	0	0	228,429
2005	11,179	11,179	11,179	0	0	347,741
2010	14,512	14,512	14,512	0	0	469,176
2015	18,847	18,847	18,847	0	0	596,304
2020	25,763	25,763	25,763	0	0	717,892
2025	33,399	33,399	33,399	0	0	823,385
2030	41,020	41,020	41,020	0	0	913,932
2035	49,142	49,142	49,142	0	0	981,854
2040	54,634	54,634	54,634	0	0	1,037,463
2045	59,094	59,094	59,094	0	0	1,088,366
2050	60,687	60,687	60,687	0	0	1,155,222

〈表 4-50〉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R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1.00000	1.00000	.00000	.00000	.05381
2000	1.00000	1.00000	.00000	.00000	.06077
2005	1.00000	1.00000	.00000	.00000	.06811
2010	1.00000	1.00000	.00000	.00000	.07747
2015	1.00000	1.00000	.00000	.00000	.09034
2020	1.00000	1.00000	.00000	.00000	.11321
2025	1.00000	1.00000	.00000	.00000	.13589
2030	1.00000	1.00000	.00000	.00000	.15653
2035	1.00000	1.00000	.00000	.00000	.17753
2040	1.00000	1.00000	.00000	.00000	.18634
2045	1.00000	1.00000	.00000	.00000	.18962
2050	1.00000	1.00000	.00000	.00000	.17988

第6節 政策代案別 世代間 再分配 效果 分析

제5절의 재정효과분석이 국민연금 재정차원의 수지차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본 절의 世代間 再分配 分析은 각 정책대안별 世代間 受益·負擔 構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연금제도 조정이 각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절의 분석은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한 年金保險料를 現價한 액을 負擔額으로 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할때까지 수급하는 年金額을 現價한 액을 受給額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장애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시 지급하는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은 受給額에 포함하지 않고, 老齡年金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事業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受給·負擔構造가 다르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추계하였다.

1. 基本案

事業場加入者의 경우 1993년에 연금을 수급한 사람은 負擔額보다 受給額이 7.0배정도로 높고, 2010년에 연금을 수급하는 세대는 2.1배정도, 2030년경에는 2.7배, 2040년경에는 2.7배, 2050년경에는 2.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에 수급하는 사람이 높은 것은 초기의 노사 합계 年金保險料가 3%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연금보험료가 점차 9%로 상승함에 따라 수익비(수급액/부담액)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2030년경에 수익비가 2.7배로 다소 상승하는 것은 연금급여산정시 감안되는 연금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기금운용수익율의 하락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必要 年金保險料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納入 年金保險料

는 9%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地域加入者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니, 사업장 가입자보다 收益比가 높게 나타난다. 지역가입자로서 최초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200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1.2배, 2010년에는 4.1배, 2030년에는 3.3배, 2050년에는 3.6배로 사업장가입자보다 40~50% 높게 나타났다.

〈表 4-51〉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基本)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4.911	34.068	19.157	2.949	17.302	14.353
2010	22.145	47.217	25.072	6.454	26.536	20.082
2015	30.414	62.637	32.223	10.506	37.462	26.956
2020	37.371	81.634	44.263	15.234	50.924	35.690
2025	42.807	104.151	61.343	20.780	66.982	46.202
2030	47.852	129.935	82.083	25.785	85.520	59.735
2035	52.893	149.451	96.558	29.886	107.631	77.746
2040	58.620	159.673	101.053	33.515	128.504	94.989
2045	64.989	169.539	104.550	37.152	140.537	103.385
2050	71.915	181.123	109.208	41.132	150.127	108.994

2. 年金給與率의 調整

A안에 따라 2000년부터 연금급여율을 85.7%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8배, 2030년에는 2.3배, 2050년에는 2.2배로 기본안보다 낮아진다.

B안의 경우는 A안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금급여율을 현행보다 50%수준으로 낮추는 C안의 경우에는 2010년에는 1.1배, 2030년에는 1.4배, 2050년에는 1.3배로 조정된다.

〈表 4-52〉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A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19.545	11.615	.853	8.166	7.313
2005	14.911	29.201	14.290	2.949	14.830	11.881
2010	22.145	40.472	18.327	6.454	22.745	16.291
2015	30.414	53.689	23.275	10.506	32.110	21.604
2020	37.371	69.972	32.601	15.234	43.649	28.415
2025	42.807	89.272	46.464	20.780	57.413	36.633
2030	47.852	111.372	63.520	25.785	73.302	47.518
2035	52.893	128.100	75.207	29.886	92.255	62.370
2040	58.620	136.862	78.242	33.515	110.146	76.631
2045	64.989	145.319	80.330	37.152	120.460	83.308
2050	71.915	155.247	83.333	41.132	128.679	87.547

〈表 4-53〉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B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19.002	11.072	.853	7.939	7.087
2005	14.911	28.390	13.479	2.949	14.418	11.469
2010	22.145	39.348	17.203	6.454	22.113	15.659
2015	30.414	52.197	21.783	10.506	31.218	20.712
2020	37.371	68.028	30.657	15.234	42.436	27.202
2025	42.807	86.792	43.985	20.780	55.818	35.038
2030	47.852	108.278	60.426	25.785	71.266	45.481
2035	52.893	124.542	71.649	29.886	89.693	59.807
2040	58.620	133.060	74.440	33.515	107.086	73.571
2045	64.989	141.282	76.293	37.152	117.113	79.962
2050	71.915	150.935	79.020	41.132	125.105	83.973

〈表 4-54〉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C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11.401	3.471	.853	4.764	3.911
2005	14.911	17.034	2.123	2.949	8.651	5.702
2010	22.145	23.609	1.464	6.454	13.268	6.814
2015	30.414	31.318	.905	10.506	18.731	8.225
2020	37.371	40.817	3.446	15.234	25.462	10.228
2025	42.807	52.075	9.268	20.780	33.491	12.711
2030	47.852	64.967	17.115	25.785	42.760	16.975
2035	52.893	74.725	21.832	29.886	53.816	23.930
2040	58.620	79.836	21.216	33.515	64.252	30.737
2045	64.989	84.770	19.781	37.152	70.268	33.117
2050	71.915	90.561	18.647	41.132	75.063	33.931

3.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表 4-55〉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D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3.939	10.297	.000	.000	.000
2000	7.930	21.174	13.244	.853	8.847	7.994
2005	14.911	31.634	16.724	2.949	16.066	13.117
2010	22.145	43.845	21.700	6.454	24.640	18.186
2015	30.414	58.163	27.749	10.506	34.786	24.280
2020	37.371	75.803	38.432	15.234	47.287	32.052
2025	42.807	96.711	53.904	20.780	62.197	41.418
2030	47.852	120.653	72.802	25.785	79.411	53.626
2035	52.893	138.776	85.883	29.886	99.943	70.058
2040	58.620	149.512	90.892	33.515	120.327	86.811
2045	64.989	158.409	93.420	37.152	131.310	94.158
2050	71.915	169.085	97.170	41.132	140.149	99.017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연장시켰을 경우에 수익비를 대표적으로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는 1.4배, 2030년 수급자는 1.7배, 2050년 수급자도 1.7배내외로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도 수익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F안).

〈表 4-56〉 국민연금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E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1.794	8.153	.000	.000	.000
2000	7.930	17.916	9.986	.853	7.486	6.633
2005	14.911	26.768	11.857	2.949	13.595	10.646
2010	22.145	37.099	14.954	6.454	20.850	14.395
2015	30.414	49.215	18.801	10.506	29.434	18.928
2020	37.371	64.141	26.770	15.234	40.012	24.777
2025	42.807	81.833	39.025	20.780	52.629	31.849
2030	47.852	102.091	54.239	25.785	67.194	41.409
2035	52.893	117.426	64.532	29.886	84.568	54.682
2040	58.620	128.853	70.233	33.515	103.701	70.185
2045	64.989	135.779	70.790	37.152	112.552	75.400
2050	71.915	144.611	72.697	41.132	119.863	78.731

〈表 4-57〉 국민연금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F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9.650	6.009	.000	.000	.000
2000	7.930	14.659	6.729	.853	6.125	5.272
2005	14.911	21.901	6.990	2.949	11.123	8.174
2010	22.145	30.354	8.209	6.454	17.059	10.604
2015	30.414	40.267	9.853	10.506	24.083	13.577
2020	37.371	52.479	15.108	15.234	32.737	17.503
2025	42.807	66.954	24.147	20.780	43.060	22.280
2030	47.852	83.529	35.677	25.785	54.977	29.192
2035	52.893	96.076	43.182	29.886	69.192	39.306
2040	58.620	105.425	46.805	33.515	84.846	51.331
2045	64.989	112.648	47.659	37.152	93.378	56.226
2050	71.915	119.596	47.681	41.132	99.129	57.997

4. 年金保險料率의 調整

연금보험료율을 조정하였을 경우의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를 보면, 먼저 2003년부터 연금보험료를 3% 인상하여 12%를 부과할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는 1.8배, 2030년 연금수급자는 2.1배, 2050년 연금수급자는 1.9배의 수익비를 보였다(H안).

연금보험료를 연차적으로 18%까지 조정할 경우의 수익비를 보면 2010년에는 1.8배, 2030년에는 1.5배, 2050년에는 1.2배로 급격히 낮아졌다(I안).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였을 경우 수익비를 보면, 2010년 연금수급자의 연금수익비는 2.1배, 2030년은 2.7배, 2050년은 2.5배로 나타나 수익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J안).

〈表 4-58〉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G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5.225	34.055	18.830	3.094	17.296	14.202
2010	23.260	47.166	23.905	6.987	26.507	19.520
2015	32.444	62.535	30.091	11.486	37.402	25.916
2020	40.346	81.469	41.123	16.735	50.822	34.087
2025	46.732	103.908	57.177	22.893	66.827	43.933
2030	52.793	129.600	76.807	28.512	85.301	56.788
2035	58.710	149.036	90.326	33.218	107.334	74.115
2040	65.054	159.203	94.150	37.198	128.127	90.928
2045	72.111	169.016	96.905	41.228	140.104	98.875
2050	79.787	180.542	100.754	45.641	149.646	104.004

〈表 4-59〉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H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5.853	34.031	18.177	3.385	17.284	13.899
2010	25.489	47.062	21.573	8.051	26.450	18.399
2015	36.500	62.332	25.832	13.441	37.281	23.840
2020	46.289	81.139	34.850	19.731	50.618	30.887
2025	54.566	103.422	48.857	27.112	66.516	39.404
2030	62.652	128.930	66.278	33.956	84.861	50.905
2035	70.307	148.205	77.898	39.865	106.736	66.871
2040	77.873	158.262	80.389	44.541	127.370	82.830
2045	86.296	167.968	81.672	49.351	139.236	89.884
2050	95.463	179.377	83.914	54.622	148.681	94.059

〈表 4-60〉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I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5.854	34.046	18.192	2.949	17.291	14.343
2010	26.486	47.100	20.614	6.450	26.471	20.020
2015	41.397	62.256	20.859	11.840	37.236	25.397
2020	57.186	80.782	23.596	19.692	50.396	30.704
2025	71.653	102.616	30.962	30.744	65.999	35.256
2030	86.282	127.579	41.297	41.624	83.975	42.352
2035	100.910	146.331	45.422	51.709	105.390	53.681
2040	115.153	155.982	40.830	61.704	125.538	63.834
2045	128.780	165.299	36.519	71.517	137.026	65.508
2050	142.295	176.299	34.004	80.979	146.133	65.154

〈表 4-61〉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J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4.911	34.063	19.152	2.949	17.299	14.351
2010	22.144	47.200	25.056	6.454	26.526	20.072
2015	30.411	62.594	32.183	10.504	37.437	26.933
2020	37.365	81.543	44.178	15.230	50.868	35.637
2025	42.796	103.972	61.176	20.774	66.867	46.093
2030	47.830	129.602	81.772	25.775	85.302	59.527
2035	52.855	148.903	96.048	29.867	107.238	77.371
2040	58.557	158.876	100.319	33.484	127.863	94.379
2045	64.890	168.447	103.557	37.103	139.632	102.529
2050	71.768	179.692	107.924	41.060	148.942	107.882

연금보험료를 부과방식적으로 부과하는 시점의 조정에 따른 세대간 수익비의 효과를 볼 때, 먼저 각출금 수입이 총지출과 같아지는 시점에 연금보험료를 조정하였 경우 2030년에 수익비는 2.4배, 2050년의 수익비는 1.1배로 조정되고(K안), 총수입이 총지출과 일치되는 시점에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2030년에 2.5배, 2050년에 1.1배로 분석되었다(L안). 또한 적립기금 고갈시점에 조장하였을 경우 2050년에는 1.3배로 조정되었다(M안). 조정시점이 늦어질수록 수익비가 높아지는 것은 조정된 연금보험료의 납입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表 4-62〉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K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4.911	34.068	19.157	2.949	17.302	14.353
2010	22.145	47.217	25.072	6.454	26.536	20.082
2015	30.414	62.637	32.223	10.506	37.462	26.956
2020	37.371	81.634	44.263	15.234	50.924	35.690
2025	43.461	104.109	60.648	21.132	66.955	45.823
2030	53.633	129.536	75.903	28.968	85.258	56.291
2035	70.616	148.213	77.597	39.645	106.742	67.097
2040	95.160	157.254	62.094	53.645	126.560	72.916
2045	127.106	165.641	38.534	71.394	137.308	65.915
2050	164.174	175.530	11.356	92.037	145.496	53.458

〈表 4-63〉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L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4.911	34.068	19.157	2.949	17.302	14.353
2010	22.145	47.217	25.072	6.454	26.536	20.082
2015	30.414	62.637	32.223	10.506	37.462	26.956
2020	37.371	81.634	44.263	15.234	50.924	35.690
2025	42.882	104.146	61.264	20.820	66.979	46.159
2030	51.372	129.692	78.320	27.723	85.361	57.638
2035	66.621	148.493	81.872	37.444	106.943	69.499
2040	89.396	157.637	68.241	50.467	126.868	76.401
2045	119.513	166.120	46.607	67.205	137.705	70.501
2050	154.668	176.110	21.442	86.787	145.976	59.189

〈表 4-64〉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M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4.911	34.068	19.157	2.949	17.302	14.353
2010	22.145	47.217	25.072	6.454	26.536	20.082
2015	30.414	62.637	32.223	10.506	37.462	26.956
2020	37.371	81.634	44.263	15.234	50.924	35.690
2025	42.807	104.151	61.343	20.780	66.982	46.202
2030	47.852	129.935	82.083	25.785	85.520	59.735
2035	52.893	149.451	96.558	29.886	107.631	77.746
2040	62.814	159.390	96.576	35.825	128.277	92.452
2045	95.271	167.627	72.356	53.839	138.953	85.115
2050	133.755	177.333	43.579	75.245	146.989	71.744

5. 基金運用收益率의 調整

기금운용수익율을 조정하였을 경우, 2010년의 수익비는 2.1배, 2030년에는 2.7배, 2050년에는 2.5배로 기본안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금운용수익율을 전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表 4-65〉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N, O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22.802	14.873	.853	9.527	8.675
2005	14.911	34.068	19.157	2.949	17.302	14.353
2010	22.145	47.217	25.072	6.454	26.536	20.082
2015	30.414	62.637	32.223	10.506	37.462	26.956
2020	37.371	81.634	44.263	15.234	50.924	35.690
2025	42.807	104.151	61.343	20.780	66.982	46.202
2030	47.852	129.935	82.083	25.785	85.520	59.735
2035	52.893	149.451	96.558	29.886	107.631	77.746
2040	58.620	159.673	101.053	33.515	128.504	94.989
2045	64.989	169.539	104.550	37.152	140.537	103.385
2050	71.915	181.123	109.208	41.132	150.127	108.994

6. 賦課方式

제도도입초기부터 현재와 같은 수정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201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4.0, 2010년은 2.0, 2030년은 0.97, 2050년은 0.5로 2030년의 연금수급자부터 수익비가 1.0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근로인구에 대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세대로 갈수록 연금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2050년 세대의 경우 자기가 부담한 액의 52.9%만을 연금으로 수급할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부과방식이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여 세대간 재분배를 고르게 하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表 4-66〉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R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급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급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111	19.958	16.847	.000	.000	.000
2000	5.578	22.217	16.639	1.576	9.463	7.888
2005	9.396	24.884	15.487	3.807	17.196	13.389
2010	13.814	27.574	13.760	6.587	26.388	19.801
2015	19.583	30.429	10.846	10.258	37.227	26.970
2020	25.670	33.889	8.218	15.455	50.489	35.034
2025	32.924	37.649	4.725	23.047	66.137	43.090
2030	42.700	41.506	-1.194	31.288	84.005	52.717
2035	55.441	45.854	-9.587	40.546	105.068	64.522
2040	70.547	48.699	-21.848	51.559	124.631	73.071
2045	87.209	51.418	-35.792	63.786	135.470	71.684
2050	103.416	54.679	-48.737	75.940	143.999	68.059

第 5 章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

앞에서의 分析과 같이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는 受給負擔構造의 不均衡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財政이 불안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構造調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表 5-1〉 政策代案別 財政收支 展望

(단위: 년)

대안	내역	총지출> 각출료수입	총지출> 총수입	적립기금 고갈시점
기본	-	2022	2024	2039
A안	급여산식 조정 [1.8 · (A+B)]	2024	2026	2043
B안	급여산식 조정 [2.0 · (A+0.75 · B)]	2025	2027	2044
C안	급여산식 조정 [1.2 · (A+0.75 · B)]	2033	2038	-
D안	61세로 조정	2024	2026	2042
E안	63세로 조정	2026	2028	2046
F안	65세로 조정	2029	2031	2051
G안	연금보험료 1% 상향 조정(2003년)	2024	2026	2042
H안	연금보험료 3% 상향 조정(2003년)	2026	2029	2047
I안	연금보험료 3%씩 5년간격 연차조정	2032	2036	-
J안	유족연금 · 장혜연금보험료 별도부과	2024	2026	2044
K안	각출금수입 = 총지출시점	2022	-	-
L안	총수입 = 총지출시점	2022	-	-
M안	적립기금 고갈시점	2022	2024	-
N안	수익율 1% 포인트 상향조정	2022	2026	2042
O안	균형재정 이자율	2022	-	-
P안	사업장연금만 실시	2024	2026	2045
Q안	지역연금만 실시	2021	2022	2034
R안	부과방식	-	-	-
S안	순소득 기준 (1- t)×[2.4×(A+B)]	2025	2028	2047
T안	H안 + S안	2030	2033	-
U안	보험료 6%의 단계적 조정 + S안	2034	2041	-

앞장의 分析結果를 종합하여 보면 급여산식, 연금수급연령, 연금보험료율, 기금운영수익율의 조정에 따라 年金財政收支 變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연금보험료율 및 연금급여율의 적정조정 방법을 통하여 年金財政은 장기적으로 安定性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構造調整의 時點과 方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世代間·世代內 衡平性의 문제이다.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다수 존재하지만 조정시점과 방법에 따라서 利得을 보는 世代가 있는가 하면 損失을 보는 世代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受給負擔構造로는 국민연금 도입당시의 世代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未來世代에 갈수록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즉, 年金給與率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年金保險料를 적게 부담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바 年金會計的으로 재정수지가 黑字인 초기의 세대가 가장 적은 年金保險料를 부담하고 財政收支가 적자가 되는 시기의 세대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年金保險料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世代間 衡平性의 관점에서 볼때, 國民年金 構造調整은 빠르면 빠를수록 世代間 收益比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年金給與率, 年金保險料率, 年金受給年齡 등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第1節 年金給與의 段階的 調整

國民年金 基本年金 급여는 수급자의 전생애 평균보수, 전가입자의 평균보수, 가입기간에 의하여 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은 國民年金 給與水準과 所得階層別 給與率의 隔差 問題이다. 즉, 年金給與 水準이 현행의 保險料率 수준에 비하여 너무 높게 되어있다는 점, 급여산식상으로는 低所得層의 年金給與率

너무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점, 高所得層과 低所得層간의 年金給與率상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收益比 構造로 말미암아 世代內再分配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國民年金의 給與算式상의 給與率은 40년을 가입하였을 경우, 最低所得階層은 자기소득의 210%, 平均所得階層은 70%, 最高所得階層은 41.1%를 수급하게 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30년이면 最低所得階層은 자기소득의 159%, 平均所得階層은 52.5%, 最高所得階層은 30.8%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소득등급의 경우 加入期間과 상관없이 2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表 5-2〉 所得階層別, 加入期間別 老齡年金額(平均所得 100萬원 假定)
(단위: 천원)

소득기준	20년	30년	40년
220	220(233)	220(350)	220(466)
1000	350	525	700
3600	740	1,110	1,480

註: ()는 급여산식상의 급여율임.

長期的으로는 年金加入期間이 40년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平均所得階層을 기준으로 할 때 夫婦가 모두 연금을 수급할 경우 140%의 年金給與率을 가지게 되므로 70%의 연금급여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年金給與率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最高所得階層(月 360만원 소득자)의 收益比도 1.00을 훨씬 넘는 1.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給與水準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年金의 給與水準은 앞으로의 연금구조를 高給與-高負擔의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低給與-低負擔의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

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급여수준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현행의 年金保險料率 수준으로는 급증하는 給與를 조달하지 못한다는 分析結果에 기초하여 給與水準의 下向 調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 低所得階層의 경우 20년 이상을 가입하여도 연금급여액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60세 이상의 노령계층 뿐만 아니라 早期老齡年金을 수급받을 수 있는 55~59세의 노령계층의 노동참여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低所得階層에 대한 給與率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最低等級所得이 전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最低等級 所得基準을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고급여상한제에 따른 급여역진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이 성립하여야 한다. 즉,

$$0.2 \times (A + 0.75 \cdot B) \times a \leq B \dots\dots\dots (5-1)$$

a: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율

이를 B를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B \geq (0.2 \cdot a \times A) / (1-0.15a) \dots\dots\dots (5-2)$$

따라서 가입기간이 20년이면 B는 A의 23.5%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가입기간이라 할 수 있는 42년이면 B는 A의 61.3% 이상이어야 한다. 즉 최대가입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 급여산식하에서는 B가 A의 61.3% 이상 이어야만 가입기간에 따른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公的年金은 收支相等의 원칙에 따라 受給負擔構造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므로 높은 급여는 次世代로부터 부족액만큼을 보조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年金은 자기가 부담한 액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受給負擔의 차이만큼이 次世代의 負擔으로 전가되게 된다. 따라서 國民年金 給與算式을 世代內·世代間 再分配가 衡平的으로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급여산식상의 全加入者 平均所得月額을 현행의 總額基準에서 각종 租稅 및 社會保險料 負擔을 공제한 액을 基準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給與水準을 下向調整하면서 加入者 所得과 年金受給者의 年金給與를 연계하여 純所得基準 世代間 衡平性을 維持시키는 방안이다.

$$2.4 \times (A + 0.75B) \Rightarrow 2.4 \times (1-t) \times [A + B]$$

우리나라 國民의 租稅 및 社會保險負擔率은 1994년 현재 22.9% 수준이나, 2000년까지는 25%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안은 국민연금산식에서 가입자의 生涯平均報酬月額(B)에 곱하여 주고 있는 상수 0.75를 全加入者平均報酬月額(A)에도 동일하게 곱하여 주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t를 0.25로 할 경우 앞에서 분석한 바 있는 A안(연금급여율을 현행수준의 85.7%수준으로 조정)과 비슷한 대안이다.

이 안(S안)에 따른 재정수지 효과 및 세대간 수익비를 분석하여 보면 각출수입액이 총지출액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5년, 총수입액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시점은 2028년,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47년 경으로 나타났다.

이는 A안 보다는 높은 재정수지 개선효과로서 기본안과 비교할 때 수지적자시점은 4년, 기금고갈시점은 8년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는 1.81배, 2030년의 연금수급자는 1.75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는 1.85배로 거의

1.7~8배사이의 세대간 균형된 수익비를 보였다.

따라서 순소득 기준에 의한 연금급여 지급방법은 세대간 소득 재분배를 고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재정수지효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의 조정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表 5-3〉 財政收支 展望(S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71,469
2000	7,924	8,770	834	7,936	40,252	137,259
2005	10,727	11,843	1,911	9,933	83,435	235,597
2010	12,114	13,565	3,499	10,066	133,400	336,877
2015	13,467	15,434	6,025	9,408	182,507	442,463
2020	14,810	17,194	10,456	6,737	222,440	543,973
2025	16,126	18,767	16,311	2,456	243,553	631,411
2030	17,324	19,987	23,322	-3,334	239,495	698,277
2035	18,503	20,859	30,874	-10,015	202,486	736,406
2040	19,705	21,443	37,267	-15,824	135,517	749,226
2045	21,111	21,881	43,015	-21,134	39,082	738,210
2050	22,884	22,884	47,271	-24,387	-76,701	714,518

〈表 5-4〉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S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22810	.01231
2000	9.50520	10.51906	48.28287	.29326	.00818
2005	5.61470	6.19871	43.67027	.35415	.01603
2010	3.46248	3.87708	38.12844	.39599	.02599
2015	2.23511	2.56149	30.29047	.41248	.04027
2020	1.41642	1.64433	21.27335	.40892	.06354
2025	.98868	1.15057	14.93191	.38573	.09103
2030	.74280	.85703	10.26916	.34298	.12116
2035	.59929	.67562	6.55842	.27496	.15018
2040	.52875	.57538	3.63633	.18088	.17021
2045	.49078	.50868	.90857	.05294	.18338
2050	.48411	.48411	-1.62257	-.10735	.18591

〈表 5-5〉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S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익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익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19.924	11.994	.853	7.967	7.114
2005	14.911	29.449	14.539	2.949	14.315	11.366
2010	22.145	40.156	18.011	6.454	21.599	15.145
2015	30.414	52.321	21.907	10.506	29.949	19.443
2020	37.371	67.048	29.677	15.234	40.030	24.796
2025	42.807	83.964	41.157	20.780	51.682	30.902
2030	47.852	102.934	55.082	25.785	64.841	39.056
2035	52.893	116.131	63.238	29.886	80.046	50.160
2040	58.620	121.842	63.222	33.515	93.850	60.334
2045	64.989	126.803	61.814	37.152	100.600	63.449
2050	71.915	132.935	61.020	41.132	105.456	64.324

한편 調整된 給與算式 구조하에서의 B의 A에 대한 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구하여질 수 있다. 즉,

$$0.2 \cdot (1 - t) \times (A + B) \times \alpha \leq B \dots\dots\dots (5-3)$$

α: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율

이를 B를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B \geq \{ 0.2 \cdot (1-t) \cdot \alpha \times A \} / \{ 1-0.2 \cdot (1-t) \cdot \alpha \} \dots\dots\dots (5-4)$$

t가 0.25인 경우 가입기간이 20년이면, B는 A의 17.6%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가입기간이라 할 수 있는 42년이면 B는 A의 46.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t가 0.3인 경우 가입기간이 20년이면, B는 A의 16.3%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가입기간이라 할 수 있는 42년이면 B는 A의 41.6%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상한에 따른 加入期間의 逆進性을 배제하기 위한 加入者 平均所得에 대한 最低等級所得의 비율은 50%가 되어야 할 것이다.

第2節 年金保險料의 段階的 調整

國民年金 保險料는 1988년에 연금도입시 3%부터 5년간격으로 3%씩 증가시켜 9%까지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 年金保險料 水準이 낮게 책정되어 현세대의 연금급여를 위한 부담이 次世代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 개인이 미리 저축하여둔다는 積立方式에 기초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次世代로 부터 보조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만큼 소가족화로 인한 私的扶養 負擔의 감소속도에 맞추어 공적부양을 위한 年金保險料 負擔을 상승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年金財政의 安定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年金保險料 負擔의 한계를 고려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年金保險料率의 조정시점은 현재의 保險料 賦課 計劃에 따른 調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2003년이후)에 가능할 것이나, 保險料率의 인상은 世代間 所得再分配 比率을 고려하여 適正 積立基金 規模에 대한 검토후 長期的 計劃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分析에 따르면 현행 급여수준에 적합한 年金保險料率은 18%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급여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면 年金保險料率도 이에 상응하여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年金給與率을 앞의 1절과 같이 순소득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조정이 필요한 연금보험요율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앞에서 분석된 연금보험요율 3% 인상안(H안)과 순소득기준 급여지급안(S안)을 결합한 효과(T안)를 보면 세대간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0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3년경,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0년대 중반경으로 나타났다.

2050년경의 기금배율은 4.8배, 적립율은 33.3%로 2025년경에 55.9%까지 올랐던 적립율이 저하함을 알 수 있다.

〈表 5-6〉 財政收支 展望(T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71,469
2000	7,924	8,770	834	7,936	40,252	137,259
2005	14,287	15,508	2,047	13,460	93,774	235,353
2010	16,098	17,855	3,840	14,015	162,631	335,170
2015	17,867	20,385	6,407	13,977	233,334	438,547
2020	19,626	22,829	10,852	11,977	298,120	537,538
2025	21,350	25,117	16,701	8,416	347,589	622,295
2030	22,918	27,057	23,700	3,357	375,510	686,334
2035	24,463	28,685	31,210	-2,525	374,334	721,542
2040	26,040	30,110	37,581	-7,472	347,361	731,431
2045	27,886	31,571	43,292	-11,721	295,879	717,405
2050	30,217	33,312	47,552	-14,240	230,198	690,398

〈表 5-7〉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T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22810	.01231
2000	9.50520	10.51906	48.28287	.29326	.00818
2005	6.97917	7.57542	45.80825	.39844	.01719
2010	4.19262	4.65005	42.35562	.48522	.02862
2015	2.78867	3.18152	36.41775	.53206	.04303
2020	1.80859	2.10367	27.47205	.55460	.06635
2025	1.27837	1.50395	20.81268	.55856	.09387
2030	.96702	1.14166	15.84447	.54712	.12409
2035	.78382	.91908	11.99385	.51880	.15310
2040	.69291	.80119	9.24296	.47491	.17318
2045	.64413	.72925	6.83445	.41243	.18630
2050	.63545	.70054	4.84093	.33343	.18884

또한 세대간 수익비의 변화효과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57배, 203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63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38배로 2030년대이전 연금수급세대의 수익비가 1.5~1.6배로 비슷하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 수급자의 경우 1.38배까지 하락함을 알 수 있다.

〈表 5-8〉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T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익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익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19.924	11.994	.853	7.967	7.114
2005	15.853	29.417	13.564	3.385	14.299	10.915
2010	25.489	40.024	14.535	8.051	21.529	13.478
2015	36.500	52.066	15.566	13.441	29.805	16.364
2020	46.289	66.642	20.353	19.731	39.789	20.058
2025	54.566	83.377	28.811	27.112	51.322	24.211
2030	62.652	102.138	39.487	33.956	64.342	30.386
2035	70.307	115.163	44.856	39.865	79.380	39.515
2040	77.873	120.766	42.892	44.541	93.022	48.481
2045	86.296	125.628	39.332	49.351	99.669	50.318
2050	95.463	131.654	36.191	54.622	104.441	49.819

따라서 위의 대안으로는 재정 안정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年金給與率을 순소득 기준으로 지급하는 안(S안), 年金保險料率을 6%포인트 단계적 상향조정안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효과(U안)를 보면, 總支出이 保險料 收入을 초과하는 시점은 2034년경,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은 2041년경이나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2050년경의 기금배율은 10.6배, 적립율은 76.2%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안에 의한 세대간 수익비 변화효과를 보면 201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50배, 2030년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34배, 2050년의 연금수급자의 수익비는 1.09배로 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만 2050년 수급자 경우도 1.0배를 초과하여 국민연금가입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율 수준은 15% 수준, 급여지급기준을 순소득액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재정수지 효과면에서나 세대간 수익부담 조정 효과 면에서나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5-9〉 財政收支 展望(U案)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가격)

	각출금 수입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수지차액	적립 기금액	필요적립 기금액
1996	3,425	3,910	758	3,152	16,302	71,469
2000	7,924	8,770	834	7,936	40,252	137,259
2005	14,287	15,508	2,047	13,460	93,774	235,353
2010	20,102	21,952	3,994	17,958	174,286	334,893
2015	22,264	25,120	6,797	18,322	265,919	436,647
2020	24,417	28,230	11,260	16,969	354,367	533,260
2025	26,528	31,216	17,109	14,107	430,889	615,433
2030	28,449	33,860	24,101	9,760	489,379	676,706
2035	30,343	36,231	31,573	4,659	522,537	709,170
2040	32,278	38,483	37,921	562	533,989	716,154
2045	34,547	40,952	43,595	-2,643	525,814	699,137
2050	37,417	43,960	47,856	-3,897	509,336	668,834

〈表 5-10〉 年金財政 關聯指標의 變動推移(U案)

(단위: 배수)

	수지율	총수지율	기금배율	적립율	균형 보험료율
1996	4.51698	5.15730	21.50292	.22810	.01231
2000	9.50520	10.51906	48.28287	.29326	.00818
2005	6.97917	7.57542	45.80825	.39844	.01719
2010	5.03297	5.49633	43.63678	.52042	.02980
2015	3.27534	3.69544	39.12029	.60900	.04580
2020	2.16837	2.50697	31.46994	.66453	.06918
2025	1.55053	1.82453	25.18460	.70014	.09674
2030	1.18045	1.40495	20.30570	.72318	.12707
2035	.96106	1.14755	16.55025	.73683	.15608
2040	.85120	1.01482	14.08154	.74563	.17622
2045	.79245	.93936	12.06126	.75209	.18929
2050	.78186	.91857	10.64299	.76153	.19185

〈表 5-11〉 國民年金에 의한 個人別 世代間 受益·負擔(U案)

(단위: 100만원, 1990년 불변가격)

	부담액 (사업장)	수익액 (사업장)	수지차액 (사업장)	부담액 (지역)	수익액 (지역)	수지차액 (지역)
1996	3.641	15.011	11.370	.000	.000	.000
2000	7.930	19.924	11.994	.853	7.967	7.114
2005	15.853	29.417	13.564	3.385	14.299	10.915
2010	26.480	39.983	13.503	8.534	21.507	12.973
2015	40.234	51.905	11.670	15.263	29.713	14.450
2020	52.965	66.330	13.365	23.113	39.604	16.491
2025	64.248	82.885	18.636	32.325	51.021	18.695
2030	75.522	101.436	25.915	41.055	63.901	22.846
2035	86.586	114.281	27.695	48.846	78.773	29.928
2040	97.053	119.762	22.709	55.533	92.250	36.716
2045	107.489	124.515	17.027	61.496	98.787	37.291
2050	118.857	130.425	11.568	68.036	103.467	35.432

第3節 平均壽命 延長에 따른 年金受給年齡의 調整

현행의 年金受給年齡(60세)은 선진국의 수준(65세내외)에 비하여 낮아 年金財政收支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외국에 비하여 5~7년이 짧기 때문에 年金受給期間은 오히려 짧다고 할 수 있다.

〈表 5-12〉 主要國의 平均壽命 推移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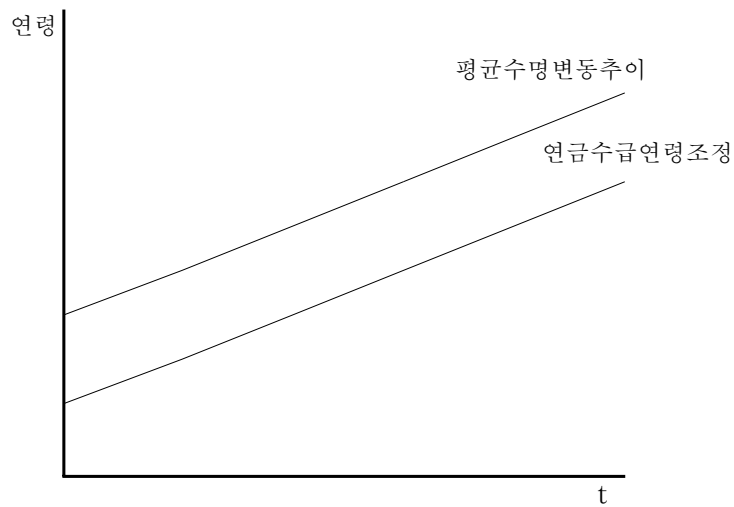
	1970~75	1990~95	1995~2000	2000~05	2020~25
미국	71.4	76.4	77.1	77.7	79.8
일본	73.4	78.8	79.5	79.7	81.4
영국	72.1	76.1	76.9	77.6	79.6
독일	70.7	75.6	76.6	78.2	79.5
한국	61.6	70.7	72.0	73.1	76.7

資料: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편, 『1990 인구의 동향: 일본과 세계인구통계자료집』, 1991.

그러나 우리나라의 平均壽命도 점차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現행의 平均壽命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人口推計에 기초를 하고 있는 본 연구의 年金財政收支도 실제로는 더욱 惡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代案은 장기적인 國民年金 財政安定化를 위한 必要條件일 뿐이지 充分條件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平均壽命의 延長推移에 맞추어 受給年齡도 上向調整하여야 國民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다.

[圖 5-1] 年金受給年齡의 調整方案



한편 年金受給年齡(現행 60세)은 平均수명의 변화 뿐만 아니라, 고령자 취업률, 平均퇴직연령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上向 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高齡者 就業構造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現행의 早期老齡年金制度 및 在職者老齡年金制度를 적절

히 조정하여 年金受給年齡을 55세부터 65세까지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年金受給年齡에 따라 給與率은 자동적으로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1세이상의 연령에 年金수급시에는 一定率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59세이하 퇴직시에는 그반대로 減額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60세퇴직자의 수익비를 100.0%으로 할때, 1세 연령당 6~7%포인트 정도의 收益比의 차이를 보였다.

第 4 節 積立基金의 收益率 提高

연금제도 도입시에는 신규조성자금에 대한 公共部門과 金融部門의 投資金額比率은 대략 50대 50정도 이었으나 公共자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1995년말 현재 公共部門이 65.3%, 福祉部門 4.1%, 金融部門 30.6%로 公共部門의 비중이 커졌다. 1995년도까지 國民年金基金의 평균수익률은 약 12%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公共部門과 金融部門의 수익률의 차는 1993년도의 4.2%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축소되어 1995년도에는 약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公共部門과 동시에 福祉部門에의 投資比率이 높아지면서 基金運營 收益率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즉 公的年金 基金運用의 基本原則으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이 있는데 현재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基金의 收益率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基金이 재분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될 것이다.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은 基金 및 채신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특에 의무예탁하도록 하고 이자율은 공개시장에서 시장

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公共資金管理基本法에서는 年金基金의 管理基金 예탁종료후 예탁원리금의 상환의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預託基金이 무제한적으로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 유입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年金基金의 運營收益率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조성되는 基金을 公共部門, 福祉部門, 金融部門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일정비율만 公共部門에 投資될 수 있도록 하는 長期的 配分方案에 대한 合意가 필요할 것이다.

金融部門에 대한 效率的 投資가 필요하다. 目標 期待收益率이 높아질수록 현금성 자산에서 債券, 株式으로의 자산배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株式 등에 대한 투자가 일정한도내로 규제되고 있으며 海外投資도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金融部門만이라도 높은 수익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國民은 所得 및 餘暇時間의 증가로 건전한 휴식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國民年金의 福祉還元施設로서의 綜合休養施設 제공은 國民年金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社會福祉 需要를 충족시키고, 민간 베이스에 의해 福祉施設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資源의 最適配分이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4년말 부터 民間의 保育施設 및 老人福祉施設 설치 및 정비에 대한 融資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有料 福祉施設, 즉 실버施設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2000년까지 매년 1천억을 융자할 계획이며, 또한 절대적인 保育施設을 조속히 확충하여 保育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장 및 民間保育施設 설치자금을 민간에 매년 1,500억원씩 융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國民年金 基金의 福祉部門投資에 따른 國民年金基金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타 부문 投資收益率보다 3~5%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現行 融資利率을 높여야 하나, 現행의 이자율도 자금수요자에게는 높게 여겨지고 있으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利率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國民年金基金에 의한 福祉事業의 投資를 촉진하면서 國民年金基金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公共部門에 投資되는 收益率 水準과 福祉事業投資의 촉진에 필요한 이자율 격차만큼을 政府가 補填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로 日本의 경우에는 大藏省(우리나라로 말하면 재경원) 資金運用部에 예탁되어 國家財政投融資의 중요한 財源으로써 다른 國家자금과 합하여 一元的으로 관리· 運用되고 있다. 積立金의 증가액 中 일부는 年金福祉事業團에서 실시하는 還元融資事業을 통하여 연금가입자의 厚生福祉增進에 활용하고 있으며, 預託金利는 國債金利 및 市中金利를 고려하여 年金財政의 안정을 배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還元融資利率과 預託金利利率의 差額을 國庫에서 補填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고철기 외,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用方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김용하, 『年金保險의 財政方式과 世代間 所得再分配』, 『社會保障研究』, 제10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4.
- _____, 『年金保險의 適正財政에 관한 研究』, 『經濟學研究』, 제42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4.
- _____, 『韓國 年金保險制度의 適正年金財政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남상우·민재성·장충식,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한국개발연구원, 1990.
- 문형표·김용하, 『農漁民年金 擴大適用方案 및 財政推計에 관한 研究』, 한국개발연구원, 1994.
- 문형표,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方案』, 한국개발연구원, 1995.
- 민재성·김용하, 『年金財政 시뮬레이션과 經濟的 波及效果』, 『季刊 韓國開發研究』, 제13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_____, 『韓國 社會保險制度의 連繫方案』, 한국개발연구원, 1994.
- 민재성·문형표·김원식·김용하, 『國民年金制度의 長期的 財政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와 對策』, 한국개발연구원, 1991.
- 박정식·장충식·정운찬,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營方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989.
- 서상목·민재성·이혜경 외,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的 波及效果』, 한국개발연구원, 1986.
- 연하청·민재성,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한국개발연구원, 1982.
- 유일호, 『공적연금의 적정급여구조에 관한 연구』, 『계간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정경배 외, 『國民年金基金의 財政安定과 基金의 適正運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국민연금관리공단, 『國民年金統計年譜』, 각년도.
- 국민연금관리공단 편, 『社會保障의 課題와 將來』, 1992.
- _____, 『日本の 公的年金制度』, 1988.
- _____, 『獨逸의 公的年金 實務要覽』, 1995.
- _____, 『일본 공적연금의 개요』, 1994.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公務員年金統計』, 각년도.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私學年金統計年譜』, 각년도.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역, 高山憲之 著, 『年金改革의 構想』, 1993.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편, 『年金崩壞의 危機』, 1992.
- 高山憲之, 『年金改革の構想』, 1992.
- 高原宣昭, 『日本 新年金の 實際知識』,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堀勝洋, 『公的年金과 世代間 公平』,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26, No.4. 1991, 봄, pp.401~416.
- 金子能宏·田近榮治, 『厚生年金(舊法)財政의 實態와 評價』,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30, No.1. 1994, 여름, pp.49~61.
- _____, 『厚生年金의 財政과 世代間 負擔: 公平年金의 構想』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30, No.4. 1995, 봄, pp.399~414.
- 大雄一郎·地主重尾, 『福祉社會への選擇』, 勁草書房, 1984.
- 麻生良文, 『公的年金의 世代間 移轉』,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31, No.2. 1995, 가을, pp.135~141.
- 武藤忠義·丸尾直美 住谷馨, 『福祉經濟學』, 青林雙書, 1975.
- 濱本知壽香, 『公的年金의 世代間 隔差에 관한 研究』,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27, No.4. 1992, 봄, pp.431~441.
- 社會保障模型開發研究會 編, 『社會保障의 計量經濟學』, 大藏省印刷局, 1979.
- 社會保障研究所 編, 『リテイクス日本の社會保障』, 1992.
- _____, 『福祉政策の基本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85.

- _____, 『西ドイツの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會, 1989.
- _____, 『年金改革論』, 東京大學出版會, 1982.
- 三浦文夫・小林節夫, 『高齡者社會の社會保障』, 中央法律出版, 1981.
- 年金研究會 編, 『日本とアメリカの年金制度』, 中央法規出版, 1987.
- 有澤廣巳, 『年金制度改革の方向』, 東洋經濟新聞社, 1979.
- 足立正樹 「人口의 高齡化와 獨逸 年金保險의 改正」,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27, No.3, 1991, 겨울, pp.311~318.
- 村上 清, 『年金改革』, 東洋經濟新報社, 1993.
- 總理部社會保障制度審議會事務局 編, 『社會保障統計年譜』, 各년도.
- 塚原康博, 「適正한 老齡年金額의 年齡階層別 分析」, 『季刊 社會保障研究』, Vol.28, No.1, 1992, 여름, pp.45~54.
- 下和田 功, 「獨逸에서의 1992년 公的年金改革의 背景」, 『海外社會保障情報』, No.101, 1992, pp.22~35.
- _____, 「獨逸의 社會保障研究의 今日-年金」, 『海外社會保障情報』, No.111, 1995, pp.47~51.
- 厚生省年金局, 『厚生年金・國民年金 平成元年財政再計算缺課』, 1990.
-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各년도.
- _____, 『厚生統計要覽』, 各년도.
- Atkinson, A. 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 1970, pp.244~263.
- Auerbach, A. J. and L. J. Kotlikoff, "The Efficiency Gains form Social Security Benefit-Tax Linkage," *NBER, W.P.*, No.1645.
- Bodie, Z., "Pensions as Retirement Income Insurance," *NBER, W. P.*, No.2917.
- Borsch-Supan, A., "Pupulation Aging, Social Security Design, and Early Retirement," *Jr.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es*, 148, 1992, pp.533~557.
- Boskin, M. J., "Future Social Security Financing Alternatives and National Sav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 P.*, No.2256.

- Breyer, F., "On the Intergenerational Pareto Efficiency of pay-as-you-go Financed Pension Systems," *Jr.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5, 1989, pp.643~658.
- Breyer, F. and M. Straub, "Welfare Effects of Unfunded Pension Systems when Labor Supply is Endogenous," *Jr. of Public Economics* 50, 1993, pp.77~91.
- Browning, E. K., "Social Insurance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16, 1968, pp.215~237.
- Felderer, B., "Does a Public Pension System Reduce Savings Rates and Birth Rates?," *Jr.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8, 1992, pp.314~325.
- Feldstein, M. and A. Pellechio, "Social Security and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New Microeconomic Evide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1, pp.361~368.
- Feldstein, M. and Andrew Samwick, "Social Security Rules and Marginal Tax Rates," *National Tax Jr.*, Vol.XLV, pp.1~22.
-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ialordnung, 1991.
- Kotlikoff, L. J., J. Shoven, and A. Spivak, "The Impact of Annuity Insurance on Savings and Inequa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050,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1984.
-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ager,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1994, 1994.
- Samuelson, P. A., "An Exact Consumption Loan Model of Interest with or without the Social Contrivance of Mon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6, 1958, pp.457~482.
- Schmaehl, W., The 1992 Reform of Public Pensions in Germany, *Jr. of European Social Policy*, 1993, pp.39~51.
- Schmahl, Winfried, "Financing the Statutory Pensions Insurance Scheme in a United German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 Review*, Vol.44. No.4, 1991, pp.33~45.
- Seidman, L., "A Phase-Down of Social Security: The Transition in a Life Cycle Growth Model," *National Tax Journal*, Vol. XXXIX, pp.97~108.
- Smith, A.,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s Social Insu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9, 1982, pp.97~106.
- Takayama, N., *The Greying of Japan, An Economic Perspective on Public Pension*, 1992.
- Takayama, Noriyuki, "The 1994 Reform Bill for Public Pensions in Japan: its Main Contents and Related Discussio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48. No.1, 1995, pp.45~65.
- Townley, P. G. C., "Public Choice and the Social Insurance Paradox: a note," *Canadian Jr. of Econ.*, Vol.XIV, No.4, pp.712~717.
- Whiteford, Peter, "The Use of Replacement Rat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Benefit System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48. No.2, 1995, pp.3~30.
- Yamada, T., "The Effects of Japanese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on Personal Savings and Elderly Labor Force Behavi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 P.*, No.3113, 1988.
- Zabalza, A. and Piachaud, D., "Social Security and the Elderly: A Simulation of Policy Chang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6, 1981, pp.145~169.
- _____, "Optimum Social Security in a Life-Cycle Growth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16, 1975, pp.539~544.
- _____, "Pension Funds and Financial Series," *NBER, W. P.*, No.3101.
- _____,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Vol.82, 1978, pp.905~926.

_____, "The Optimal Financing of Social Security," *Harvary Instritute of Economic Research*,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_____, "The Optimum Growth Rate for Population",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16, 1975, pp.531 ~538.

附 錄

各國別 年金關聯 統計

1. 韓 國 / 219
2. 日 本 / 227
3. 獨 逸 / 231

1. 韓 國

〈附表 1-1〉 年 齡 別 人 口 比 率

(단위: 세)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1994
전연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0.6	43.5	42.1	38.1	33.8	29.9	25.7	24.4	23.8
15~59	50.6	53.2	52.5	56.3	60.1	63.3	66.7	67.2	67.5
60~64	2.3	1.9	2.1	2.1	2.2	2.5	2.7	3.0	3.2
65~69	1.6	1.5	1.4	1.6	1.7	1.8	2.1	2.2	2.2
70~74	1.2	1.8	1.9	1.9	2.2	2.5	2.9	1.5	1.6
75~79	0.6	0.6	0.6	0.6	0.6	0.8	0.9	0.9	0.9
80세 이상	0.4	0.3	0.4	0.4	0.5	0.5	0.7	0.7	0.7
미 상	0.1	0.0	-	0.0	0.0	0.0	0.0	-	-
60세 이상	6.0	5.2	5.4	5.6	6.1	6.8	7.6	8.4	8.7
65세 이상	3.7	3.3	3.3	3.5	3.9	4.3	5.0	5.4	5.5
70세 이상	2.1	1.8	1.9	1.9	2.2	2.5	2.9	3.2	3.3

資料: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2021년), 1991, 1994.

〈附表 1-2〉 老 齡 化 指 數

(단위: %)

연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1960	14.8	9.2	5.2
1966	11.9	7.6	4.1
1970	12.9	7.8	4.6
1975	14.7	9.1	5.0
1980	17.9	11.4	6.5
1985	22.8	14.5	8.5
1990	29.8	19.4	11.3
1992	32.8	21.1	12.4
1993	34.5	22.0	13.1
1994	36.5	23.2	13.8
1995	38.8	24.5	14.6

註: 노령화지수 = {60, 65, 70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附表 1-3〉 受給率

(단위: %)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985	-	1.3	24.0	0.19
1988	0.07	2.4	24.7	0.55
1989	0.04	2.6	24.9	0.71
1990	0.12	3.0	25.8	0.87
1991	0.21	3.4	26.4	1.07
1992	0.36	3.7	27.1	1.27
1993	0.75	4.3	28.1	1.56
1994	1.05	5.1	29.5	1.93

註: 수급율=수급자수/가입자수(적용인구)

〈附表 1-4〉 各 年 金 加 入 率

(단위: %)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1988	30.1	5.2	0.96	1.02
1989	29.3	5.3	0.97	0.97
1990	29.1	5.3	0.96	0.94
1991	28.8	5.3	0.96	0.91
1992	29.6	5.4	0.98	0.89
1993	30.1	5.5	1.00	0.87
1994	30.6	5.3	0.98	0.85

註: 가입율=가입자수/(자영업자수+피고용자수)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4.

〈附表 1-5〉 公的年金 加入者數 및 受給者數 推移

(단위: 천명)

연도	가입자수				수급자수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¹⁾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1985	-	697	124	135	-	9,078	233	32,369
1988	4,433	767	141	150	3,136	18,084	783	37,136
1989	4,521	810	150	150	1,880	21,204	1,069	37,332
1990	4,652	843	154	150	5,428	25,396	1,345	38,631
1991	4,769	884	159	150	10,004	29,719	1,705	39,582
1992	5,021	922	165	150	18,316	34,333	2,103	40,607
1993	5,160	940	171	150	38,595	40,849	2,674	42,215
1994	5,445	948	175	151	57,273	48,016	3,370	44,415

註: 1)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추정자료임.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각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국방부, 내부자료.

〈附表 1-6〉 名目 · 實質賃金

(단위: 원)

연도	명목임금				실질임금			
	월평균	광공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평 균	광공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1970	17,831	15,032	14,301	24,354	147,364	124,231	118,190	201,273
1975	46,019	40,020	38,378	66,888	187,069	162,683	156,008	271,902
1979	142,665	122,268	119,515	211,619	337,270	289,050	282,541	500,281
1980	176,058	150,328	146,684	275,280	323,042	275,831	269,145	505,101
1985	324,283	275,082	269,652	484,407	422,244	358,180	351,109	630,738
1989	540,611	496,460	491,632	715,512	586,983	539,045	533,803	776,886
1990	642,309	595,850	590,760	826,907	642,309	595,850	590,760	826,907
1991	754,673	696,565	690,310	939,499	690,460	637,297	631,574	859,560
1992	869,284	805,786	798,548	1,079,363	748,737	694,045	687,811	929,684
1993	975,125	886,788	885,398	1,077,344	801,253	728,667	727,525	885,246
1994	1,098,984	1,023,390	1,022,496	1,183,866	849,292	790,873	790,182	914,889

資料: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附表 1-7〉 年度別 全國消費者物價指數 變動推移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비고
물가 지수	100	102.8	105.9	113.4	119.9	130.2 100	109.3	116.3	121.7	129.3	100:기준 년도
변동율 (%)	2.4	2.8	3.0	7.1	5.7	8.6	9.3	6.2	4.8	6.2	전년대비

資料: 통계청, 「유통」, 제02420-9호 (1994. 1.12)

〈附表 1-8〉 國民年金 平均報酬月額

연도	평균보수월액(원)
1988	-
1989	374,485
1990	451,308
1991	540,146
1992	619,882
1993	726,197
1994	819,687
1995	900,024

〈附表 1-9〉 學敎級別 平均報酬月額

(단위: 원)

연도	학교급별						
	유치원	국민 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1975	-	88,100	-	84,500	84,500	79,500	102,100
1980	-	272,007	-	245,846	245,846	239,297	345,422
1985	-	402,951	-	396,367	396,367	415,327	512,198
1986	333,123	534,101	404,859	476,769	476,769	491,428	610,564
1987	355,583	610,450	443,700	550,425	550,425	560,737	698,175
1988	378,512	661,500	482,850	601,750	601,750	624,791	765,500
1989	449,872	761,109	559,673	686,436	686,436	726,782	883,436
1990	522,687	906,932	653,006	815,200	736,653	871,019	1,057,588
1991	600,993	1,042,566	758,959	948,404	867,590	1,003,457	1,218,375
1992	711,962	1,228,978	902,501	1,123,272	1,041,190	1,166,669	1,428,155
1993	755,889	1,301,278	980,524	1,193,540	1,116,162	1,214,194	1,493,554
1994	774,280	1,257,560	957,020	1,262,510	1,197,770	1,153,430	1,118,070

資料: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附表 1-10〉 公務員年金 報酬月額 變動推移

(단위: 원)

직급별 연도	관리관 (1급)	이사관 (2급)	부이사관 (3급)	서기관 (4급)	사무관 (5급)	주사 (6급)	주사보 (7급)	서기 (8급)	서기보 (9급)
1982	(21호) 682,666	(21호) 590,666	(21호) 528,000	(21호) 469,333	(21호) 442,666	(21호) 374,666	(21호) 354,666	(21호) 329,333	(21호) 317,333
1983~84	710,666	618,000	552,666	494,000	465,333	397,333	376,000	351,333	332,000
1985	717,333	624,666	559,333	500,666	472,000	404,000	382,666	358,000	344,000
1986	(6호) 855,000	(6호) 747,000	(7호) 685,500	(8호) 630,000	(9호) 576,000	(9호) 486,000	(10호) 445,500	(12호) 418,500	(15호) 397,500
1987	967,250	855,500	791,750	734,000	677,750	584,000	542,000	514,250	493,250
1988	1,046,750	925,250	856,250	793,250	731,750	629,750	583,250	554,000	530,750
1989	1,204,000	1,062,400	982,400	909,600	827,600	719,200	664,800	630,400	604,000
1990	(15호) 1,541,150	(16호) 1,418,750	(17호) 1,298,050	(18호) 1,179,900	(19호) 1,077,050	(20호) 945,300	(20호) 867,950	(21호) 809,300	(21호) 740,450
1991	1,770,200	1,625,300	1,489,400	1,352,600	1,234,700	1,085,300	991,700	923,300	845,000
1992	2,064,305	1,893,194	1,737,638	1,583,055	1,447,916	1,270,972	1,161,111	1,076,527	984,166
1993	2,155,016	1,976,083	1,813,416	1,651,766	1,510,450	1,325,416	1,210,533	1,122,083	1,025,500
1994	2,326,250	2,129,000	1,961,000	1,787,000	1,634,750	1,434,500	1,308,500	1,211,750	1,109,000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년도

〈附表 1-11〉 軍人年金 平均報酬月額

연도	평균보수월액(원)
1985	393,827
1990	662,222
1991	763,333
1992	867,778
1993	985,556
1994	947,336
1995	999,796

資料: 국방부, 내부자료

〈附表 1-12〉 私學年金 財政收支推移

(단위: 억원)

연도	수 입						지 출			누적 적립금
		국가 부담금	개인 부담금	법인 부담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 ¹⁾		연금 급여	행정비	
1975	46	8	22	14	1	1	2	1	1	45
1980	424	38	136	95	4	151	68	64	4	982
1985	1,397	89	489	236	6	577	442	399	35	4,482
1990	3,023	203	950	547	0	1,311	1,231	1,133	31	11,636
1991	3,434	240	1,104	656	0	1,418	1,415	1,320	31	13,641
1992	4,690	284	1,295	779	61	1,888	2,183	1,821	47	16,142
1993	5,465	324	1,488	892	163	2,219	2,517	2,118	48	19,075
1994	6,352	357	1,623	990	-	2,557	3,710	3,244	54	21,701

註: 1) 기타수입은 적립금 운용수익 및 기타수입임

資料: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附表 1-13〉 公務員年金 財政收支推移

(단위: 억원)

연 도	수 입					지 출			누적 적립금
		정부 부담 ¹⁾	국고 보조	개인 기여금	기타 수입 ²⁾		급여	행정 관리비	
1960	4	1	0	3	0	0	0	0	2
1965	17	5	0	7	4	6	6	0	48
1970	156	52	0	60	44	87	87	1	144
1975	371	134	0	141	97	140	139	1	650
1980	2,236	668	0	850	719	1,103	1,098	4	3,803
1985	5,475	1,614	0	2,094	1,767	2,337	2,310	27	17,830
1990	11,319	3,886	0	4,075	3,357	7,236	7,183	54	35,786
1991	13,867	4,822	142	4,851	4,052	9,177	9,110	68	40,436
1992	16,506	5,716	1,213	5,744	3,833	12,095	12,017	78	44,918
1993	19,855	6,632	2,468	6,559	4,196	16,147	16,067	80	49,003
1994	22,703	7,127	3,072	7,212	5,291	19,351	19,257	94	52,414

註: 1)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포함.

2) 기타수입은 적립금 운용수익 및 기타 잡수입임.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년도

〈附表 1-14〉 軍人年金 財政推移

(단위: 억원)

연도	수 입					지 출			누적 적립금
		국가 부담금	개인 부담금	국고보조 (결손보진)	기타 수입 ¹⁾		급여	관리비	
1962	6	4	2	0	0	5	5	0	2
1963	7	5	2	0	0	7	6	0	3
1964	8	5	2	0	1	7	7	0	3
1965	8	4	2	0	1	6	5	0	3
1970	49	28	19	0	2	35	35	0	17
1975	133	36	38	53	6	94	94	0	38
1980	761	119	141	417	84	660	660	1	417
1985	1,855	275	319	1,214	47	1,711	1,711	0	1,007
1990	4,064	591	596	2,715	162	3,886	3,885	1	1,776
1991	5,009	681	687	3,134	507	4,494	4,494	0	2,291
1992	6,299	797	781	4,019	703	5,776	5,775	1	2,819
1993	6,892	934	887	4,803	268	6,772	6,772	1	2,656
1994	8,257	951	951	5,969	385	7,647	7,646	1	3,047

註: 1) 기타수입은 적립금 운용수익 및 기타 잡수입임.
 資料: 국방부 내부자료

〈附表 1-15〉 總積立基金/給與支出額

(단위: 배)

연 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8	1,754.9	0.76	0.64
1989	205.5	0.73	0.76
1990	53.4	0.56	0.75
1991	31.9	0.51	0.73
1992	24.0	0.37	0.65
1993	25.3	0.25	0.65
1994	21.4	-	0.89

〈附表 1-16〉 給與支出額/保險料徵收額

(단위: 배)

연 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8	0	0.85	0.64
1989	0	0.84	0.76
1990	0.05	0.91	0.75
1991	0.11	0.94	0.73
1992	0.18	0.95	0.65
1993	0.13	1.03	0.65
1994	0.16	-	0.89

〈附表 1-17〉 行政費/總支出

(단위: 배)

연 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1975	-	0.007	0.5	0
1980	-	0.004	0.06	0.001
1985	-	0.012	0.08	0
1988	0	0.008	0.03	0
1990	0.21	0.007	0.03	0
1991	0.26	0.007	0.02	0
1992	0.10	0.006	0.02	0
1993	0.08	0.005	0.02	0
1994	0.13	0.005	0.01	0

〈附表 1-18〉 年金給與支出額/給與支出額

(단위: 배)

연 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1975	-	0.6	0.004	0.4
1980	-	0.6	0.04	0.4
1985	-	0.5	0.09	0.4
1988	0	0.6	0.08	0.3
1990	0.003	0.6	0.09	0.3
1991	0.07	0.6	0.08	0.3
1992	0.10	0.5	0.09	0.3
1993	0.12	0.6	0.08	0.2

資料 :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2. 日本

〈附表 2-1〉 國民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權者數의 推移
(단위: 천명, %)

	피보험자수			연금수급권자수					성속도 (B/A)
	합계 (A)	남자	여자	합계	노령 (B)	통산 노령	장해	모자/ 고아/ 과부	
1961	18,241	7,619	10,622	-	-	-	-	-	-
1965	20,016	8,022	11,994	70	-	-	4	66	-
1970	24,337	9,294	15,043	177	-	-	48	129	-
1975	25,884	9,185	16,699	3,119	2,731	88	134	167	10.55
1980	27,596	9,381	18,215	6,256	5,324	515	237	180	19.29
1985	25,121	8,950	16,171	8,837	6,846	1,500	321	170	27.28

〈附表 2-2〉 國民年金(基礎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者數
(단위: 천명, %)

연도	피보험자수				연금수급자수			성속도 (B/A)
	합계(A)	1호	2호	3호	노령(B)	장해	유족	
1986	63,317	19,514	32,875	10,929	891	123	41	1.41
1987	64,105	19,292	33,515	11,299	1,210	330	101	1.89
1988	64,929	18,727	34,586	11,615	1,497	534	144	2.31
1989	65,678	18,155	35,735	11,788	1,805	760	181	2.75
1990	66,313	17,191	36,778	11,956	2,084	973	207	3.14
1991	68,352	18,173	37,766	12,050	2,928	1,761	224	4.28
1992	68,941	18,149	38,321	12,112	3,917	2,697	239	5.68
1993	69,276	18,263	38,499	12,163	4,982	3,712	250	7.19

〈附表 2-3〉 厚生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權者數의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피보험자수			연금수급권자수						성숙도 (B/A)
	합계 (A)	남자	여자	합계	노령 (B)	통산 노령	장해	유족	통산 유족	
1942	3,463	3,463	0	-	-	-	-	-	-	-
1945	4,326	3,288	1,038	-	-	-	-	-	-	-
1950	6,113	4,585	1,528	49	-	-	10	39	-	-
1955	8,237	6,017	2,220	163	3	-	60	100	-	0.04
1960	13,240	9,240	4,000	302	41	-	84	177	-	0.31
1965	18,418	12,430	5,988	568	196	10	76	286	-	1.06
1970	22,260	14,930	7,329	1,188	520	90	95	482	-	2.34
1975	23,649	16,221	7,427	2,368	1,031	475	126	736	-	4.36
1980	25,239	17,253	7,987	4,618	2,018	1,342	182	1,026	49	7.99
1985	27,068	18,344	8,573	7,246	3,267	2,066	265	1,482	165	12.07

〈附表 2-4〉 厚生年金의 被保險者數 및 年金受給者數

(단위: 천명, %)

연도	피보험자수 (A)	연금수급자수					성숙도 (B/A)
		합계	노령(B)	통산노령	장해	유족	
1986	26,994	8,003	3,716	2,217	287	1,783	13.77
1987	27,676	8,642	4,165	2,273	299	1,904	15.05
1988	28,769	9,279	4,222	2,724	307	2,026	14.68
1989	29,921	9,919	4,507	2,947	320	2,145	15.06
1990	30,997	10,519	4,760	3,173	327	2,260	15.36
1991	31,959	11,092	4,993	3,389	336	2,375	15.62
1992	32,493	11,803	5,293	3,666	344	2,500	16.29
1993	32,651	12,535	5,598	3,960	352	2,625	17.14
1994	32,740	13,151	5,854	4,343	357	2,765	17.90

〈附表 2-5〉 厚生年金 老齡年金受給權者數 및 平均年金月額의 推移

연도	노령연금수급권자수 (천인)	평균연금월액 (천엔)
1961	60	15
1973	794	38
1974	910	45
1975	1,056	56
1976	1,262	69
1977	1,468	77
1978	1,676	83
1979	1,874	87
1980	2,063	101
1981	2,279	109
1982	2,508	114
1983	2,787	114
1984	3,047	117
1985	3,342	122
1986	3,651	130
1987	3,938	132
1988	4,222	132
1990	4,711	142
1991	4,933	150
1992	5,220	156
1993	5,514	160
1994	5,823	169

〈附表 2-6〉 1人當 平均賃金 推移

(단위: 엔)

연도	전체	남자	여자
1960	21,747	26,116	11,267
1965	36,752	43,796	21,110
1970	70,240	83,374	40,200
1975	163,229	186,847	95,419
1980	238,175	284,088	151,874
1985	285,371	346,714	177,363
1986	295,099	357,485	184,351
1987	301,520	365,362	188,356
1988	308,974	376,737	190,909

資料: 勞働省, 『매월근로통계』, 각년도.

〈附表 2-7〉 消費者物價上昇率 및 賃金上昇率 推移

(단위: %)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임금상승율	표준보수상승율 (후생연금)	자금운용부 예탁금리
1965	6.7	9.9	21.1	6.5
1970	7.6	15.5	21.2	6.5
1971	6.0	14.7	15.4	6.5
1972	4.6	15.6	15.1	6.5
1973	11.8	18.8	18.3	6.2
1974	24.3	24.7	26.2	7.5
1975	11.9	18.1	14.8	8.0
1976	9.3	12.5	14.4	7.5
1977	8.1	9.2	11.3	7.5
1978	3.8	7.1	6.7	6.5
1979	3.6	5.8	5.6	6.1
1980	8.0	5.7	7.2	8.0
1981	4.9	5.2	6.9	8.0
1982	2.7	5.0	4.8	7.3
1983	1.9	3.3	3.5	7.3
1984	2.2	3.3	3.2	7.1
1985	2.1	3.2	4.2	7.1
1986	0.6	2.9	3.7	6.1
1987	0.1	2.0	-	5.2
1988	0.7	3.5	-	5.0
1989	2.3	3.1	-	-
1990	3.1	3.8	-	-
1991	3.3	3.4	-	-
1992	1.6	2.1	-	-
1993	1.3	1.5	-	-
1994	0.7	-	-	-

3. 獨逸

〈附表 3-1〉 年金保險 加入者數

연도	강제가입				입의가입		
	총가입자	노동자 연금	직원 연금	광부 연금	소계	노동자 연금	직원 연금
1982	19,972	10,472	9,258	242	596	280	316
1983	20,068	10,445	9,382	241	574	271	303
1984	20,104	10,438	9,436	230	939	428	511
1985	20,483	10,524	9,730	228	897	410	487
1986	21,028	10,664	10,139	225	871	397	474
1987	21,248	10,636	10,395	217	861	391	470
1988	21,479	10,684	10,588	208	854	386	467
1989	21,758	10,767	10,795	196	837	374	463
1990	22,040	10,856	10,856	186	799	353	446
1991	21,478	10,664	10,664	175	782	341	441

〈附表 3-2〉 勞働者 및 職員年金保險의 年金受給者數 및 年金支出 推移

연도	총계	연금수급자수			연금지출		
		被保險者 年金	寡婦(寡夫) 年金	遺兒年金	노동자 연금	직원 연금	합계
1949	2,886,138	1,743,400	738,138	404,600	1,407	591	1,998
1950	3,906,959	2,213,522	988,269	705,168	1,995	780	2,775
1955	5,998,131	3,250,504	1,632,398	1,115,229	4,027	1,917	5,944
1960	7,213,815	4,067,244	2,488,042	658,529	9,366	4,839	14,205
1965	7,993,149	4,759,862	2,809,011	424,276	14,428	8,137	22,565
1970	9,275,799	5,724,081	3,115,885	435,833	24,414	13,979	38,393
1975	10,820,262	6,949,966	3,380,097	490,199	45,680	27,152	72,832
1980	12,262,194	8,039,710	3,693,621	528,863	65,821	43,551	109,372
1981	12,457,793	8,202,815	3,733,025	521,953	68,701	46,357	115,058
1982	12,639,592	8,367,417	3,764,105	508,070	72,675	50,052	122,727
1983	12,813,158	8,532,158	3,788,945	492,055	75,013	52,756	127,769
1984	12,997,414	8,716,165	3,805,295	475,954	78,655	56,663	135,318
1985	13,198,479	8,912,396	3,825,441	460,642	81,160	59,847	141,007
1986	13,298,508	9,026,642	3,838,588	433,278	83,492	62,745	146,237
1987	13,495,361	9,219,515	3,868,058	407,788	86,777	66,279	153,056
1988	13,692,884	9,415,685	3,894,704	382,495	90,394	69,951	160,345
1989	14,010,785	9,699,410	3,950,936	360,439	94,175	73,735	167,910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oyalordnung, 1991, p.146.

〈附表 3-3〉 平均壽命

연도	남자	여자
1901~1910	44.82	48.33
1924~1926	55.97	58.82
1932~1934	59.86	62.91
1949~1951	64.56	68.48
1960~1962	66.86	72.39
1970~1972	67.41	73.83
1980~1982	70.18	76.85
1984~1986	74.98	80.34
1985~1987	75.15	80.53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alordnung, 1991, p.199.

〈附表 3-4〉 平均 年金受給 開始年齡

연도	남자	여자	연도	남자	여자
1957	59.9	58.6	1975	61.2	61.2
1960	59.5	58.8	1976	60.8	61.0
1961	59.8	59.2	1977	60.3	60.5
1962	60.2	59.3	1978	59.7	60.3
1963	60.8	60.1	1979	59.1	60.2
1964	61.2	60.5	1980	58.8	59.8
1965	61.4	60.7	1981	58.4	59.5
1966	61.7	61.2	1982	58.6	59.5
1967	61.6	61.1	1983	58.7	59.6
1968	61.4	61.0	1984	58.9	60.0
1969	61.5	61.2	1985	58.9	60.4
1970	61.6	61.3	1986	59.0	61.3
1971	61.5	61.3	1987	59.1	61.7
1972	61.6	61.3	1988	59.3	61.8
1973	62.2	61.6	1989	59.4	61.7
1974	61.6	61.4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alordnung, 1991, p.147.

〈附表 3-5〉 住民人口 및 扶養指數(1960~2030)

(단위: 백만명, %)

연도	주민수				아동 부양비율 (A/B)	노인 부양비율 (C/B)	아동·노인 부양비율 (A+C)/B
	총수	20세 미만 (A)	20~59세 (B)	60세 이상 (C)			
1960	55,257	15,947	30,336	8,974	52.6	29.6	82.1
1965	58,588	16,720	31,414	10,454	53.2	33.3	86.5
1970	61,195	18,227	31,326	11,642	58.2	37.2	95.3
1975	61,992	17,944	31,621	12,427	56.7	39.3	96.0
1980	61,439	16,521	33,114	11,804	49.9	35.6	85.5
1985	61,049	14,366	34,312	12,372	41.9	36.1	77.9
1988	61,311	13,219	35,389	12,703	37.4	35.9	73.3
1990	62,166	12,935	36,221	13,010	36.0	36.0	72.0
1995	62,784	12,835	36,351	13,598	35.0	37.0	73.0
2000	62,656	12,839	34,795	15,022	37.0	43.0	80.0
2005	61,812	12,191	33,726	15,894	36.0	47.0	83.0
2010	60,514	11,157	33,386	15,971	33.0	48.0	81.0
2015	58,680	9,938	32,389	16,353	31.0	50.0	81.0
2020	56,647	9,096	30,614	16,937	30.0	55.0	85.0
2025	54,339	8,616	27,671	18,052	31.0	65.0	96.0
2030	51,737	8,173	24,672	18,892	33.0	77.0	110.0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alordnung, 1991, p.148.

〈附表 3-6〉 年金保險 賦出料率의 變化推移

(단위: %)

변경연도	노동자/직원연금제도	변경연도	광부연금	
			육체근로자	사무직근로자
1891~1911	1.7 / -	1924	11.6	10.0
1912	2.1 / -	1925	10.7	6.5
1913~1916	2.1 / 5.3	1926	11.0	9.3
1917~1923	2.6 / 5.3	1927~1928	10.6	12.3
1924	2.7 / 3.0	1929~1930	8.5	10.3
1925~1926	4.1 / 4.0	1931~1937	9.8	10.9
1927~1942	5.0 / 4.0	1938~1941	9.0	16.0
1942. 7.	5.6	1942~1948	18.5	21.5
1949. 6.	10.0			
1955. 4.	11.0			
1957. 3.	14.0	1949. 6.	22.5	
1968	15.0	1957. 6.	23.5	
1969	16.0	1981. 1.	24.0	
1970	17.0	1982. 1.	23.5	
1973	18.0	1983. 9.	24.0	
1981	18.5	1984. 1.	24.25	
1982	18.0	1985. 1.	24.45	
1983	18.5	1985. 7.	24.95	
1985. 1.	18.7	1987. 1.	24.45	
1985. 6.	19.2			
1987	18.7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ialordnung, 1991, p.200, 205.

〈附表 3-7〉 平均年金 給與水準의 推移

연도	평균연금수준 (DM)		현재 납세진 평균임금대비 연금수준(%)		현재 실질 평균임금대비 연금수준(%)	
	가입기간 40년	가입기간 45년	가입기간 40년	가입기간 45년	가입기간 40년	가입기간 45년
1957	214.10	240.90	50.9	57.3	59.3	66.7
1958	214.10	240.90	48.2	54.2	56.7	63.8
1959	227.10	255.50	48.6	54.7	57.1	64.2
1960	240.60	270.70	47.3	53.2	56.2	63.2
1961	253.60	285.30	45.3	50.9	54.2	60.9
1962	266.30	299.60	43.6	49.1	52.5	59.0
1963	283.90	319.40	43.8	49.3	53.0	59.6
1964	307.10	345.50	43.5	49.0	52.9	59.5
1965	335.90	377.90	43.7	49.1	52.7	59.3
1966	363.80	409.30	44.1	49.6	53.9	60.7
1967	392.90	442.00	46.1	51.9	56.7	63.7
1968	424.50	477.60	47.0	52.9	57.3	64.5
1969	459.80	517.30	46.6	52.4	57.7	65.0
1970	489.00	550.20	44.0	49.5	56.8	63.9
1971	515.90	580.40	41.5	46.6	54.4	61.2
1972	600.40	675.50	42.2	47.5	57.0	64.2
1973	668.60	752.20	41.6	46.8	56.3	63.4
1974	743.50	836.50	41.6	46.8	57.0	64.1
1975	826.00	929.30	43.2	48.6	59.0	66.4
1976	916.90	1,031.50	44.8	50.4	62.8	70.7
1977	1,008.10	1,134.10	46.3	52.1	65.6	73.8
1978	1,008.10	1,134.10	46.1	51.9	64.6	72.7
1979	1,053.40	1,185.10	45.7	51.4	63.8	71.7
1980	1,095.60	1,232.50	44.6	50.2	63.2	71.1
1981	1,139.40	1,281.80	44.2	49.8	62.9	70.8
1982	1,205.00	1,355.60	44.9	50.5	64.6	72.7
1983	1,272.30	1,431.30	44.6	50.2	64.5	72.6
1984	1,315.50	1,480.00	45.3	50.9	65.2	73.4
1985	1,355.00	1,524.40	45.4	51.1	65.1	73.2
1986	1,394.30	1,568.60	45.0	50.7	63.6	71.6
1987	1,447.30	1,628.20	45.2	50.8	64.1	72.1
1988	1,490.70	1,677.10	45.3	51.0	63.8	71.8
1989	1,535.50	1,727.40	45.3	51.0	64.3	72.4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alordnung, 1991, p.186.

〈附表 3-8〉 一般算定基礎對比 年金調整率의 推移

	평균임금 (DM)	일반산정기초: 전제도가입자 연평균임금 (DM)	연금 조정율: 전년대비 (%)	월각출 하한 (DM)	월각출상한(DM)	
					노동자 및 직원연금	광부연금
1957	5,043	4,281	-	93.75	750	1,000
1958	5,330	4,532	0.0	93.75	750	1,000
1959. 1	5,602	4,812	6.1	100.00	800	1,000
1960. 1	6,101	5,072	5.94	106.25	850	1,000
1961. 1	6,723	5,325	5.4	112.50	900	1,100
1962. 1	7,328	5,678	5.0	118.75	950	1,100
1963. 1	7,775	6,142	6.6	125.00	1,000	1,200
1964. 1	8,467	6,717	8.2	137.50	1,100	1,400
1965. 1	9,229	7,275	9.4	150.00	1,200	1,500
1966. 1	9,893	7,857	8.3	162.50	1,300	1,600
1967. 1	10,219	8,490	8.0	175.00	1,400	1,700
1968. 1	10,842	9,196	8.1	200.00	1,600	1,900
1969. 1	11,839	9,780	8.3	212.50	1,700	2,000
1970. 1	13,343	10,318	6.35	225.00	1,800	2,100
1971. 1	14,931	10,967	5.5	237.50	1,900	2,300
1972. 1	16,335	12,008	6.3 / 9.5	262.50	2,100	2,500
1972. 7	18,295	13,371	11.35	287.50	2,300	2,800
1973. 7	20,381	14,870	11.2	312.50	2,500	3,100
1974. 7	21,808	16,520	11.1	350.00	2,800	3,400
1975. 7	23,335	18,337	11.0	387.50	3,100	3,800
1976. 7	24,945	20,161	9.9	425.00	3,400	4,200
1977. 7	26,242	21,608	-	390.00	3,700	4,600
1978	27,685	21,068	4.5	390.00	4,000	4,800
1979. 1	29,485	21,911	4.0	390.00	4,200	5,100
1980. 1	30,900	22,787	4.0	390.00	4,400	5,400
1981. 1	32,198	24,099	5.76	390.00	4,700	5,800
1982. 1	33,293	25,445	5.59	390.00	5,000	6,100
1983. 7	34,292	26,310	3.4	390.00	5,200	6,400
1984. 7	35,286	27,099	3.0	400.00	5,400	6,700
1985. 7	36,627	27,885	2.9	410.00	5,600	6,900
1986. 7	37,726	28,945	3.8	430.00	5,700	7,100
1987. 7	38,896	29,814	3.0	440.00	6,000	7,300
1988. 7	40,063	30,709	3.0	450.00	6,100	7,500
1989. 7	41,986	31,661	3.1	470.00	6,300	7,800
1990. 7	43,917	33,181	4.8	480.00	6,500	8,000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oyalordnung, 1991, p.183.

〈附表 3-9〉 年金保險 財政收支

	총연금보험					노동자연금보험					사무직연금보험					광원연금보험				
	1984	1985	1986	1992	1993	1984	1985	1986	1992	1993	1984	1985	1986	1992	1993	1984	1985	1986	1992	1993
수입합계	166,865	176,350	185,360	293,899	303,961	89,739	97,134	101,979	147,419	166,863	71,840	77,436	81,855	135,864	142,858	14,653	14,699	14,913	22,118	23,704
보험료	131,769	140,403	148,688	229,535	235,792	63,100	66,151	70,119	102,711	102,997	66,059	71,510	75,772	123,152	129,410	2,610	2,742	2,797	3,672	3,385
연방보조	32,811	33,779	34,405	58,322	62,543	19,790	20,706	21,155	37,912	40,495	4,454	4,661	4,762	8,534	9,115	8,567	8,412	8,488	11,876	12,933
기타공적부조	1,332	1,313	1,406	1,370	1,505	574	565	602	498	512	676	670	728	796	928	82	78	76	76	65
각종의 조정	-	-	-	-	-	322	320	319	384	415	88	90	92	134	146	3,386	3,458	3,541	6,381	7,269
자산수입	904	802	804	4,457	3,957	353	310	318	1,224	740	543	484	479	3,210	3,180	8	8	7	23	37
유동성 조정	-	-	-	-	-	5,571	9,051	9,434	4,603	21,634	-	-	-	-	-	-	-	-	-	-
기타수입	49	53	57	215	164	29	31	32	87	70	20	21	22	38	79	0	1	3	90	15
지출합계	171,119	174,942	178,545	288,114	311,647	94,703	95,821	96,721	153,098	165,535	71,130	77,341	80,298	124,400	151,872	14,653	14,699	14,913	22,118	23,704
연금급여지출	147,247	153,223	158,746	256,020	276,124	78,655	81,160	84,492	130,391	140,509	56,663	59,847	62,745	106,463	115,178	11,929	12,216	12,509	19,166	20,437
연금수급자질병보험	14,386	12,353	11,106	15,690	17,465	7,524	6,387	5,687	7,865	8,745	5,411	4,702	4,259	6,438	7,182	1,451	1,264	1,160	1,387	1,538
요양급여	3,924	4,272	4,515	7,196	8,249	2,327	2,463	2,686	4,432	5,012	1,515	1,722	1,737	2,633	3,055	82	87	92	131	182
공적부조	472	518	545	-	-	-	-	-	5,010	5,636	-	-	-	1,371	1,633	472	518	545	518	561
각종의 조정	-	-	-	290	347	2,613	2,662	2,722	234	277	773	796	820	49	65	410	410	411	7	5
보험료 환부	2,020	1,472	353	5,438	6,012	1,815	1,368	283	3,071	3,327	80	84	64	2,087	2,373	125	20	6	280	312
관리운영비	3,037	3,079	3,254	2,929	2,832	1,756	1,769	1,836	2,059	1,980	1,105	1,130	1,231	749	738	176	180	187	121	114
유동성조정	-	-	-	-	-	-	-	-	-	-	5,571	9,051	9,434	4,603	21,634	-	-	-	-	-
기타지출	33	25	26	551	618	13	12	15	36	49	12	9	8	7	14	8	4	3	508	555
수지차액	-4,254	1,408	6,815	5,785	-7,686	-4,964	1,313	5,258	-5,679	1,328	710	95	1,557	11,464	-9,014	0	0	0	0	0

資料: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1994,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ager, 1994, pp.6~9.

社會保障研究所 編, 『西ドイツの 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部, 1986, pp.152~153.

〈附表 3-10〉 積立金(支拂準備金)

연도	적립금(백만DM)		
	소계	노동자	직원
1978	18,519	5,930	12,229
1979	16,371	6,083	10,288
1980	18,739	6,689	12,050
1981	21,739	7,185	14,554
1982	20,545	7,692	12,853
1983	15,028	7,212	7,816
1984	9,773	1,439	8,334
1985	11,197	2,958	8,239
1986	17,781	8,148	9,633
1987	21,026	8,152	12,874
1988	23,339	8,789	14,550
1989	25,831	8,964	16,867
1990	34,948	9,449	25,499
1991	42,789	10,425	32,364
1992	49,056	4,571	44,485
1993	38,497	4,270	34,227

資料: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1994,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1994, p.12.

〈附表 3-11〉 勞働者 및 職員年金의 準備金 規模

연 도	연말기준 지불준비금 (10억마르크)	월연금지출액 (10억마르크)	각출료 (%)
1966	27.3	-	14
1967	24.8	-	14
1968	23.1	-	15
1969	20.8	7.9	16
1970	24.0	8.1	17
1971	29.5	8.8	17
1972	34.8	9.3	17
1973	39.9	9.4	18
1974	44.3	8.6	18
1975	43.0	7.4	18
1976	35.8	5.3	18
1977	25.3	3.3	18
1978	18.1	2.2	18
1979	16.4	1.9	18
1980	18.7	2.1	18
1981	21.7	2.4	18.5
1982	20.5	2.1	18
1983	15.0	1.5	18.5 (9.1부터)
1984	9.8	0.9	18.5
1985	11.2	1.0	18.7 / 19.2 (6.1부터)
1986	17.8	1.6	19.2
1987	21.0	1.8	18.7
1988	23.2	1.9	18.7
1989	25.8	2.0	18.7
1990	33.3	2.5	18.7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ialordnung, 1991, p.199.

〈附表 3-12〉 年金保險에 대한 政府補助金の 支出推移

(단위: 10억DM, %)

연도	정부보조금 (A)	총연금지출액 (B)	A/B	연방재정지출 (C)	A/C
1957	3.4	10.7	31.8	31.6	10.8
1958	3.6	12.2	29.5	33.8	10.7
1959	3.8	13.2	28.8	36.9	10.3
1960	4.1	14.3	28.7	30.3	13.5
1961	4.3	15.5	27.7	43.1	10.0
1962	4.6	16.8	27.4	49.8	9.2
1963	5.0	18.1	27.6	54.8	9.1
1964	5.4	20.1	26.9	58.2	9.3
1965	5.9	22.5	26.2	64.2	9.2
1966	6.4	25.3	25.3	66.9	9.6
1967	6.9	28.5	24.2	74.6	9.2
1968	6.7	31.6	21.2	75.8	8.8
1969	7.0	35.3	19.8	82.3	8.5
1970	7.2	38.4	18.8	88.0	8.2
1971	7.7	41.5	18.6	98.5	7.8
1972	9.7	47.2	20.6	111.1	8.7
1973	8.3	55.3	15.0	122.6	6.8
1974	11.4	64.3	17.7	134.0	8.5
1975	10.9	72.8	15.0	156.9	6.9
1976	14.8	83.0	17.8	162.5	9.1
1977	16.3	93.2	17.5	172.0	9.5
1978	19.2	99.0	19.4	189.1	10.2
1979	20.3	103.8	19.6	203.4	10.0
1980	21.3	109.4	19.5	215.7	9.9
1981	18.8	115.1	16.3	233.0	8.1
1982	22.2	122.7	18.1	246.6	9.0
1983	22.4	127.8	17.5	246.7	9.1
1984	24.2	135.3	17.9	251.8	9.6
1985	25.1	141.0	17.8	257.1	9.8
1986	25.9	146.1	17.7	261.5	9.9
1987	26.7	152.6	17.5	268.5	9.9
1988	27.6	159.6	17.3	275.4	10.0
1989	28.5	166.9	17.1	301.4	9.5

資料: Herausgeber, "Sozialgesetzbuch · 6. Buch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in 『Übersicht über die Söziale sicherhei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yialordnung, 1991, p.202.

〈附表 3-13〉 勞働者 및 職員年金 財政推移

연도	각출료 수입	정부보조	연금지출	질병보험각출보조
1976	82,653	14,830	82,990	14,699
1977	87,328	16,305	93,160	14,047
1978	93,973	17,682	98,997	11,666
1979	102,790	18,781	103,795	12,145
1980	111,206	21,127	109,372	12,800
1981	120,526	18,764	115,058	13,472
1982	121,605	22,203	122,727	13,372
1983	121,112	22,386	127,769	12,958
1984	129,160	24,244	135,319	12,935
1985	137,661	25,139	141,007	11,089
1986	145,891	25,917	146,238	9,947
1987	148,286	26,739	153,056	9,338
1988	153,807	27,613	160,345	9,229
1989	161,355	28,503	167,904	10,082
1990	174,916	29,697	175,874	10,971
1991	208,926	38,381	213,072	14,715
1992	225,863	46,446	236,854	14,303
1993	232,407	49,610	255,687	15,927

資料: Renten-versicherung in Zahlen: 1994,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1994, p.14.